

대한육상경기연맹규칙

2014 - 2015

국제육상경기연맹규칙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대륙(Area)

6개의 대륙육상경기연맹의 중 어느 한 연맹에 가맹된 모든 국가 및 영토로 구성되는 지리적 지역.

대륙연맹(Area Association)

IAAF 현장에 분류된 회원연맹은 6개 대륙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그 대륙의 육상경기의 진흥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IAAF의 대륙연맹(예,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

선수 (Athlete)

규칙 제9조의 위한 목적에 해당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선수대리인 (Athletes' Representative)

IAAF 선수대리인규정에 준하여 정식으로 선수 대리인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사람

선수대리인규정 (Athletes' Representative Regulations)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채택되는 IAAF 선수대리인규정

선수지원요원(Athletes Support Personnel)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연맹이 고용하거나 협력하는 코치, 트레이너, 감독, 선수대리인, 특약대리인, 팀임원, 임원, 의무원, 부모 또는 기타 모든 관계요원.

육상경기(Athletics)

트랙과 필드경기, 로드레이스, 경보경기, 크로스컨트리레이스 및 산악레이스

이득(Benefit)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거나 제공된 돈 또는 동일한 가치의 수당(포상금 및/또는 보증, 스폰서 또는 다른 계약으로 인해 받는 계약금 외).

도박(Bet)

금전적 투기로 돈 또는 모든 형태의 도박.

도박행위(Betting)

도박행위라 함은 제한 없이 흔히 불리는 스포츠 도박 활동들 (승부조작, 경마 도박/토토 게임, 실황 도박, 도박 거래, 스프레드 베팅 및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타 게임들) 이 포함한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로잔(Lausanne,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시민(Citizen)

어느 국가의 법률상의 시민권 또는 영토의 경우에는 영토 모국의 법률상의 시민권 및 적용되는 법률에 준한 그 영토의 적정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

시민권(Citizenship)

어느 국가의 법률상의 시민권 또는 영토의 경우에는 영토 모국의 법률상의 시민권 및 적용되는 법률에 준한 그 영토의 적정한 합법적 신분.

클럽(Club)

회원연맹 규칙에 준해서 회원연맹에 직접적 또는 해당기관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선수 단체 또는 클럽.

분과위원회(Commission)

본 협약의 규정에 준하여 IAAF 집행이사회가 선임한 IAAF 분과 위원회.

경기대회(Competition)

하루 또는 하루 이상에 걸쳐 개최되는 경기 혹은 연속경기

헌장(Constitution)

IAAF 헌장.

집행이사회(Council)

IAAF 집행이사회.

국가(Country)

국제법 및 국제 통치 기관들에게 독립된 국가로 승인된 세계의
자치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지역.

경기(Event)

모든 예선라운드를 포함한 경기대회에서의 단일 레이스 또는
경기. (예, 100m 또는 창던지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내부 정보(Inside Information)

스포츠 내의 자신의 위치를 통해 참가자가 소지하게 된 모든 대회
또는 경기에 관한 모든 정보. 이러한 정보는 선수, 상태, 전략,
또는 대회나 경기에 대한 모든 기타 측면들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하는
대중이 쉽게 얻을 수 있거나 관련된 경기 혹은 국제경기대회를
관리하는 규칙과 규정들로 인해 밝혀져서 이미 공표된/게재된
공개 기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competition)

본 규칙 제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

국제초청경기대회(International Invitation Meeting)

대회 조직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2개국 이상의 회원연맹에 등록
된 선수들이 참가하는 육상경기대회.

국제수준선수(International – Level Athlete)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에 정의된) 도핑검사대상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또는 규칙 제35조 7항(경기기간 중 도핑검사)에 준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요 대회 조직 단체(Major Event Organisation)

모든 대륙, 지역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에서 운영 역할을 하는 모든 국제 종합스포츠 조직 단체(예, IOC)

회원연맹(Member)

IAAF에 가맹되어 있는 육상경기의 국가통합 단체.

회원연맹 자격(Membership)

IAAF의 회원이 되는 자격.

국가연맹(National Federation)

본 규칙에 준하여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요원이 직접 또는 클럽이나 회원연맹에 가맹된 기타 단체를 통하여 등록되어 있는 IAAF의 회원연맹.

참가자(Participant)

국제경기대회에 참석 혹은 참가하도록 승인 받은 선수, 선수지원 요원, 대회 임원, 임원, 감독 또는 모든 대표단의 기타요원, 심판장, 상소심판원 및 모든 기타 개인. 규칙 9에 명시된 “참가자”라는 용어는 이에 합당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람(Person)

개인, 조직/단체 또는 기타 기관.

규정(Regulations)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가결되는 IAAF의 규정.

거주지(Residence)

거주지는 관계 당국에 등록된 선수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장소나 소재지

규칙(Rules)

본 경기대회규칙 핸드북에 규정되어 있는 IAAF 경기대회 규칙.

경기규칙(Technical Rules)

IAAF 경기대회규칙 핸드북 제5장에 명시된 규칙.

영토(Territory)

국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스포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치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IAAF가 승인한 지리적 영토 또는 지역.

세계육상경기시리즈대회(World Athletics Series, WAS)

IAAF의 2년 또는 4년 주기 공식경기대회 프로그램에 있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 [주1–IAAF] 위의 정의는 제3장(도핑방지 및 의무)에 정의되어 있는 동일한 용어를 제외하고, 모든 규칙에 적용된다. 즉, 제3장을 제외한 모든규칙에 적용되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 제3장에 제시된 정의는 도핑방지 및 의무 규칙에만 적용된다.
- [주2–IAAF] 남성에 대한 규칙에서 모든 사항은 여성에도 포함되며, 단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복수에도 적용된다.
규칙에 명시된 남성에 관한 모든 참고사항은 여성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단수에 관한 모든 복수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주3–IAAF] IAAF의 출판물인 “심판장” (영어로 The Referee, 불어로 Le juge arbitre)은 경기규칙에 대한 해석과 실행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주4–IAAF] 2013년 IAAF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IAAF 경기대회규칙 2014~2015년판의 개정부분(편집상의 수정을 제외하고)은 문장의 가쪽(여백)에 세로로 두줄(II)을 그었으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장 국제육상경기대회(International Competitions)

제1조 국제육상경기대회

1. 국제육상경기대회는 다음과 같다.
 - (a) (i) 세계육상경기 시리즈대회에 포함된 경기대회
(ii) 올림픽대회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 (b) IAAF가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일 대륙의 참가 선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대륙, 지역 또는 그룹대회의 육상경기프로그램
 - (c) 참가 선수가 단일 대륙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또는 그룹 육상경기선수권대회
 - (d) 회원연맹이나 대륙 또는 이들 각각의 연합을 대표한 서로 다른 대륙의 팀들 간의 대항 경기대회
 - (e) 집행이사회가 승인하고 IAAF가 범세계적 기구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및 기타 경기대회
 - (f) 단일 대륙연맹이 주최한 대륙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대륙 내의 육상경기대회
 - (g) 참가 선수가 단일 대륙에 국한된 대륙, 지역 또는 그룹 대회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및 지역 또는 그룹 육상경기선수권대회
 - (h) 청소년 및 주니어 범주에 해당하는 경기대회를 제외한, 동일 대륙 내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연맹이나 이들의 연합을 대표한 팀들 간의 대항경기대회
 - (i) 규칙 제1조 1항(e)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및 기타 경기대회 즉,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기대회.

(j) 규칙 제1조 1항 (e)에 규정되어있는 대회와 유사한 대륙 육상경기 프로그램.

2. 본 규칙은 다음 조항에 적용된다:

- (a) 선수참가자격(제2장), 분쟁을 관장하는 규칙(제4장), 및 경기규칙(제5장)은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IAAF가 승인한 기타 국제 조직단체는 그들의 권한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자격을 엄격히 제한해도 좋다.
- (b) 제3장의 도핑방지규칙은 모든 국제대회(제3장에 특별히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에 적용되는데, IOC 또는 IAAF가 승인한 기타의 국제 조직단체가 도핑방지를 목적으로 그들의 규칙에 의거하여 도핑검사를 대회(예, 올림픽대회)에서는 수행할 때에 도핑방지규칙이 적용되는 한까지 통제하여야 한다.
- (c) 광고 규칙(제8조)은 규칙 제1조 1항 (a)(i), (c), (d), 및 (e)에 게재된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대륙연맹은 규칙 제1조 1항 (f), (g), (h), (i) 및 (j)에 게재된 국제육상경기대회에, IAAF 광고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륙 연맹 고유의 광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표할 수 있다.
- (d) 규칙 제2조에서부터 제7조 및 제9조까지는, 적용되는 규칙을 명확하게 제한한 규칙을 제외하고,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제2조 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승인

1. IAAF는 대륙연맹과 협력하여 범세계적인 경기대회 체계를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다. IAAF는 중복되는 대회 개최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IAAF 주최의 경기일정과 해당 대륙연맹의 경기 일정을 조정한다. 모든 국제경기대회는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IAAF 또는 대륙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경기대회를 시리즈/투어 또는 리그대회로 연합 또는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적 또는 계약적 조건을 포함한 IAAF 또는 해당 대륙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륙연맹이 본 규칙 조항에 의거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IAAF는 중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2. IAAF만이 올림픽대회의 육상경기대회와 세계육상경기 시리즈대회에 포함된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IAAF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홀수년도에 개최한다.
4. 대륙연맹은 대륙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륙내에 다른기타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IAAF의 승인이 필요한 육상경기대회

5. (a) 규칙 제1조 1항 (b), (c), (d) 및 (e)에 명시된 모든 국제육상 경기대회는 IAAF의 승인이 필요하다.
(b) 국제육상경기를 주최하는 국가나 영토의 회원연맹은 대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이전이나 또는 IAAF가 정한 다른 기한 내에 대회 승인신청서를 IAAF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륙연맹의 승인이 필요한 육상경기대회

6. (a) 규칙 제1조 1항 (g), (h), (i), 및 (j)에 게재된 모든 국제육상경기 대회는 대륙연맹의 승인이 필요하다.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2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대륙연맹이 개최일에 관하여 IAAF와 협의하기 전에는 발표해서는 안된다.

- (b) 국제육상경기를 주최하는 국가나 영토의 회원연맹은 대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이전이나 또는 대륙연맹이 정한 다른 기한 내에 해당 대륙연맹에게 대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연맹이 승인한 육상경기대회

7. 회원연맹은 국내육상경기대회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 2항과 제4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 외국 선수들은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국 선수가 참가한다면 이러한 국내육상경기대회의 모든 선수의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8,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수가 IAAF, 대회를 주최하는 국가연맹, 또는 소속된 국가연맹의 규칙이 준수되는 육상경기에 참가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3조 국제육상경기대회 운영 관리규정

- 집행이사회는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운영을 관리하고 선수, 선수대리인, 대회 조직위원 및 여러 회원연맹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이사회가 규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IAAF와 대륙연맹은 IAAF의 규칙 및 규정대로 대회가 준수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IAAF 또는 대륙연맹의 대회 개최 승인을 요하는 모든 국제 육상경기대회에 1인이나 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IAAF나 대륙연맹의 요청에 의해, 대표는 해당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AAF나 대륙연맹에게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육상경기대회 참가 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선수만이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회원연맹에 등록된 클럽의 회원; 또는
 - 회원연맹에 등록된 개인선수; 또는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연맹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선수; 그리고
 - IAAF가 도핑검사(이하 규칙 제35조 7항 참조)를 책임지는 국제 경기대회의 경우, IAAF가 준비한 동의서 양식에 IAAF 규칙 및 규정(때에 따라 수정됨)을 준수한다는 사항 그리고 IAAF 또는 회원연맹과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판소나 기관에 조회하지 않고 본 규칙에만 따라서 중재에 합의하겠다는 사항을 동의하고 서명한 선수이어야 한다.

2. 회원연맹은 외국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개최되는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회원연맹의 선수나 클럽이 회원연맹의 서면승인없이 참가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육상경기를 주최하는 회원연맹은 대회참가자격과 참가 허가증명서가 없는 어떠한 외국의 선수나 클럽도 대회참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회원연맹은 IAAF에 이러한 모든 승인요건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칙이 준수되기 위하여, IAAF는 각 회원연맹의 승인 요건목록을 IAAF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3. 한 국가연맹에 소속된 선수는 자신이 속한 국가연맹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원연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소속 국가연맹에 상기와 같은 사전승인 요구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 또한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은 선수가 본래 소속된 국가연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나라 또는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의 참가선수 명단에 그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본 규칙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은 본래 선수가 속한 국가연맹에 서면상의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본래의 국가연맹은 그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에게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의사전달은 양쪽 모두의 수령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으로서, 수령 확인 기능이 있는 전자우편은 부합되므로 인정된다. 만약, 선수가 본래 소속된 국가연맹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접수되지 않으면, 요구서에 대한 선수자격 인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본 규칙에 따른 허가요청에 관하여 부정적인 회답(부정적 회답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연맹 또는 영토의 국가연맹은 그 결정에 대하여 IAAF에 항소할 수 있다. IAAF는 이 규칙에 따른 항소 제기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고, 이 지침은

IAAF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본 규칙이 준수되기 위하여, IAAF는 각 국가연맹의 허가요구서 목록을 IAAF 웹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주-IAAF] : 규칙 제4조 3항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이 되는 선수에게 적용된다. 본 규칙은 어느 국가나 영토의 시민이 아닌 선수 또는 정치적 망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회원연맹을 대표할 자격 (Eligibility to Represent a Member)

1.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는 규칙 제5조에서 명시하는 자격 조건들을 충족하고, 그 회원연맹이 대표하는 국가나 영토의 시민인 선수만이 해당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2. 규칙 제1조 (a), (b), (c), (f) 또는 (g)에 규정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한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
 - (a) 해당 국가(또는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가 시민권자이기에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 (b) 새로운 시민권 획득을 통해 해당 국가(또는 영토)의 시민인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선수 신청에 따라 새로운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새로운 회원연맹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아래에 명시된 것에 따라 단축되거나 취소 될 수 있다:
 - (i) 선수가 관계된 국제육상경기대회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해당 국가(또는 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위의 1년이라는 기간은 취소되며;
 - (ii) 집행이사회에 의한 예외의 경우 그 기간은 감소되거나

취소 될 수 있다. 단축 또는 취소 신청은 관련된 국제경기대회 개최 최소 30일전까지 해당 회원연맹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3. 상기 규칙 제5조 4항에 의거하여,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하나의 국가연맹을 대표한 선수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다른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없다.
4.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하나의 회원연맹을 대표한 선수는 오직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규칙 제 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특이한 제시 사항이 없는 이상 바로) 또 다른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 (a) 본 회원연맹의 국가 또는 영토가 이미 회원연맹이거나 국가연맹이 된 다른 국가나 영토에 합병(合併)된 경우;
 - (b) 만약 회원연맹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선수가 조약의 비준에 의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새롭게 탄생된 국가의 시민이 되며, 그 국가가 회원연맹이 되는 경우;
 - (c) 만약 회원연맹의 영토에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선수가 소속 영토의 모국(母國)을 대표하여 올림픽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서 소속 영토의 모국을 대표하는 행위가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다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선수가 소속 영토의 회원연맹을 대표하는 것에 영향을 주면 안 될 것이다;
 - (d) 새로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선수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선수는 규칙 제1조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새로운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3년의 기간은 아래 명시된 상황일 경우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i) 해당 회원연맹간의 합의로 3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기간 단축은 해당 회원연맹들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IAAF 사무국이 받는 대로 효력을 가진다.
- (ii) 선수가 관련된 국제경기대회를 시점으로 최소 3년 전부터 새로운 시민권을 취득한 해당 국가(또는 영토)에 거주했다면 이 기간은 취소된다.
- (iii) 집행이사회의 승인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실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한다. 기간 단축/취소 신청서는 관련된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연맹이 IAAF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e) 2중 시민권 : 선수가 2개(또는 그 이상)의 국가나 영토의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선수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한 회원연맹을 대표했다면 그 대회 이후 3년 동안은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다른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3년의 기간은 아래 명시된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i) 해당 양 국가연맹간의 합의로 3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기간 단축은 해당 회원연맹들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IAAF 사무국이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
- (ii) 이 기간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실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한다. 기간 단축/취소 신청서는 관련된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연맹이 IAAF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 4항 (e)는 출생 시 2중 시민권을 획득한 선수에 한해 국한된다. 기존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획득(예 : 결혼을 통해)함으로써 2개 또는 그 이상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선수에 대해서는 규칙 제5조 4항 (d)를 적용한다.

5. 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참가 선수의 자격은 항상 선수가 소속된 회원연맹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규칙 제5조에 따른 선수의 자격 여부 입증의 책임은 해당 회원연맹과 선수에게 있다. 회원연맹은 선수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하고/진본인 문서와 필요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IAAF에 제시해야만 한다. IAAF가 요청한다면, 회원연맹은 이 규칙에 따라 선수의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선수에 대한 지불

육상경기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스포츠이며,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선수는 모든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 인해 육상경기 참가와 관련한 기타의 상업적 활동에 종사함으로서 발생한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선수대리인

1. 선수들은 그들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협상 및 이러한 유형의 다른 기타 사안들을 위해 선수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수들은 스스로 그들의 육상경기 프로그램을 협상 할 수도 있다.
2. 연말 기준으로 표준 경기대회에서 IAAF 30위권 내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는 그 다음 해에 선수대리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연맹은 적절하게 선수대리인을 공인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각 회원연맹은 선수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선수대리인과 자국 또는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대리인, 또는 자국 국적을 가진 선수대리인들을 관할하여야 한다.
4. IAAF 집행이사회는 이 제도에 대한 회원연맹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수대리인 관리에 관한 규정집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선수대리인 규정은 선수대리인을 관리하는 각 회원연맹의 규정에 포함 될 필수요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각 회원연맹은 IAAF 회원연맹 자격 조건으로서, 선수와 대리인 간의 모든 협약은 선수대리인에 대한 IAAF 경기규칙 및 선수대리인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회원연맹의 헌장(Constitution)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선수대리인은 정직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IAAF 선수대리인 규정에 따라 시행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선수대리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7. 각 회원연맹은 회원연맹이 공인하거나 승인한 선수대리인 명단을 IAAF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IAAF는 공인된 선수대리인 명단을 공식적으로 매년 발행하여야 한다.
8. 규칙 및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나 선수대리인은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국제경기대회기간중 광고 및 전시

1. IAAF 규칙 제1조2항 (c)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홍보성 광고 및 전시가 모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충족시킨다는 전재 하에 허용된다.
2. 본 규칙에 준해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전시되는 홍보물 및 기타 자료의 광고 방법 및 형태에 대해서는 집행이사회가 이에 대한 세부 규칙을 수시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a) 본 규칙에 준해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상업적 또는 자선사업적 광고만이 허용된다.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압력단체의 이익 촉진과 관련된 모든 광고는 금지 한다.
 - (b) IAAF의 판단에 의해 대회의 품위를 잃게 하거나, 혼란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광고물은 전시를 금지한다. 광고물이 부분적 또는 다른 형태로 TV카메라의 시야를 가로막아서는 아니된다. 모든 광고물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c) 담배 제품의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집행이사회가 특별히 허용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류의 광고를 금지한다.
3. 집행이사회는 본 규칙에 의한 규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도박행위 및 기타 부정부패 위반(Betting and Other Anti-Corruption Violations)

1. 이 규칙은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며, 참가 또는 지원 자체로 각 참가자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위반 행위의 정의를 포함한 이 규칙을 인식 그리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다.
3. 각 참가자는 IAAF 윤리 강령에 따라 IAAF가 제기한 혐의를 듣고 결정하는 IAAF 윤리 위원회의 전담 관할권과 IAAF 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는 CAS 전담 관할권에 따른다.

도박행위 및 기타 부정부패 위반

4. 다음과 같은 참가자들의 행위는 이 규칙 적용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각각의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따라)
5. 도박행위 :
 - (a) 경기 또는 대회의 기록, 과정, 결과, 행동이나 다른 어떠한 측면에서든 타인과의 도박행위를 포함하여 경기 또는 대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홍보하는 것. 규칙 제9조 5항 (a)는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참가자의 스포츠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대회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다른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경기 또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도박행위에 적용된다.
 - (b) 규칙 제9조 5항을 위반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조장 또는 장려 하는 것.
6. 결과 조작 :
 - (a) 경기 또는 대회의 기록, 진행, 결과, 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계략 하거나 고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그것에 관계하는 것;
 - (b) 경기 또는 대회에서 참가자의 지식이 내기의 대상이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이득을 받거나 이득을 받는 것이 예상 되는 특정 사건의 발생을 보장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 (c) 이득에 대한 보답으로 (또는 실제로 그러한 이득이 실제로 주어지거나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득의 합당한 예상) 경기 또는 대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발휘하지 않는 것;
 - (d) 규칙 제9조 6항을 위반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조장 또는 장려 하는 것,

7. 놔물 수수 :

- (a) 경기 또는 대회의 기록, 진행, 결과, 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략 하거나 고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놔물이나 기타 이득(또는 실제로 그러한 이득이 주어지거나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득의 합당한 예상)을 제시하거나 받는 것에 승인, 제시, 동의 하는 것;
- (b) 규칙 제9조 7항을 위반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조장 또는 장려하는 것

8. 대가성 선물 :

- (a) 참가자 또는 육상경기 스포츠에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물이나 이득(또는 그러한 이득이 주어지거나 받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득의 합당한 예상)을 제공, 제시, 증여, 요구 하거나 받는 것;
- (b) 규칙 제9조 8항을 위반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조장 또는 장려하는 것

9. 내부 정보의 약용 :

- (a) 도박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도박 행위와 관계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
- (b) 참가자가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박 행위에 관계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정보를 공개 하는 것;
- (c) 규칙 제9조 9항을 위반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조장 또는 장려하는 것

10. 기타 위반 :

- (a) 이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참가자의 모든 시도나 또는 다른 사람과 참가자에 의한 모든 계약은 결과적으로 위반 여부를 떠나 위반으로 처리 될 것이다. 그러나 참가자가 그의 시도나 계약이 제3자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포기를 선언한다면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b) 참가자가 저지르는 규칙 제9조에 서술된 모든 행위나 누락을 고의로 돋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연루 되는 것;
- (c) 이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여하도록 참가자가 받은 모든 접촉이나 초대들의 모든 사항들을 IAAF나 기타 관할 기관에게 지체 없이

- 보고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 (d) 이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여하도록 어떤 다른 상대가 받은 접촉(제한 없이), 초대들을 포함하여, 제 3자의 규칙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참가자가 입수한 어떠한 사건, 사실 또는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IAAF나 기타 관할 기관에게 자체 없이 보고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 (e)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 규칙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합리적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11. 다음은 이 규칙의 위반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
- (a) 특정 경기나 대회에 참가자나 또는 다른 참가자의 도움을 받은 선수가 참여했었는지 여부;
 - (b) 문제가 되는 모든 도박 행위의 성격이나 결과;
 - (c) 도박 행위의 대상이 된 경기나 대회의 결과;
 - (d) 쟁점중인 경기 또는 대회에서 참가자의 노력이나 기록(있을 경우)이 문제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또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 쟁점이 되는 경기 또는 대회의 결과가 문제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또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혐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청문회

12. 규칙 제9조의 위반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는 IAAF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IAAF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AAF 집행위원회는 주장이나 의혹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책임질 독립적인 개인이나 사람들을 지정한다.
13. 이 규칙의 위반 혐의를 다룰 청문회는 IAAF 윤리강령에 따른 자체 심의 절차를 결정하는 IAAF 윤리 위원회에 의해 실시 될 것이다.

증명 기준

14.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경우의 증명 기준은 위반 혐의의 제기에 대해 IAAF 윤리위원회가 혐의의 심각성을 유념하고 만족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모든 경우의 증명 기준은 가능성의 단순 평가 보다는 뛰어나고 의

심할 여지 없는 증거보다는 적다. 규칙 제9조의 위배 여부를 결정짓는 책임은 IAAF에 있다.

15. IAAF 윤리위원회는 증거 능력을 관할하는 사법규칙에 얹매이지 않는다. 규칙 제9조의 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시인, 제3자에 의한 증거, 목격자 진술, 전문가 보고서, 문서 기록 및 분석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립 시킬 수 있다.
16. 참가자가 관련 결정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IAAF 윤리 위원회는 결정과 관련된 참가자에 대한 사실들의 반박 할 수 없는 증거로 항소 대상이 아닌 관할 법원 또는 전문 징계 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확립되는 어떠한 사실도 수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수 있다.
17. IAAF 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미리 요청된 청문회(IAAF 윤리 위원회에 의한 지시로 직접 또는 전화로)에게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 없이 참석 또는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참가자에게 청문회 거부에 근거하여 불리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

제재

18. 선수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 동안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규칙 제9조 위반의 결과는 획득한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 및 참가료의 몰수를 포함하며, 모든 대회 경기 결과의 무효 선언 및 자동 실격으로 이어진다.
19. 규칙 제9조에 따라서 위반을 범한 선수가 릴레이팀의 일원이라면 해당 릴레이팀은 관련된 경기에서 자동 실격되고, 계주팀이 획득한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 및 참가료가 몰수되며,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화된다.
20. 다른 경우에는, IAAF 윤리 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위반의 특정 상황들을 고려하여, 규칙 제9조의 위반이 경기나 대회의 결과 실격 처리로 이어질 것일지에 대해 결정 할 것이다.
21. 규칙 제9조의 위반이 행해진 부분이 결정되면, IAAF 윤리위원회는 아래에 규정된 제재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위반	제재의 범위
규칙 제9조 5항 (도박 행위)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6항 (결과 조작)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7항 (뇌물 수수)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8항 (대가성 선물)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9항 (내부 정보의 오용)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10항 (b)와(c) (다른 위반들)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규칙 제9조 10항 (d)와(e) (다른 위반들)	최소 2년, 최대 4년의 참가 자격 없음

위에 명시된 무자격의 기간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IAAF 윤리 위원회는 규칙 제9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참가자가 받은 모든 이득의 가치를 최대화하여 재량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22. 각 경우에 부과되는 적절한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IAAF 윤리 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본질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관련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반의 경중을 평가한다 :

- (a)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한 없이 포함 될 수 있다;

참가자가 2회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것인지; 참가자가 하나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것인지; 참가자가 이전에 유사한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인지; 2명 이상의 참가자가 위반에 참여했는지; 참가자가 자신의 케이스의 관련한 어떠한 조사에도 협조하는 데에 실패했는지; 위반의 결과로 참가자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모든 이익, 상금, 기타 이득의 금액이 상당하고 또는 위반과 관련된 돈의 총액이 상당했는지; 참가자가 저지른 위반에 대한 회한의 결여를 보였는지; 위반이 관련 경기나 대회 또는 일정 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IAAF 윤리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악화 요인들.

- (b) 정상 참작 요인은 제한 없이 포함 될 수 있다;
참가자가 위반 행위를 인정했는지의 여부; 참가자의 좋은 이전 징계 기록; 참가자의 어린 나이 또는 경험 부족; 위반 행위가 관련 경기나 대회 또는 그 어떤 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 자신의 케이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사에서도 협조하였는지; IAAF 윤리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다른 모든 정상 참작 요인들.
23. 참가자에게 부과된 무자격의 기간은 무자격 기간 부과 발행이 결정되는 날짜 또는 청문회가 면제되면 무자격이 승인되거나 시행되는 날짜부터 시작된다. 참가자가 (부과되거나 자발적으로 용인된) 복역하는 모든 일시 정지 기간은 부과된 무자격의 전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24. 무자격이 공표된 참가자는 무자격 기간 동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육상경기 대회 또는 이외의 다른 활동에도 일제히 참가할 수 없다. IAAF, 대륙연맹 또는 회원연맹에서 공인, 조직, 허가, 지원하는 공인된 도박 및 부정부패 방지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만 참가 가능하다.
25. 무자격의 기간을 적용 받은 참가자는 그 기간에 규칙 제9조의 적용을 계속 받을 것이다. 만약 참가자가 이 기간 동안 규칙 제9조의 위반을 저지를 경우, 이것은 규칙에 따라 별도의 위반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26. 참가자의 무자격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충족시켰다는 전제 하에) 그는 참가 자격을 자동으로 다시 제공 받게 될 것이다.
- (i) 그에게 부과된 공식적 도박 및 부정부패 방지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에서 IAAF가 충분히 만족하도록 완료하였고;
 - (ii) 규칙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 및 재판소에서 발생된 법적 비용 전체를 지급하였고,
 - (iii) IAAF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가 저지른 위반의 성격과 범위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어떠한 감시관찰에도 동의 했을 경우.

항소

27. 이 규칙에 따라 IAAF 윤리 위원회가 내린 다음의 결정들에 대해 IAAF 또는 결정에 (해당되는) 대상 참가자가 CAS에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다.
- (a) 절차적 또는 관할권의 이유로 기각된 규칙 제9조 위반의 기소 결정;
 - (b) 규칙 제9조의 위반이 일어났다고 결정;

- (c) 규칙 제9조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정;
 - (d) 모든 결과의 실격과 규칙 제9조에 따라 발생한 모든 제재의 타당성을 포함한 제재 조치 시행에 대한 결정;
 - (e) 규칙 제9조에 어긋나는 제재 조치 시행에 대한 결정;
 - (f) 제재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결정.
28. 항소된 결정들은 CAS의 별도 지시가 없거나 이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 없다면 항소 중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29. IAAF가 CAS에게 항소 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IAAF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IAAF 집행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에 참가자가 CAS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보류 될지의 여부도 동시에 결정한다.
30. IAAF 집행위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없으면, IAAF가 예정된 항소인인 경우, 항소인은 항소하는 당사자에 의한 논리적인 결정 서면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CAS에 항소의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1. CAS에게 한 항소는 새로이 재심청문회의 형태를 취하고 CAS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결정을 대체 할 수 있다. CAS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결정의 제재 조치를 늘리거나 추가 할 수 있다.
32. CAS 항소에 적용될 해당 규칙들은 IAAF의 규칙들과 IAAF 윤리 강령이다.
33. CAS 항소 준거법은 모나코의 법이 될 것이며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항소 절차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34. CAS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들과 모든 회원연맹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CAS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ς는 없다. CAS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연맹들은 그 결정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주요 대회 조직기구의 결정을 인정

35. 규칙 제9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칙에 근거하여 주요 대회 조직의 관할권 내에 있는 참가자와 관련된 주요 대회 기구의 최종 결정은 통지를 받은 즉시 IAAF에 의해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주요 대회 기구가 참가자에게 부과한 제재 이상의 제재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IAAF의 윤리 강령에 따라 IAAF의 윤리 위원회가 결정하고 적용될 제재의 범위는 규칙 제9조의 조치를 따른다.

해석

36. 이 규칙은 2012년 5월1일에 시행되었으며 효력을 가지게 됐다. 즉,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관련한 것이다. 이 규칙은 윤리 강령의 수정으로 인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중단되며 효력을 잃을 것이다.
37. 이 규칙에 사용된 제목과 하위 제목은 오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 규칙의 본질의 일부나 언급하는 조항의 언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 되어서는 안된다.

제2장 선수 참가자격(Eligibility)

제20조

유자격선수의 정의

선수는 IAAF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되지 않으면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제21조

유자격선수의 대회참가 제한

1. 본 규칙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는 회원연맹의 관할하에 있고 본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로 한정한다.
2. 본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연맹이 그 선수의 대회참가자격을 보장한다.
3. 선수의 대회 참가자격에 대한 회원연맹의 규칙은 IAAF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느 회원연맹도 자체 헌장이나 규정 내에 IAAF의 참가자격에 관한 규칙 및 규정과 불일치하는 선수참가 자격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배포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IAAF의 참가자격 규칙과 회원연맹의 참가자격 규칙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IAAF의 참가자격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22조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 참가 자격박탈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사람들은 본 규칙이나 대륙 또는 회원연맹의 규칙에 의하여 개최되는 대회에서 부적격자가 된다.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련자 :

- (a) 소속 국가연맹이 현재 IAAF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했을 경우.
이는 현재 자격 정지된 국가연맹이 자국 또는 영토 시민을 위해 개최하는 국내경기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소속 국가연맹의 주관아래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 해당 국가연맹의 규칙에 따라 자격 정지 되었거나 참가자격을 상실 한사람. 단 부적격 및 자격 정지 상태가 본 규칙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 (c) 본 규칙에 의해 경기에 참가를 일시적으로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
 - (d) 규칙 제141조 및 이하 규정에서 명시하는 자격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e) 제3장의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하여 부적격 선고를 받은 사람;
 - (f) 규칙 제60조 4항에 따라 기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적격 선고를 받은 사람.
2. 규칙 제141조 또는 이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된 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기타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선수와 선수가 일원으로써 참가했던 팀은 해당 경기대회로부터 실격되며 이와 함께 선수와 팀이 결과적으로 획득한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포상금 및 참가료 등이 몰수당한다.
 3. 제3장의 도핑방지규칙에 의해 부적격 선고를 받은 선수(또는 선수 지원요원 및 기타 관련자들)가 본 IAAF 규칙이나 대륙 및 회원연맹의 규칙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규칙 제40조 11항에 규정된 조항들을 적용한다.
 4. 기타 규칙에 의해 부적격 선고를 받은 선수(또는 선수 지원요원이나 기타 관련자들)가 본 IAAF 규칙이나 대륙 및 회원연맹의 규칙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해당 선수의 자격 정지 기간은 선수가 최후에 경기에 참가한 시점까지의 자격 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최후에 경기에 참가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Anti-Doping and Medical)

정의(DEFINITIONS)

선수생체여권(APB) 전문가 위원회

IAAF에서 임명한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도핑방지규정에 의거하여 선수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 모듈의 혈액 및 내분비계에 관련된 평가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임상 혈액학, 실험 의학/혈액학, 혈액학 전문 스포츠의학 또는 운동생리학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은 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도핑방지 활동을 시행하는 가맹기구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및 통보하는 웹상의 데이터베이스 운영도구를 말한다.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

검사실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물질, 그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내인성 물질의 상승된 수치를 포함한다),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검사실 또는 그 외의 인증된 검사기구의 보고서를 말한다.

도핑방지기구(Anti-Doping Organisation)

도핑관리과정의 모든 부분을 주관, 실시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 채택의 책임을 지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예컨대,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그 밖의 주요 국제경기대회주관단체,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국가도핑방지기구가 포함된다.

도핑방지규칙(Anti-Doping Rules)

IAAF 총회나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승인될 수 있는 IAAF 도핑방지규칙.

도핑방지규정(Anti-Doping Regulations)

IAAF 총회나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승인될 수 있는 IAAF 도핑방지규정.

선수(Athlete)

개인의 동의와 회원연맹자격, 가입, 승인, 인가 또는 활동이나 경기대회로 인해 IAAF와 각 회원연맹 및 대륙연맹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가맹기구 또는 그 밖의 체육 단체의 관할권에 기속되는 스포츠의 선수로 참가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

육상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공인선수대리인, 대리인, 팀 임직원, 임원, 의무요원 또는 의무보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뜻한다.

시도(Attempt)

의도적으로 도핑방지규칙 위반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의 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이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에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위반을 범하려는 시도만으로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

비정상분석결과로 결정하기 전에 검사실국제표준 또는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조사가 요구된다는 검사실 또는 그 외의 인증 검사기구의 보고서를 뜻한다.

세계도핑방지규약(Code)

World Anti-Doping Code를 뜻한다.

경기대회(Competition)

1일 또는 수일간 시행되는 경기 또는 연속되는 경기대회를 뜻한다.
(예; IAAF 다이아몬드 리그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결과 조치(Consequences of Anti-Doping Rule Violations)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a) 자격박탈은 모든 메달, 득점, 상금 및 참가료의 몰수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특정 경기나 대회에서 선수가 획득한 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b) 자격정지는 규칙 제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기간 동안 모든 경기, 활동,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자격박탈(Disqualification)

위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결과 조치” 참조.

도핑관리(Doping Control)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채취 및 관리, 검사실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 관리 및 청문회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 검사배분계획 수립에서부터 최종 항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뜻한다.

경기종목(Event)

단일 레이스 또는 경기대회의 경기종목을 말한다.

(예; 100m레이스 또는 창던지기)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Filing Failure)

도핑방지규정 또는 회원연맹의 규칙 및 규정 또는 국제검사기준을 준수하며 선수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도핑방지기구에 부합하게 선수가 정확하고 완전한 자신의 소재지 정보 제출을 불이행했을 경우를 뜻한다.

경기기간중(In-Competition)

경기기간중이란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리고 해당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절차가 이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자격정지(Ineligibility)

위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결과 조치” 참조.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Competition)

IAAF 웹사이트에 매년 공표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의 목적에 따라 규칙 제35조 7항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다른 대안적 표준,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되는)을 준수했다 함은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가 합당하게 이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발간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Major Event Organisation)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대륙협회 및 기타 국제적 종합스포츠대회 주최 단체로서 대륙, 지역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를 통괄하는 단체를 뜻한다.

표지자(Marker)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화합물의 집합체 또는 생물학적 지표를 뜻한다.

의무규칙(Medical Rules)

IAAF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승인되는 IAAF 의무규칙.

대사물질(Metabolite)

생체내 변환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들을 뜻한다.

미성년자(Minor)

거주국의 관련법에 명시된 성년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뜻한다.

검사불이행(Missed Test)

검사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선수에 대해 관할권을 지니는 회원연맹이나 도핑방지기구의 규칙이나 규정 또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정보 문서상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60분 시간대의 검사 시간과 장소에 검사 당일 응하지 못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국가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sation)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방지규칙의 채택 및 시행, 시료채취의 지휘, 검사 결과의 관리 및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사항을 시행할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각 국가 또는 영토에 의하여 지정된 독립기구를

뜻한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또는 영토를 위한 지역도핑방지기구로 활동하도록 여러 나라들이 지정하는 독립기구도 포함된다. 관할 공공당국이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도핑방지기구는 그 국가 또는 영토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기구가 된다.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증한 단체를 말한다. 도핑방지 분야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고유 책무를 국가경기단체연합이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영토에서는 국가경기단체연합도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사전미통지(No Advance Notice)

선수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되고, 통지 순간부터 시료제공시까지 관계자가 선수를 계속 동반하는 도핑관리를 말한다.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No Fault or No Negligence)

선수 자신이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시행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예상하지 못했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합리적으로 알 수 없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면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아니었다는 사건 정립을 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했을 때를 뜻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No Significant Fault or No Significant Negligence)

선수가 사건을 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정립할 때,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모든 사건 정황 및 과실 또는 부주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를 뜻한다.

경기기간외(Out-of-Competition)

경기기간 이외의 모든 기간.

참가자(Participant)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관계자(Person)

모든 자연인(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을 포함한), 단체 또는 그 외의 기타 기관.

소지(Possession)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실질적·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관계자가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의 근거가 된다)를 뜻한다. 그러나 관계자가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자가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기도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적 소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당해 관계자가 소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사실을 IAAF, 회원연맹 또는 도핑방지기구에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소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단지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의에 반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구매(전자상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포함한)는 즉 구매자의 소지로 간주된다.

금지목록(Prohibited List)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공표한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금지목록을 뜻한다.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뜻한다.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물질을 뜻한다.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

이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된 청문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시적으로 정지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IAAF의 검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위한 IAAF가 분류한 선수들을 뜻한다. IAAF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시료(Sample/Specimen)

도핑관리 목적으로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뜻한다.

가맹기구(Signatories)

세계도핑방지규약에 서명하고 세계도핑방지규약 준수에 동의한 기구들을 뜻한다.(예: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 주요 국제경기대회주최자, 국가도핑방지기구 및 세계도핑방지기구 등)

실질적인 도움(Substantial Assistance)

규칙 제40조 5항(c)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자는 (i)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소지한 모든 정보를 서명한 서면진술서에 완전하게 밝혀야 하며, (ii) 예컨대 처벌기관 또는 청문위원회가 요청했을 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그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정에 확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공된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제기된 사건의 핵심부분을 이루거나, 제기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정행위(Tampering)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변경하는 행위;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부적절한 간섭; 결과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사기행위로 이를 방해하거나 오도하거나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표적검사(Target Testing)

특정한 시기에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특정 선수나 특정선수집단을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Testing)

검사배분계획, 시료채취, 시료관리 및 검사실로의 시료운반을 포함한 도핑관리 과정의 부분을 뜻한다.

치료목적 사용 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목적 사용 면책을 뜻한다.

부정거래(Trafficking)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3자에게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수송, 발송, 운반, 전달 또는 분배하는 행위(직접 물리적으로 또는 컴퓨터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를 뜻한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 목적으로 또는 수용 가능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사용된 금지물질 혹은 금지방법과 관련된 의무요원의 선의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지물질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전반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물질이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Use)

모든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여하한 방법으로 사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를 뜻한다.

소재지정보 제출 위반(Whereabouts Failure)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을 뜻한다.

소재지정보 제출 서류 (Whereabouts Filing)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속한 선수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서, 다음 분기 동안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설명하는 서류를 뜻한다.

제1절 - 도핑방지규칙

제30조

도핑방지규칙의 적용 범위(Scope of the Anti-Doping Rules)

1. 도핑방지규칙은 IAAF와 가입된 회원연맹 및 대륙연맹에 적용되며, 이 단체들의 활동이나 경기대회에 동의, 회원자격, 가입, 승인, 인가 또는 참가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2. 모든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은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은 각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의 규칙과 규정에 직접적 혹은 참조에 의하여 포함되어야 하고, 각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은 그들의 규칙 하에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또한 규칙과 규정에 추가되는 어떠한 수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각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의 규칙은 그들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에 기록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국제경기대회에서 경쟁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참가자격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해서, 선수와 (그리고 적용범위 내에 있는) 선수지원요원 그리고 기타 관계자는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의 도핑방지규칙과 규정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각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참가자격 보장에 있어서(규칙 제21조 2항 참조), 각 회원연맹은 선수가 양식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사본이 IAAF 사무실로 보내졌다는 것을 보장한다.
4.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은 IAAF와 해당 회원연맹 그리고 대륙연맹이 각각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모든 도핑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5. 선수에게 이행한 모든 국가 수준의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가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각 회원연맹의 책임하에 있다. 일부 국가나 영토에서는 회원연맹이 자체적으로 검사와 결과 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의 국가나 영토에서는 회원연맹의 책임이(회원연맹의 주도로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국가적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제3자인 기타 단체에게 위임되거나 배정되는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국가나 영토에 관하여, 회원연맹 또는 국가연맹(또는 관련 임원)에 적용될 수 있는 도핑방지규칙에 대한 참고는 국가도핑방지기구나 제3자인 기타 단체(또는 관련 임원)에게 참조되어야 한다.

6. IAAF는 회원연맹의 도핑방지 활동을 감시하여야 하고 이는 각 회원연맹(그리고 또는 규칙 제30조 5항에 입각하여 관련 국가 도핑방지기구나 제3단체)에 의해 이행 된 국가 수준의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검사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만약, IAAF가 회원연맹이 국가 수준에서 이행한 경기기간중 그리고/또는 경기기간외 검사나 다른 도핑방지 활동이 회원연맹 선수의 국제 경기 성과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에 근거하여 충분치 않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될 때, 집행이사회는 관련 국가나 영토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도핑방지 활동이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회원연맹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연맹이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칙 제44조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 회원연맹의 관할권에 속하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대한 통지를 관련 회원연맹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가연맹은 통지 사항이 적용되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31조

IAAF 도핑방지기구(IAAF Anti-Doping Organisation)

1. IAAF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기관을 통해 도핑방지 규칙을 행하여야 한다.
 - (a) 집행이사회;
 - (b)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 (c) 도핑 재조사 위원회(Doping Review Board); 그리고
 - (d) IAAF 도핑방지 담당자

집행이사회(Council)

2. 집행이사회는 IAAF 총회에 대하여 목적들을 따라 IAAF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장 제6조 12항(a)을 참조). 이러한 목적 중 하나는 스포츠에서 공정성을 조성하고, 특히内外적으로 육상경기와 기타 스포츠 세계에서 도핑을 없애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스포츠 내에 도핑의 병폐를 근절하는 목표를 지닌 탐지, 제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현장 제3조 8항을 참조).
3. 집행이사회는 현장에 의거하여 IAAF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IAAF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된다면 어떠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sub-commision)를 임시적 또는 영구적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현장 제6조 11항(j) 참조).
 - (b) 총회와 총회간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시적 개정안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개정이 효력을 지니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임시적 개정안은 다음 총회에 보고되어 영구적인 효력을 지녀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장 제6조 11항(c) 참조).
 - (c) 도핑방지규정을 승인, 거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현장 제6조 11항(i) 참조); 그리고

- (d) 현장 제14조 7항에 따라 규칙을 위반한 국가연맹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장 제6조 11항(b) 참조).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Medical and Anti-Doping Commission)

4.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현장 제6조 11항(j)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의 분과위원회로 임명되어 IAAF에게 도핑방지규칙 및 도핑방지규정과 관련되어 포함되는 모든 도핑방지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5.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통상적으로 매년 말에) 회의를 가지는 15명 이하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난 12개월간의 IAAF의 도핑방지 활동을 점검하고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향후 12개월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정립해야 한다.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1년의 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의하여야 한다.
 6.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도핑방지규칙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a) 도핑방지규정과 도핑방지규정에 대한 개정을 필요에 따라 공표하는 것. 도핑방지규정은 직접적 또는 참고에 의하여 세계 도핑방지기구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i) 금지목록
 - (ii) 국제검사표준
 - (iii) 국제표준검사실
 - (iv) 치료목적사용면제 국제표준; 그리고
 - (v)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위한 국제표준
- 이와 같은 서류나 국제표준, 또는 도핑방지규칙을 준수하거나 IAAF의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심층적인 절차와 지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나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도핑방지규정과 이에 대하여 제안된

어떠한 개선안도 도핑방지규칙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할 때에 집행이사회는 도핑방지규정이나 제안된 규정 개선안이 실효를 지니게 되는 날짜를 지정하여야 한다. IAAF 사무국은 이 날짜를 회원연맹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핑방지규정과 제안된 규정 개선안을 IAAF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 (b)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집행이사회에게 필요에 따라 조언하는 것. 현장 제6조 11항(c)에 따라, 총회 사이에서 제안된 도핑방지규칙 개선안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연맹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c) 도핑방지 정보와 도핑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그리고 감시하는 것.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간신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 금지목록에 있는 금지물질과 금지방법
 - (ii) 도핑 사용으로 인한 건강 결과
 - (iii) 도핑관리 절차; 그리고
 - (iv) 선수의 권리와 책임
 - (d) 규칙 제34조 9항(a)에 따른 치료목적 사용 면책 협약하는 것.
 - (e)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된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정립하는 것.
-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상기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의학 또는 과학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7.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집행이사회에게 활동 사항을 각 집행이사회의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들은 IAAF 의무 및 도핑방지 부서를 통해 모든 도핑방지 사항 및 관련 사항을 IAAF 사무국과 소통하여야 한다.

도핑재조사위원회(Doping Review Board)

8. 도핑재조사위원회는 현장 제6조 11항(j)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의 소위원회로 임명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들을 수행한다:
 - (a) 관련 회원연맹이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 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실패하였을 경우, 사건이 규칙 제38조 9항에 의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 (b) 사건에 규칙 제38조 16항에 속하는 특수하거나 제외적인 상황(각각 규칙 제40조 4항과 규칙 제40조 5항에 해당)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
 - (c) 사건이 규칙 제42조 15항에 의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의 자격정지 재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
 - (d) 규칙 제42조 19항에 따라 IAAF가 사건의 기존 관계자가 아닐 경우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의 자격정지 재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
 - (e) 어떠한 사건에서나 규칙 제42조 13항에 따라 항소 성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 (f) 규칙 제45조 4항에 속하는 사건에서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는 가맹기구가 아닌(상기 도핑방지규칙과 다른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기관에서 이행된 검사가 IAAF에 의해 인정이 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도핑재조사위원회는 상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또는 집행이사회에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 또는 지도를 의뢰하거나 집행이사회에게 전반적 방침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의뢰할 수 있다.

9. 도핑재조사위원회는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합법적인 자격을 지녀야 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임시적으로 추가 인원을 어느 때에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0. 도핑재조사위원회는 집행이사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활동 사항을 집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AAF 도핑방지 관리자(IAAF Anti-Doping Administrator)

11.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IAAF의 의무 및 도핑방지 부서의 총담당자이다. 그는 규칙 제31조 5항에 따라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가 설립한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는 이와 관련해 1년에 최소 한 번 또는 요구에 따라 더 정기적으로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 하에 일어나는 도핑 사례들에 대한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규칙 제37조에 따른 국제 수준 선수들의 결과 관리 과정 이행, 규칙 제38조에 의거한 국제 수준 선수들의 임시적 자격정지 결정 그리고 도핑방지규정 절차에 따른 국제 수준 선수들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검사 불이행에 대한 행정 검토에 대한 적용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3.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업무 과정 중 어느 때에나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도핑 재조사위원회 또는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32조 도핑방지규칙 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s)

1. 도핑이란 도핑방지규칙의 제32조 2항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규칙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무엇이 도핑방지규정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금지목록에 포함된 물질과 방법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들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한다.
 - (a) 선수의 시료에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 (i) 어떠한 금지물질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책임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확인된 경우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규칙 제32조 2항(a)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 선수 측의 의도,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이 되지 않아도 위반이 성립된다.
 - (ii) 규칙 제32조 2항(a)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입증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 선수가 B-시료 분석을 포기하여 B-시료가 분석되지 않는 경우 선수의 A-시료에서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수의 B-시료가 분석되고, 선수의 B-시료 분석결과가 선수의 A-시료에서 발견된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경우.
 - (iii) 금지목록에서 허용농도가 명시된 금지물질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된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소량이라도 이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해당된다.
 - (iv) 규칙 제32조 2항(a)의 전반적인 적용에 대한 예외로서,

금지목록 또는 국제표준이 내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물질의 평가에 대한 별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b) 선수의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i) 어떠한 금지물질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의무이다. 이에 따라,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 사용에 대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성립을 위해 선수 측의 의도,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되지 않아도 위반이 성립된다.
 - (ii)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물질적이지 않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범해지는 데에는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 (c)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통지 이후 시료채취에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행위.
- (d) 경기기간외 검사를 위한 선수 확보와 관련하여, 검사국제표준을 따른 규칙에 근거하여 선언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및 검사 불이행을 포함한 요구사항의 위반. IAAF 및/또는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타 도핑방지기관이 정한 18개월의 기간 동안 3번의 검사 및/또는 소재지정보제출을 어떠한 조합으로도 불이행함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 (e) 도핑관리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시도
- (f)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의 소지
 - (i) 선수가 경기기간 중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기간외 기간에서 금지된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경기기간외 기간 동안 소지한 경우. 다만,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의 소지가 규칙 제34조 9항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목적 사용 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합당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 (ii)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중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외 기간에서 금지된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경기기간외 기간 동안 선수, 경기대회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소지한 경우. 다만,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의 소지가 규칙 제34조 9항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목적 사용 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합당한 정당성을 선수지원요원이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 (g)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 (h) 경기기간 중 선수에게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외 기간에서 금지된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을 경기기간외 기간 동안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 또는 위반 시도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기타 형태로 연루된 경우.

제33조 도핑의 입증(Proof of Doping)

입증의 책임 및 기준(Burdens and Standards of Proof)

1. IAAF, 회원연맹 또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은 도핑방지 규칙 위반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기준은 IAAF와 회원연맹 또는 다른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제기된 주장의 심각성을 잘 알고, 관련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정립하였는가의 여부이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 입증기준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 수준보다는 낮다.
2. 선수가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충족시켜야 하는 규칙 제40조 4항(구체적 물질)과 규칙 제40조 6항(가중사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방지규칙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정사항에 대한 반증이나 특정 사실 또는 특정 상황정립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이 입증 기준은 확률 균형에 의하여야 한다.

사실 및 추정사항의 입증방법

(Methods of Establishing Facts and Presumptions)

3.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신뢰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고, 이는 자백, 제3자의 증거물, 증인 성명, 전문가 보고서, 다큐멘터리 증거물, 선수생체여권(ABP) 등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파일링을 통해 얻은 결론과 기타 분석 정보를 포함 하지만 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

아래의 도핑 입증 규칙들은 도핑 사례에 적용된다.

- a)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정한 검사실은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하여 시료 분석 및 관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실 국제 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러한 추정을 반박 할 수 있다.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실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정을 반박한다면, IAAF, 회원연맹 또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은 이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b)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국제표준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칙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그 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칙 위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른 국제표준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칙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 발생을 입증하는 경우, IAAF, 회원연맹 또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은 이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 근거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c) 계류 중인 항소에 기속되지 않는 관할 법정 또는 프로스포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결정이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실이 관련된 결정의 대상자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 d)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청문회의 청문위원회는, 도핑방지규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문회에 출석(사람이 직접 또는 청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하고 청문위원회, IAAF, 회원연맹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주장하는 기타 기관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였으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낼 수 있다.

제34조

금지목록(The Prohibited List)

1. 다음과 같은 도핑방지규칙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주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하는 금지목록에 포함한다.

금지목록의 발행 및 개정(Publication and Revision of the Prohibited List)

2. 금지목록은 IAAF로부터 입수될 수 있어야 하며 IAAF 웹 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각 회원연맹의 관할권 안에 있는 선수들과 기타 관계자들이 최신의 금지목록을 (웹사이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지목록 및/또는 금지목록 개정판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금지목록과 개정판은 상기 도핑방지규칙에 의거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금지목록을 발간한 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지닌다. 이 때, IAAF의 추가적 행동을 요하지 않는다.

금지목록에 게재된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Prohibited Substances and Prohibited Methods Identified on the Prohibited List)

4.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 : 금지목록은 향후의 경기에서 경기력 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은폐제로의 가능성 때문에 상시 (경기기간중과 경기기간외 모두) 도핑으로 금지되는 금지물질과 금지방법, 그리고 경기기간중에만 금지되는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을 규정한다. 금지목록에는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이 일반항목(예 : 동화작용제)의 금지물질과 금지방법 또는 특정 물질과 방법을 열거한 특별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5. 특정물질 : 금지목록에 규정된 동화작용제, 호르몬제, 흥분제,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를 제외한 모든 금지물질은 규칙 제40조 (개인에 대한 제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물질로 분류된다. 금지방법은 특정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새로운 금지물질의 종류 :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새로운 금지물질의 종류를 추가하여 금지목록을 확대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금지물질 종류 내의 일부 또는 모든 금지물질이 규칙 제34조 5항의 특정물질로 분류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금지목록에 포함되는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 금지목록 상의 물질 범주 구분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물질과 방법이 은폐제가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의 잠재력이 없다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다거나, 스포츠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치료목적 사용(Therapeutic Use)

8.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정에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9.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요하는 진료 조건 서류를 가진 선수들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선수에게 경쟁적인 이득을 주지 않으면서 명백하고 확고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 (a) 국제 수준의 선수는 국제 경기 참가 이전에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IAAF에 신청해야 한다(이는 선수가 사전에 국가 수준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허가받았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IAAF는 IAAF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허가를 사전에 요하는 국제 경기의 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신청하려는 선수는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핑방지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IAAF가 허가한 치료 목적사용면책(TUE)은 선수의 국가연맹과 세계도핑방지기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혹은 다른 방법으로).
- (b) 국제 수준이 아닌 선수는 국가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하거나 국가연맹에 의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타 기관 또는 국가연맹이 속한 나라 혹은 영토의 합법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국가연맹은 이와 같은 규칙 하에 허가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하여 신속히 IAAF와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핑방지행정관리 시스템(ADAMS)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c)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스스로 국제 수준 선수나 국제 수준의 선수는 아니지만 해당 국가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에게 허가된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어느 때에나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승인받지 못한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승인 거부 사례를 재검토 할 수 있다. 만약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이와 같은 허가나 거부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 (d)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규칙 제32조 2항(a)),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규칙

제32조 2항(b)),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규칙 제32조 2항(f)) 또는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의 투여(규칙 제32조 2항(h))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의 조항과 일관되며,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국제기준에 따라 인가된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칙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5조 검사(Testing)

1. 모든 선수는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적용되어 참가하는 경기의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요청할 시, 선수들은 언제나 도핑관리 절차에 응해야 한다.
2. IAAF의 회원연맹자격의 조건으로서 각각의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은 그들의 현장 안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각각의 회원연맹 그리고 대륙연맹은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회원연맹의 경우, IAAF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3조 5항 참조);
 - (b) 회원연맹의 국가 선수권 대회 (그리고 대륙연맹의 대륙선수권 대회)에서 IAAF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c) IAAF가 회원연맹의 선수에 대하여 사전 통고 없이 경기기간외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그리고
 - (d) 회원연맹과 국가연맹에 가입 또는 소속되는 조건으로 그리고 회원연맹에 의해 허가되고 주최된 경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선수들이 국가연맹, IAAF 그리고 도핑방지규칙 하에 검사이행 권한을 가진 단체가 경기기간중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시행할 때 검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조항.

3. IAAF와 각 회원연맹은 본 규칙에 따라 어느 회원연맹, 기타 회원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 국가 기관,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제3의 단체에게 검사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4. IAAF와 각 회원연맹 (그리고 상기 규칙 제35조 3항에 의하여 권한을 IAAF와 각 회원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체)의 검사와 더불어 선수들은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a)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에서 시행하는 경기기간중 검사; 그리고
 - (b)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시행하는 경기기간외 검사
 - (i) 세계도핑방지기구
 - (ii) 선수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iii)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국제올림픽위원회나 이를 대신하는 기관

그러나, 경기기간 중에는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시료 채취는 IAAF에 의해 주도 및 감독되어야 하고(규칙 제35조 7항) IAAF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은 국제경기대회에서는 다른 국제 스포츠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예, 올림픽대회에서의 국제올림픽 위원회나 영연방대회에서의 영연방대회연맹(Commonwealth Games Federation at the Commonwealth Games). 만약, IAAF나 다른 국제 스포츠기관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국제경기대회가 열리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도핑방지기구가 IAAF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승인을 받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IAAF와 각 국가연맹은 불필요한 검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완료된 경기기간중 검사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중앙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연맹이 보고하는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의 사본이 IAAF에게도 동시에 보내져야 한다.)
6. IAAF와 각 회원연맹이 본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검사는 검사 실시 기간 중 효력을 지니는 도핑방지규칙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

경기기간중 검사(In-Competition Testing)

7. IAAF는 다음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기간중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 (a) 세계 선수권 대회 (World Championships);
 - (b) 세계육상경기시리즈대회 (World Athletics Series Competitions);
 - (c) 규칙 제1조 1항에 의한 국제초청경기대회(International Invitation Meetings);
 - (d) IAAF 승인 대회;
 - (e) IAAF 로드레이스 (IAAF 마라톤 포함); 그리고
 - (f) 집행이사회가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타 국제경기대회. 이 규칙에 따른 국제경기 대회 목록은 IAAF 웹 사이트에 매년 발표되어야 한다.
8. 집행이사회는 상기 국제경기대회에서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의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 검사를 받게 되는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 (a) 최종 순위 기준 및/또는 무작위 선정 기준;
 - (b) 표적검사를 포함하여 관련 임원이나 기관을 통해 IAAF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
 - (c)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동기록을 수립한 선수
(규칙 제260조 6항 및 8항 참고)
9. 상기 규칙 제35조 3항에 따라 IAAF가 검사를 위임한 경우, IAAF는 해당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방지규칙과 도핑방지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도록 참관할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10. IAAF는 관련 회원연맹 또는 대륙연맹과 협조하여 회원연맹 또는 대륙연맹의 국가/대륙 선수권대회에서 검사를 이행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다.
11. (올림픽 대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규칙이 다른 국제 스포츠 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경기가 개최되는 국가나 영토에서 도핑관리를 하는 회원연맹은 경기기간중 검사를 시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회원연맹이 상기 규칙 제35조 3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회원연맹은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시행되는 검사가 본 도핑방지규칙과 도핑방지규정을 확실히 준수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경기기간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ing)

12. IAAF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주로 국제 수준의 선수들에게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IAAF는 어느 선수에게나 경기기간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기간외 검사는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 또는 국가연맹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규칙 제35조 17항에 따라 소재지정보 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모든 회원연맹과 회원연맹 임원, 및 국가연맹 관할권에 속한 기타 인원은 IAAF(그리고 적합할 시, 다른 회원연맹과 세계도핑방지기구 그리고 검사 이행 권한을 지닌 기타기관)가 규칙에 따라 경기기간외 검사를 시행할 때에 보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의 이행을 방지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통해 방해하는 회원연맹, 회원연맹의 임원 또는 회원연맹의 관할에 속한 기타 인원은 도핑방지규칙에 의하여 제재 받을 수 있다.
14. 경기기간외 검사는 상기 도핑방지규칙 하에 이행되며, 금지목록에서 상시(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금지되는 물질 및 방법을 탐지하기 위해서 또는, 선수생체여권(ABP)의 프로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는, 상기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15. 경기기간외 검사 통계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선정된 각 선수당 그리고 각 회원연맹당 매년 1회씩 발표된다.

소재지정보(Whereabouts Information)

16. IAAF는 이와 같은 규칙과 도핑방지규정에 명시된 바를 따라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의 선수들을 정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는 IAAF의 웹사이트에 발표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갱신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17.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선정된 각 선수들은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소재지정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정보를 제출하는 최종적 책임은 각 선수들에게 있다. 그러나 회원연맹은 IAAF나 다른 관련 검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소속 선수들의 정확한 최신 소재지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보조해야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여 제공한 소재지정보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세계도핑방지 기구와 검사 권한을 가진 기타 기관에게 오직 도핑 관리 목적으로 공유된다.
18.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선정된 선수가 요구된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IAAF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관련된 도핑방지규정 사항이 명시된 규칙 제32조 2항(d)에 근거하여 소재지제출 정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만약,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선정된 선수가 해당 검사 당일 공표한 소재지에 결석하여 검사를 미응시 할 경우, 이는 관련된 도핑방지규정 사항이 명시된 규칙 제32조 2항(d)에 따라 검사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선수가 18개월 기간 이내에 소재지정보 제출에 실패하거나 요구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소재지정보 불이행과 검사 불이행의 조합으로도 총 3회 이상) 일어날 경우, 그는 규칙 제32조 2항(d)에 따라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기타 도핑방지기구에 의해 공표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검사 불이행규칙이 검사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IAAF는 제32조 2항(d)의 이러한 목적 취지를 신뢰할 수 있다.
19.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인원이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나 잘못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는 규칙 제32조 2항(c)를 위반하는 시료채취 회피 행위 및/또는 도핑 관리 절차에 대한 부정행위나 시도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e)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회원연맹이 규칙 제35조 17항에 따라 IAAF의 소재지정보 수집을 보조하게 되었다거나, 회원연맹에 속한 선수들의 소재지정보를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 소재지정보가 정확성과 갱신 확인을 실패하면 규칙 제44조 2항(e)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은퇴 또는 기타 활동정지 후 경기에 복귀하는 경우

(Return to Competition Following Retirement or Other Period of Non-Competition)

20.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은퇴를 이유로 더 이상 경기기간외 검사에 응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나, 다른 이유를 근거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그는 이 사항을 양식에 맞춰 문서로 작성하여 IAAF에 통보해야 한다. 동일한 선수가 복귀를 원할 경우, 경기에 복귀하는 의도를 밝힌 서류를 12개월 전에 IAAF에게 통보하고 이 기간 동안 규칙 제35조 17항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경기기간외 검사에 응하였을 경우에만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은퇴나 기타 이유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이 사실을 IAAF에 통보하지 않은 선수는 규칙 제32조 2항(c)에 따라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6조 시료의 분석(Analysis of Samples)

1.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접수된 모든 시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인증된 검사기관의 사용(Use of Approved Laboratories)

- (a) 규칙 제32항 2조(a)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 존재)의 목적을 위하여, 시료는 오직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증한 검사실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인가된 기구에서만 분석되어야 한다. IAAF가 규칙 제35조 7항을 따라 채취한 시료는 IAAF에 의해 승인받고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 내린 검사실(또는 적용되는 한해서 혈액 검사실이나 모바일 검사실)에게로만 보내져야 한다.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목적(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Samples)

- (b) 시료는 금지목록에 명시된 금지물질과 금지방법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감시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시된 다른 물질)의 검출을 위해 분석되어야 하고 및/또는 도핑방지 목적을 위해 선수의 소변과 혈액 또는 DNA와 게놈과 같은 모체와 관련된 요소를 프로파일링 하기 위한 보조를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관련 프로필 정보는 표적검사를 행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입증하는데 (또는 두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료의 연구(Research on Samples)

- (c) 어떠한 시료도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규칙 제36조 1항(b)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규칙 제36조 1항(b)의 규정과 달리 사용된 시료는 선수의 승낙을 받아서 인적사항 제거 등의 조치를 통해 시료로 특정 선수를 역추적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료의 분석 및 보고 기준(Standards for Sample Analysis and Reporting)

- (d) 검사실은 검사실국제표준에 따라 도핑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안적 표준과 관습 또는 절차와는 달리), 검사실을 위한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해 명시된 절차가 적절하고 만족할 만큼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검사실을 위한 국제표준은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관리에 속한 선수로부터 채취된 모든 시료는 즉시 IAAF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3. 만약 시료분석과 해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실의 분석담당자(또는 혈액 검사기관이나 모바일 검사 담당자)는 어느 때에나 IAAF 도핑방지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 만약 시료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IAAF는 해당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심층 분석이나 다른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는 시료가 비정상분석결과나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귀결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AAF가 의지할 수 있다.
 5. 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채취된 시료는 어느 때에나 규칙 제36조 1항(b)의 목적을 위하여 IAAF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독점적인 지도에 따라 재분석될 수 있다(IAAF의 동의에 따라). 육상경기에서 채취된 모든 시료들은 검사 관할권을 지닌 기관이나 IAAF(검사 관할권을 지닌 기관의 동의에 따라)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독점적인 지도에 따라 재분석될 수 있다. 시료를 재분석하는 상황과 조건은 검사실국제표준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분석이 금지물질 존재나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검출한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검사실은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형분석결과를 검사실 대표 담당자가 서면한 암호화된 형식의 문서에 기재하고, 이를 즉시 IAAF의 검사의 경우 IAAF에게

보내고, 국가 검사의 경우엔 관련 국가연맹에게 보내야 한다(IAAF에게 문서 사본도 보내야 한다). 국가 검사의 경우, 회원연맹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검사실로부터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즉시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형분석결과 또는 사용 그리고 선수의 이름을 신속히 IAAF에게 알려야 한다. 통보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2주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
검사결과관리(Results Management)

1.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의하여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형분석결과,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접수하게 되면 사건은 다음에 명시된 결과관리 절차를 적용한다.
 2. 국제 수준의 선수의 경우, 결과관리 절차는 IAAF의 도핑방지 관리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모든 사건에서 이는 관련된 사람이나 선수가 속한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회원연맹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관련된 사람이나 선수가 속한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회원연맹은 모든 절차에 대해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관리 절차를 위한 보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규칙 제38조의 목적에 따라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게 보고되는 참조 정보는 적용이 가능한 한 회원연맹이 결과관리를 위임한 기관 (또는 결과관리책임을 위임한 단체의 담당기관에 참조되어야 한다. 선수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한 선수지원 요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참조되어야 한다.
 3.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접수하면, 결과관리를 책임지는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a) 비정상분석결과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적용과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 (b) 도핑방지규정이나 검사실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37조 3항에 의한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초기 확인 과정에서 적합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도핑방지규정으로 부터의 이탈,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실국제표준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다음과 사항을 선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a) 비정상분석결과;
 - (b) 위반된 도핑방지규칙;
 - (c) 선수가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 또는 그의 회원연맹을 통하여 IAAF에 제공해야 하는 시간 제한;
 - (d) 선수가 시료 B의 분석을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요구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료 B에 대한 권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 선수가 시료 B의 분석 요구할 경우, 시료 B가 시료 A를 확증시키지 못하여 모든 비용을 검사 이행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관련 검사실 비용은 선수가 부담해야 하는 점;
 - (e) IAAF 또는 선수가 요구하는 시료 B 분석의 실시 날짜와 시간 및 장소는 선수의 비정상분석결과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만약, 관련 검사실이 정해진 날짜에 시료 B의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분석은 차후에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시료 B 분석 날짜를 재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
 - (f) 만약 분석을 요구할 경우 선수 및/또는 선수대표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 시료 B의 검사 개시와 절차 과정을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 (g)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포함하는 시료 A와 B의 검사실 서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선수에게 보내는 통지 사항의 사본을 관련 회원연맹과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내야 한다. 만약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비정형분석결과를 도핑방지 위반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항을 선수와 회원연맹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제표준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은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물질의 존재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비정형분석결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A시료의

비정형분석 결과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한다. (a) 비정형 분석결과가 적용되는 국제표준을 따라 치료목적사용을 위해 허가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b) 비정형 분석결과를 초래한 도핑방지규정 또는 검사실국제표준으로부터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이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도핑방지규정 또는 검사실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비정형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로 진행될 것인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만약, 비정형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로 판단될 경우 선수는 규칙 제37조 4항에 따라 이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IAAF의 비정형분석결과 발표에 대한 결정을 검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는 이상 통보하지 않는다.

- (a)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규칙 제37조 5항에 따른 조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B-시료의 분석을 결정한 경우, IAAF는 선수에게 상기 규칙 제37조 4항(b)-(g)에 명시된 비정형분석결과의 개요와 정보를 포함한 통지를 한 이후 B시료 분석을 시행 할 수 있다.
- (b)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직전에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최자로부터의 요청, 또는 주요 주최자가 제공한 명단에 등록된 선수를 최종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참가 팀원 선정을 위한 최종마감회의를 책임지는 체육단체로부터의 기한이 촉박한 요청,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최자 또는 체육단체가 제공한 명단 중 비정형분석결과가 계류 중인 선수가 있는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한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통지를 선수에게 먼저 한 후, 그 선수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6. 선수는 시료 B 분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료 A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IAAF는 시료 B 분석이 선수를 고려하는 측면과 관련된다고 결정할 경우, 언제든지 시료 B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7. 선수 및/또는 선수의 대리인은 시행되는 시료 B 분석 검사 절차를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선수가 속한 국가연맹의 대표자와 IAAF의 대표자도 참석할 수 있다. 선수가 시료 B 분석을 요청하였더라도 선수의 자격정지 상태는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규칙 제38조 2항 참조)
8. 시료 B의 분석이 완료되면, IAAF 도핑방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검사실 보고서와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하여 요구된 모든 관련 자료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선수가 요청할 경우 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사본은 선수에게 보낸다.
9. 시료 B의 검사실 보고서가 접수되면,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금지목록에 명시된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추가적 조사 결과와 IAAF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선수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10.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형분석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채택되어 적용되는 도핑방지 정책과 규칙에 따라 또는 그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즉각 관련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위반으로 결정이 날 경우, 선수는 IAAF가 정한 기한 안에 직접적으로나 그의 국가연맹을 통하여 해당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다.
11. 도핑 관리와 연관된 사람은 시료 B의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또는 규칙 제37조 9항에 따라 금지목록에서 요구된 시료 B의 추가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또는 시료 B 분석이 선수에 의하여 철회되기 전까지 검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37조 4항 또는 제37조 10항에 의하여 관련 선수나 기타 인원에게 도핑방지규칙 위반 사실이 통보되어진 후에만 관련 선수나 기타 관계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 제38조 2항 또는 제38조 3항에 따라 일시적인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이루어진다.

12.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언제든지 회원연맹에게 그들의 관할권 하에 있는 선수나 기타 인원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필요에 따라 그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 있는 국가도핑방지 기구 및/또는 다른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와 협조할 수 있다). 회원연맹이 IAAF가 요구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명기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연맹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3. IAAF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있는 선수의 명백한 검사 불이행이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에 관한 결과 관리를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특정 나라에서 선수를 검사하거나 IAAF를 대신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나라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속한 선수의 명백한 검사 불이행이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에 관하여 IAAF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결과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른 도핑방지기구가 또는 다른 도핑방지기구를 대신하여 선수를 검사한 경우 해당 국가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속한 선수의 명백한 검사 불이행이나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에 관한 결과 관리는 해당 도핑방지기구가 검사국제표준을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4. IAAF는 도핑방지규정 절차에 의거하여 선수생체여권(ABP)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과관리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도핑방지규정에 의거하여 IAAF가 도핑방지규칙 위반 건을 진행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해당 건에 대한 소속 국가연맹의 결론이 있기 전까지 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선수는 또한 IAAF에 서면으로 자발적인 자격정지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부여하는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임시자격정지를 받거나, 자발적인 자격정지를 수용한 선수는 규칙 제38조 9항에 따라 그가 속한 회원연맹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5. IAAF의 관할권 밖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기타 국제 스포츠기구에 의하여 시행된 검사에 대한 결과 관리 절차는 (예를 들어 영연방 대회(Commonwealth Games)나 범 미주 대회(Pan American Games)의 경우) IAAF가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해당 국제 경기대회로부터 선수의 자격정지를 넘어서는 제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운영된다.

제38조 제재 절차(Disciplinary Procedures)

1.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될 경우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 (a) 임시자격정지;
 - (b) 청문회;
 - (c) 제재나 면책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

2.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규칙 제 37조 4항(c)에 따라 요구한 기한 안에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해명이나 적절한 설명이 선수나 그의 국가연맹으로부터 수령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특정 물질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선수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연맹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국제 수준의 선수의 경우 선수는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모든 기타 사건에서는 선수가 속한 국가연맹이 선수에게 자격정지를 통보하는 문서를 보내야 한다.

선수는 그가 속한 국가연맹에게 자발적 자격정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다면 선수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정 물질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상분석결과가 아닌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는 해당 국가연맹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선수를 잠정적으로 자격정지 시킬 수 있다. 임시자격정지는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선수에게 통보되어진 날짜로 부터 효력을 지닌다.

3. 회원연맹이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거나 선수가 자발적으로 자격정지를 수용하는 경우, 회원연맹은 이 사항을 IAAF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확인시켜야 하고, 이후 선수는 다음과 같은 징계 절차에 기록된다. 자발적인 자격정지는 선수의 서면 문서가 IAAF에 의하여 접수되는 날짜 이후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만약 IAAF가 회원연맹이 요구된 바에 따라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IAAF 도핑방지 관리자가 주체적으로 이와 같은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여야 한다. 임시자격정지가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 의해 부과되면 회원연맹은 이 사항을 통보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징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수에 대한 임시자격정지에 대한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나 자발적인 자격정지를 수용한 선수는 규칙 제38조 9항에 따라 그가 속한 회원연맹의 신속한 청문회를 위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5. 시료 A의 비정상분석결과를 근거로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후 (또는 자발적으로 수용한 후) 시료 B의 분석(만약 IAAF나 선수에 의하여 요청될 경우)이 시료 A의 분석 결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수는 규칙 제32조 2항(a)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의 위반으로 인한 임시자격정지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선수나 선수가 속한 팀이 규칙 제32조 2항(a)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나서 시료 B가 시료 A의 분석결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경기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선수나 팀은 다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결과 관리 절차 중에 은퇴를 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결과 관리 책임을 가진 기구는 결과 관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결과 관리 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은퇴할 경우, 도핑방지규칙에 의거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하였을 시기에 결과 관리 운영 관할권을 가졌던 기구는 결과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청문회(Hearing)

7. 모든 선수는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속한 국가연맹의 관련 재판 기관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 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선수가 해외에서 소속 신분을 얻은 경우, 선수의 이전 소속 국가연맹의 관련 재판 기관이나 새로운 선수등록 소속 신분을 부여한 국가연맹의 관련 재판 기관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문회의 절차는 다음의 원칙을 중시하여야 한다: 적시의 청문회, 공정하고 공평한 청문위원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비용으로 법적 대리인이 대신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제기된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통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제기된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결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 각 관련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세우고 심문할 수 있는 권리 (청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화나 서면 동의로 증거를 수용하는 것에 종속된다),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회가 통역의 비용을 위해 그의 신분과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역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격정지기간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된 합리적인 결정 사항.
8. 선수가 그의 해명이 수용되지 않은 점과 상기 규칙 제38조 2항에 따른 임시적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통지받아야 한다. 만약 14일 내에 그가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서면 통보를 그의 국가연맹이나 관련 기관에 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되어 해당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실은 회원연맹이 IAAF에 5일 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9. 선수가 청문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원연맹에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연하지 않고 청문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회원연맹은 청문회 안건의 모든 사건 정황과 확정된 청문회 날짜를 IAAF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IAAF는 참관인으로서 모든 청문회를 참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IAAF의 청문회 참가와 사건에 대한 모든 기타 관여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회원연맹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만약 소속 회원연맹이 3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청문회를 완료한 후 적정한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IAAF는 이에 대한 기한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엄수되지 못할 경우, 국제적 수준의 선수에 한하여 IAAF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임명된 중재인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칙(항소를 위한 시간제한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항소 중재 절차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회원연맹의 책임과 비용 하에 이행되어야 하고, 임명된 중재인의 결정은 규칙 제42조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회원연맹이 본 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선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0. 선수는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규칙 제40조에 따른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가 규칙 제40조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연맹은 해당 건에 대한 관련 기구(예: 제재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선수의 결과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 결정사항의 사본을 결정이 판결된 후 5일(영업일) 이내로 IAAF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원연맹이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선수의 결과 수용에 대하여 내린 결정은

규칙 제42조에 따라 항소 대상이 될 수 있다.

11. 선수의 청문회는 규정으로 임명되거나 회원연맹이 승인한 관련 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연맹이 다른 재정 기관이나 분과위원회 또는 회원연맹이 내외에 있는 기관에게 청문회 이행을 위임할 경우나 기타 이유로 회원연맹 밖에 있는 국가 기관, 분과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이 규칙 하에 해당 선수의 청문회를 이행하는 책임을 지닌 경우, 해당 기관, 분과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의 결정은 규칙 제42조의 목적을 위해 규칙이 적용되는 본래 회원연맹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이 규칙에서의 “회원연맹”이라는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12. 선수의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에서 관련 재정 기관은 먼저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회원연맹이나 기타 기소 기관은 해당 재정 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도핑방지 규칙 위반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진다(규칙 제33조 1항 참조).
 13. 만약 회원연맹의 관련 재정 기관이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이 사항은 결정된 시점 이후 5일(영업일) 이내에 IAAF의 도핑방지 관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작성한 서류 사본과 함께).
- 도핑재조사위원회(Doping Review Board)는 해당 사건이 규칙 제42조 15항에 의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도핑재조사위원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기로 결정할 경우, 선수의 임시자격정지가 적절하다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시 부과할 수 있다.
14. 만약 회원연맹의 관련 재정 기관이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되기 전에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선수는 규칙 제40조에 의해 적용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제의 감경을 입증하기 위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외상황 또는 특수상황(Exceptional/Special Circumstances)

15. 도핑방지규칙 하에 내려진 예외상황 또는 특수상황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선수의 국적, 거주지, 수준 또는 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같은 법적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 된다:
- (a) 금지물질이 선수의 체내조직 또는 체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선수의 개인적 의무이다. 선수는 금지물질이 자신의 몸에서 발견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경고 받아야 한다(규칙 제32조 2항(a), (i) 참조).
 - (b) 예외적 경우는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며 대부분 모든 사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설립될 수 있다.
 - (c) 규칙 제38조 15항(a)에 의한 선수의 개인적 의무를 고려할 때 다음의 상황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지 않는다 :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선수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였다는 주장, 금지물질을 실수로 섭취했다는 주장, 금지물질이 오염된 식품 보충제를 통해 섭취되었다는 주장,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물질 포함 사실을 모르고 처방한 물질을 통해 섭취했다는 주장.
 - (d) 그러나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IAAF, 선수가 소속된 국가연맹, 도핑방지기구, 형사당국 또는 전문징계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IAAF, 국가연맹, 도핑방지기구, 형사사법당국 또는 전문징계기구가 기타 관계자에 의해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다는 것을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나 형사사법당국 또는 징계기구가 기타 관계자에 의해 범죄 또는 전문 규칙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된다.
 - (e) 특정 물질을 위한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하여 선수가 특정 물질이 어떻게 그의 체내에 투약되거나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할 수 있고, 특정 물질이 그 선수의 기록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경기력 향상 물질 사용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

다고 해명할 수 있는 경우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된다.

16. 국제수준의 선수가 연루된 사건을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는 결정은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의하여 내려진다(규칙 제38조 20항 참조).
17. 만약 선수가 본인의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 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관련 재판 기구는 제시된 증거를 근거로 하고 규칙 제38조 15항에 명시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해당 선수의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규칙 제32조 2항(a)에 적용되는 사건에서 자격정지기간을 경감시키기 위해 선수는 금지약물이 체내에 투약된 경위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18. 만약 제시된 증거를 검사한 후, 관련 재판 기관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해당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재정 기관은 규칙 제40조에 명시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가연맹은 결정이 내려진 날짜 이후 5일(영업일) 이내에 관련 재판 기관의 결정을 IAAF와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만약 제시된 증거를 검토한 후, 관련 재정 기관이 사건에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선수가 국제 수준의 선수라면 관련 재정 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사무총장을 경유해서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사건을 위탁하고 상황의 예외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
 - (b) 관련 재정 기구의 위탁을 지지하도록 선수 및/또는 그의 국가연맹을 관련시키거나 해당 위탁 지지를 독립적으로 표명 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예외적 또는 특수상황에 대한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청문회를 연기하여야 한다.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선수의 임시자격정지는 계속 적용된다.

20. 관련 재정 기관의 위탁을 받은 후, 도핑재조사위원회는 제출된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예외적 또는 특수상황에 대한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도핑재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이메일(email)이나 전화, 팩스, 또는 스스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의논할 수 있는 권한;
 - (b) 추가적인 증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c) 선수로부터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d) 필요시 선수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
- 심층적인 증거 또는 자료나 선수에 의한 추가적인 해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핑재조사위원회는 규칙 제38조 15항에 명시된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며 해당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 어떠한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에서 선수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규칙 제40조 5항(a)),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규칙 제40조 5항(b)) 또는 선수가 다른 사람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이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규칙 제40조 5항(c)), 또는 특정 물질과 대한 제재 기간 경감에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규칙 제40조 4항)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사무총장의 서면 문서로 회원연맹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1. 도핑재조사위원회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재정 기관은 이러한 결정에 귀속되어 규칙 제40조에 명시된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 회원연맹은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하는 관련 재정 기관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결정 이후 5일(영업일) 내에 IAAF와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도핑재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할 경우, 관련 재정 기관은 규칙 제38조 20항에 의해 분류된 도핑재조사 위원회의 범주 사항과 함께 규칙 제40조 4항이나 제40조 5항을 따라 선수의 제재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연맹은 관련 재정

기관의 결정과 제재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결정 이후 5일(영업일) 내에 IAAF와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상황에서,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관한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는 기준은 규칙 제42조 21항에 명시될 것이다.
24. 국제 수준의 선수가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재정 기관은 규칙 제38조 15항에 명시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해당 선수의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선수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회원연맹은 관련 재정 기관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결정 이후 5일(영업일) 내에 IAAF와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재정 기관이 해당 선수의 사건에서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판단과 제재에 관련된 모든 사실적 근거를 서면화 된 결정 사유에 부분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개인 경기결과의 자동 실격
(Automatic Disqualification of Individual Results)

경기기간중 검사와 관련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의 실격으로 이어지며, 이와 함께 해당 선수가 결과적으로 얻었던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 및 참가료 등이 몰수당한다.

제40조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 (Sanctions on Individuals)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발생된 경기대회 결과의 무효(Disqualification of Results in the Competition during which an Anti-Doping Rule Violation Occurs)

1. 경기기간 중이나 경기대회와 연관되어 이루어진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해당 경기대회로부터 실격과 함께 해당 선수가 결과적으로 얻었던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 및 참가료 등이 몰수당한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제외된다.

만약 선수가 자신의 위반에 대하여 과실과 부주의가 없다고 입증할 경우, 선수의 개인 결과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선수의 기타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경기 결과에 대해 실격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또는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Ineligibility for Presence, Use or Attempted Use or Possession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Prohibited Methods)

2. 규칙 제40조 4항 및 규칙 제40조 5항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 또는 규칙 제40조 6항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 제32조 2항(a)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규칙 제32조 2항(b)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또는 규칙 제32조 2항(f)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반 : 2년간의 자격정지.

기타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Ineligibility for Other Anti-Doping Rule Violations)

3. 규칙 제40조 2항 이외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규칙 제32조 2항(c) (시료채취 거부 또는 불응) 또는 규칙 제32조 2항(e) (도핑관리에 대한 부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다. 다만, 규칙 제40조 5항 또는 규칙 제40조 6항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b) 규칙 제32조 2항(g)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또는 규칙 제32조 2항(h)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최소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까지이다. 다만, 규칙 제40조 5항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규칙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 선수지원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선수지원요원은 영구 자격정지가 부여된다. 아울러, 체육관련법 외의 법률과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는 규칙 제32조 2항(g) 또는 제32조 2항(h)의 중대 위반은 관할 행정청, 근로당국 또는 사법당국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 (c) 규칙 제32조 2항(d)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규칙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된다.

**특수 상황에서의 특정물질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
(Elimination or Reduction of Period of Ineligibility for Specified Substances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4.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물질이 어떻게 그 신체 내에 유입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하고, 그러한 특정물질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규칙 제40조 2항의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 번째 위반 : 최소 처벌은 견책과 향후 경기대회에서의 자격정지기간은 없으며, 최대 처벌은 2년간의 자격정지이다.

면제 또는 경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음을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입증하는 진술과 더불어 보강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는 자격정지기간의 단축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는 척도가 된다.

이 조항은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물질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이 청문위원회에 의해 충분히 납득된 상황에만 적용된다.

예외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경감(Elimination or Reduction of Period of Ineligibility Based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5. (a)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취소된다. 선수의 시료에서 규칙 제 32조 2항(a)(금지물질의 존재) 규정 위반에 있어서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되는 경우, 선수가 자격정지기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금지물질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어 자격정지가 면제되는 경우, 이러한 도핑방지

규칙 위반은 규칙 제40조 7항의 복수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산정 시에 이를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b)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만, 경감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1/2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되는 자격정지기간이 8년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 제32조 2항(a) (금지물질,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의 위반과 관련하여 금지물질, 금지물질의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되는 경우, 선수가 자격정지기간을 단축받기 위해서는 금지물질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 (c) 도핑방지규칙 위반 적발 또는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 :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회원연맹 심사위원회는 규칙 제42조에 의한 최종 항소 결정 또는 항소기간 만료 이전에, (규칙 제38조 16항에 의거하여 국제 수준의 선수가 입증을 위해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 적용될 때)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에 IAAF, 선수의 국가연맹, 도핑방지기구, 행위 또는 전문징계기관에게 중대한 도움을 주고, 이를 IAAF, 선수의 국가연맹, 도핑방지기구, 형사당국 또는 전문징계기관과 다른 사람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발견 또는 입증하거나 형사 혹은 징계 기관이 형사범죄나 전문규칙 위반을 발견 또는 입증하였을 시, 개별 사건에서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유예시킬 수 있다. 규칙 제42조에 의한 최종 항소 결정 이후 또는 항소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도핑재조사위원회가 규정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연맹은 적용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유예시킬 수 있다. 만약 도핑재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연맹이 이와 같은 결정에 귀속되어 자격정지기간은 유예될 수 없다. 만약 도핑재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연맹은 정지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여부는 도핑방지 규칙위반의 심각성과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3/4 이상이 정지될 수 없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 자격정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연맹이 이 규칙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유예시키는 경우, 회원연맹은 이러한 결정에 항소 권한을 가진 IAAF와 다른 기관에게 이 결정의 정당성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차후 회원연맹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기대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자격정지 기간의 일부를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원상 복구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 (d) 다른 증거가 없이 도핑방지규칙 위반 인정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시료채취 통지를 받기 전에 (또는 규칙 제32조 2항(a) 이외의 도핑방지규칙위반의 경우, 규칙 제37조에 의해 시인한 위반에 대한 첫 번째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시인하고, 이 시인이 시인 당시에 신빙성 있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기간이 경감될 수 있다.
- (e)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가 이 규칙의 복수조항에 준하여 제재의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증명한 경우 : 규칙 제40조 5항(b), © 및 (d)에 의한 감경이 적용되기 전에 본래의 자격정지기간이 규칙 제40조 2항, 3항, 4항 및 6항에 따라 결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40조 5항(b), (c) 및 (d)의 규정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의 단축 또는 유예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단축 또는 유예될 수 있지만, 본래 자격정지기간의 1/4이하 이어서는 안된다.

자격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가중처벌요건(Aggravating Circumstances which may Increase the Period of Ineligibility)

6.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포함하는 개별적 사건이 규칙 제32조 2항(g)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와 규칙 제32조 2항(h) (금지방법 또는 금지물질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의 위반 외의 사항으로서 가중처벌요건이 존재하여 기준적인 제재보다 긴 자격정지기간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문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자격정지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a) 기준 제재보다 연장된 자격정지기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중처벌요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공모나 집단을 포함한 도핑 계획의 일환으로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나 기타 관계자, 복수의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또는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을 여러 차례 소지하거나 사용한 선수나 기타 관계자,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 외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통한 경기력 향상 효과를 얻은 일반 개인, 도핑방지규칙 위반의 검출이나 판결을 방해하거나 피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선수나 기타 관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예시된 가중처벌요건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다른 가중제재조치 요소도 자격정지기간 연장을 정당화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b) 선수나 기타 관계자는 해당되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제기된 후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이를 시인함으로써 이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안에 규칙 제37조 4항(c)를 따라 서면 해명을 제공하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 위반(Multiple Violations)

7. (a) 두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 : 첫 번째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규칙 제40조 2항 및 제40조 3항 (규칙 제40조 4항 또는 규칙 제40조 5항에 따른 면제, 단축 또는 정지, 또는 규칙 제40조 6항에 따른 가중에 따라)에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첫번째위반 두번째위반	RS	FFMT	NSF	St	AS	TRA
RS	1–4년	2–4년	2–4년	4–6년	8년–10년	10년–영구
FFMT	1–4년	4–8년	4–8년	6–8년	10년–영구	영구
NSF	1–4년	4–8년	4–8년	6–8년	10년–영구	영구
St	2–4년	6–8년	6–8년	8년–영구	영구	영구
AS	4–5년	10년–영구	10년–영구	영구	영구	영구
TRA	8년–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두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표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RS(규칙 제40조 4항에 의한 특정물질 제재조치의 단축)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특정약물이고 규칙 제40조 4항에 규정된 기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규칙 제40조 4항에 의하여 단축된 제재가 적용된다.

FFMT(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규칙 제40조 3항(c)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된다.

NSF(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의하여 단축된 제재조치)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선수가 규칙 제40조 5항(b)에 의한 중대한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규칙 제40조 5항(b)에 의한 경감된 제재가 처벌된다.

St(규칙 제40조 2항 또는 제40조 3항(a)에 의한 표준제재조치)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제40조 2항 또는 제40조 3항(a)에 의한 표준제재조치를 적용했거나 적용하여야 한다.

AS(가중제재조치)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규칙 제40조 6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규칙 제40조 6항에 의한 가중된 제재가 처벌된다.

TRA (부정거래 또는 투약) : 이러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부정행위나 투약에 관한 규칙 제40조 3항(b)에 의한 제재가 처벌된다.

- (b) 두 번째 위반에 대한 규칙 제40조 5항(c) 및 규칙 제40조 5항(d)의 적용 : 두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범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40조 5항(c) 또는 제40조 5항(d)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일부 유예 또는 경감 권리를 입증하는 경우, 청문위원회는 먼저 규칙 제40조 7(a)항의 표에서 확인된 범위 내에서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한 후, 적합한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또는 경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40조 5항(c) 또는 제40조 5항(d)에 의한 유예와 경감을 적용한 후의 잔여 자격정지기간은 최소한 본래 적용된 자격정지기간의 1/4이상 이어야 한다.
- (c) 세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 : 세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해당 위반이 규칙 제40조 4항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경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규칙 제32조 2항(d) (소재지정보 미제출 또는 검사 불이행) 규정의 위반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영구자격정지가 된다. 이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8년부터 영구자격정지까지이다.

- (d) 가능성 있는 복수 위반에 대한 추가적 규칙 :
- (i) 규칙 제40조 7항 규정에 의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두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규칙 제37조 (결과 관리)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첫 번째 도핑방지 규칙 위반을 범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도핑방지규칙의 두 번째 위반으로 고려될 것이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위반은 통합하여 두 번째 단일 위반이 되며, 제재는 더 엄한 제재가 반영되는 위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복수 위반 발생은 가중제재조치(규칙 제40조 6항)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ii) 첫 번째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판정 이후에,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두 개의 위반이 동시에 판정될 시 부과될 수 있는 제재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첫 번째인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시점으로 그 이후의 모든 경기결과는 규칙 제40조 8항에 의하여 실격처리 된다. 이전에 범한 위반의 뒤늦은 발견으로 인한 가중제재조치(규칙 제40조 6항)의 평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첫 번째로 범한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전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이는 규칙 제37조 4항(c)에 의하여 서면 문서로 작성되어 마감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판정 이후에 이전의 다른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e) 8년의 기간 동안 복수의 도핑방지규칙 위반 : 규칙 제40조 7항과 관련하여, 복수 위반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각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모두 8년의 기간 내에 발생되어야 한다.

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 이후 경기결과의 실격

(Disqualification of Results in Competitions Subsequent to Sample Collection or Commission of an Anti-Doping Rule Violation)

8. 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따라 양성시료가 검출된 경기대회 결과의 자동 실격과 더불어, 양성시료가 채취된 날 (경기기간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 여부를 불문함) 또는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의 시작 시점까지 획득된 그 외의 모든 경기 결과는 실격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처벌과 더불어, 모든 타이틀, 상, 메달, 득점, 상금 및 참가료가 몰수된다.
9. 규칙 제40조 8항에 따라 몰수된 상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된다.
 - (a) 몰수된 상금의 배분 : 상금이 자격박탈을 당한 선수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해당 경기나 경기대회에서 자격이 박탈된 선수보다 한 순위 아래의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다시 할당된다. 상금이 자격이 박탈된 선수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 자격이 박탈된 선수가 모든 상금을 배상하고 난 후에 해당 경기나 대회에서 자격박탈 선수보다 한 순위 뒤의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다시 할당된다.
 - (b) 도핑방지규칙 위반 판정 이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격박탈을 당한 선수는 우선 규칙 제40조 8항에 따라 몰수된 모든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규칙 제40조 12항(a)참조).

자격정지기간의 시작(Commencement of Period of Ineligibility)

10.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청문회결정일 또는 청문회가 철회된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수용한 날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된 기타 날짜로부터 기산된다. 어떠한 임시자격정지기간이라도 (부과된 것이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든) 부과된 전체 자격정지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 (a) 적시 자인 : 선수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해 제기를 받고 신속하게

- 문서로 작성하여 수용하는 경우, (규칙 제37조 4항(c), 제37조 10항, 또는 도핑방지규정의 제6조 16항에 의하여 서면사유서를 제출하는 기한 내에 그리고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가하기 전의 기간을 의미한다) 자격정지기간은 시료채취일 또는 최종 도핑방지규칙 위반 일자까지 소급해서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개별사건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 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청문회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제재가 달리 부과된 날로부터 최소한 자격정지기간의 1/2 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b)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고 선수가 이를 준수한 경우, 선수의 이러한 임시자격정지기간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 (c) 선수가 자발적으로 서면화된 임시자격정지를(규칙 38조 2항에 의거한) 수용하고 그 때부터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선수의 이러한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기간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규칙 제38조 3항에 따라 자발적 자격정지는 IAAF가 수용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 (d) 당해 선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선발되지 않았는가와 상관없이,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의 유효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격정지기간 중의 선수 신분(Status during Ineligibility)

11. (a)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 금지 : 자격정지가 선고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IAAF나 대륙연맹 또는 회원연맹(또는 회원연맹의 다른 회원단체나 국가연맹)에 의해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회원연맹 또는 회원연맹의 클럽, 또는 회원연맹 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한 경기 또는 활동 또는 프로리그,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대회주관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한 경기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이 규칙의 목적에 의한 “활동”이라 함은 선수, 코치, 기타 선수지원요원으로서 소속 회원연맹(또는 회원연맹 예하의 클럽이나 가맹단체) 또는 협약을 맺은 단체(예 : 국가훈련센터)에서 주최하는 훈련캠프, 시범경기, 연습 또는 기타 활동, 그리고 이 규칙에서 참조하는 단체의 임원, 고용인 또는 자원봉사자로 행정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자격정지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중에도 검사 대상으로 남는다. 4년 이상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4년의 자격정지기간이 완료된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육상경기 이외 종목의 지역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대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전국선수권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또는 참가자격을 위한 점수 누적 등) 대회이어서는 안 된다.

- (b)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 금지 위반 행위 :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40조 11항(a)에 규정된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참가의 결과는 실격되며, 본래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은 위반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참가금지위반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새로운 자격정지기간은 규칙 제40조 5항(b)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가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규칙 제40조 5항(b)에 의한 단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초의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한 결과관리를 한 기관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c) 자격정지기간 중 재정적 지원 중단 : 또한, 규칙 제40조 4항에 규제된 특정물질로 인한 단축된 제재 이외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하여, 당해 위반자에 대한 스포츠와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스포츠와 관련한 수혜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 이후 경기대회에 복귀(Return to Competition following Ineligibility)

12. 정해진 자격정지기간 만료 시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수나 기타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a) 상금의 반환 : 비정상분석결과나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초래한 시료채취일 또는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적발된 날 이후의 관련 경기대회에서 선수가 얻은 상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b) 메달의 반환 : 비정상분석결과나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초래한 시료채취일 또는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적발된 날 이후의 경기에서 선수가 (개인 및 단체경기 모두) 얻은 메달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c) 복귀를 위한 검사 : 선수는 임시자격정지기간 동안 IAAF와 그가 속한 국가연맹 그리고 도핑방지규칙 하에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지닌 기관이 시행하는 경기기간외 검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에 따라 갱신된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 수준의 선수가 1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적어도 4회의 복귀 검사를(경기기간외 검사 3회는 모든 범위의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에 대한 검사는 자격정지기간 만료 직전 1회)받아야 한다. 복귀를 위한 검사 비용은 선수가 부담하여야 하고, 각 검사 사이에는 최소 3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IAAF는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을 따라 복귀 검사를 시행하는 책임이 있고, 채취된 시료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검사기관에서 분석될 경우 검사 관할권을 지닌 다른 기관이 시행한 이 검사는 IAAF가 이러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할 수 있다. 달리기 종목, 경보경기 또는 혼성경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어도 해당 선수의 최후의 두 차례 복귀 검사에서 적혈구 생성 촉진제 물질과 이를 방출하는 인자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모든 복귀 검사 결과는 관련 도핑관리 문서 사본과 함께 선수가 경기에 복귀하기 전에 IAAF에 보내야 한다. 만약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복귀 검사에서 비정상분석결과나 다른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적발될 경우, 이는 별도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선수는 징계 절차와 추가적인 제재를 필요에 따라 받게 된다.

- (d) 선수가 규칙 제40조 12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자격정지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선수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다시 얻게 되고, 선수나 그가 속한 국가연맹이 IAAF에게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41조

팀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s on Teams)

1. 선수가 릴레이레이스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여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릴레이 팀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에서 실격되며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의 몫수를 포함한 위반에 따르는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가 이후의 연속되는 경기에서 릴레이레이스의 일원으로서 참가할 경우,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고 그의 릴레이레이스 참가가 도핑방지규칙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해당 릴레이 팀은 차후의 경기에서 실격당하며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의 몫수를 포함한 위반에 따르는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
2. 팀의 성적이 개인의 성적을 합계로 정해지는 경기에서 도핑방지 규칙을 위반한 선수가 릴레이 팀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 팀은 자동적으로 실격되지 않지만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의 점수가 팀 총 점수에서 제외되고 다음 차례의 선수의 점수로 대체된다. 만약 위반 선수의 점수가 팀의 점수에서 제외되어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인원수가 요구되는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된다.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가 팀의 일원으로 차후의 경기에 참가하여 도핑방지규칙을 해당 선수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고 그의 팀원으로서

경기 참가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원칙은 팀의 합산 점수 계산에 적용된다.

3. 규칙 제40조 8항의 경기 결과 실격에 추가되는 사항 :

- (a) 릴레이 팀의 특정 선수가 양성 반응의 시료가 채취된 날짜부터 임시자격정지가 시작되는 날까지 참가한 경기의 팀 결과는 실격되며 타이틀, 상, 메달, 득점과 상금의 몰수를 포함한 위반에 따르는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
- (b) 릴레이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일원인 특정 선수가 양성 반응의 시료가 채취된 날짜부터 임시자격정지가 시작되는 날까지 참가한 팀의 경기 결과는 자동적으로 실격되지 않으나 도핑방지규칙을 위반한 선수의 점수가 팀 총점수에서 제외되며 다음 차례의 선수의 점수로 대체된다. 만약 위반 선수의 점수가 팀의 점수에서 차감되어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인원수가 요구되는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된다.

제42조 항소(Appeals)

항소 대상 결정(Decisions subject to Appeal)

1. 도핑방지규칙 하에 모든 결정은 구체적으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피항소인이 지시하지 않거나 규칙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모든 결정은 효력을 가진다(규칙 제42조 15항 참조). 항소가 개시되기 전, 도핑방지규칙에 제시된 모든 사후 결정 검토 사항은 사용되어야 한다(적용되는 규칙에 의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항소 권리가 있고 다른 기관이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해당 결정에 대하여 다른 절차를 사용할 필요 없이 직접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도핑방지규칙 위반 또는 조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 (Appeals from Decisions regarding Anti-Doping Rule Violations or Consequences)

2. 다음은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관련된 소멸되지 않는 결정 사항과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항소될 수 있는 결과 사항의 목록이다.
 -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다는 결정
 -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결정
 -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지 않았다는 결정
 -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적절한 부과를 하지 못한 결정
 - 도핑재조사위원회가 규칙 제38조 21항에 따라 국제 수준의 선수의 사건에서 제재의 면제나 단축을 위해 적용되는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
 -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를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수용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
 - 도핑방지규칙 위반 절차가 절차적인 이유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결정 (예 : 처방 포함)
 - 규칙 제40조 11항에 따라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국가연맹이 도핑방지규칙 위반이나 이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관할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결정.
 - 비정상분석결과나 비정형분석결과를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결정 또는 규칙 제37항 10조에 의한 조사 이후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
 - 규칙 제38조 9항에 의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뢰된 사건에 대한 스포츠중재재판소 대표 중재자의 결정.
 - IAAF가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도핑방지 규칙이나 결과에 대한 기타 결정 사항.
3. 국제수준의 선수가 관련된 항소 : 국제 수준의 선수 또는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회원연맹의 관련 단체의 결정은 국가 수준에서 추가 검토 또는 항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래의 조항들에

따라서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다.

4. 국제 수준의 선수와 관련되지 않은 항소 : 국제 수준의 선수 또는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서 회원연맹의 관련 기관의 결정은 (규칙 제42조 8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회원연맹이 확립한 규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소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적절한 시기에 청문회개최.
 -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청문위원회.
 - 항소인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변호인을 세울 권리.
 - 항소인의 자체적인 비용 부담으로 청문회에 통역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
 - 적절한 시기에 서면의 합리적인 결정.국가 수준 재심 기구의 결정은 규칙 제42조 7항을 따라 항소될 수 있다.
5. 항소할 권리를 지닌 기관 : 국제 수준의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다음의 기관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 항소된 판결에 귀속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b)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기타 기관
 - (c) IAAF
 - (d)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거주하는 나라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e) 국제올림픽위원회 (판결이 올림픽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올림픽대회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f) 세계도핑방지기구
6. 국제 수준의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에서 다음의 기관은 국가 수준의 재심 기구에 결정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 항소된 결정에 귀속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b)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기타 기구

(c) 회원연맹

(d)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e) 세계도핑방지기구

IAAF는 국가 수준의 재심 기구에 결정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은 없지만, 국가 수준의 재심 기관의 청문회에 참관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규모의 청문회에서 IAAF의 참석은 규칙 제42조 7항에 따라 국가 수준의 재심 기관의 결정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국제 수준의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다음의 기관들은 국가 수준의 재심 기구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IAAF;

(b) 국제올림픽위원회 (판결이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c) 세계도핑방지기구

8. 국제 수준의 선수나 그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IAAF와 국제올림픽위원회 (판결이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회원연맹의 관련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직접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회원연맹이 국가 수준에서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지 못한 경우

(b) 규칙 제42조 6항에 속한 어떤 기관도 회원연맹의 국가 수준 재심 기관에게 항소하지 않은 경우

(c) 회원연맹의 규칙이 명시하는 경우

9.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항소를 하는 모든 기관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보조를 받아 결정이 항소된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지시할 경우, 이와 같은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적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항소
(Appeals by WADA from a Failure to Render a Timely Decision)**

10.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서, IAAF나 회원연맹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여부를 결정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IAAF나 회원연맹이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직접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만약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위원회가 도핑방지규칙이 위반되었다고 결정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적절하게 항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 및 법적 비용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기관(IAAF나 회원연맹)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s from Decisions Granting or Denying a Therapeutic Use Exemption)

11.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또는 거부를 번복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결정이 번복된 선수, IAAF 또는 회원연맹에 의하여 (또는 규칙 제34조 9항에 따른 지정 단체)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외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의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그 외의 선수는 규칙 제42조 4항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국가 수준의 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항소기구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거부하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적합하게 제출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대하여 IAAF나 회원연맹이 (규칙 제34조 9항에 따라 자체적으로나 또는 지정된 단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미결정은 이 규칙에 명시된 항소 권한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도핑방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회원연맹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s from Decisions Sanctioning Members for Failing to Comply with Anti-Doping Obligations)

12. 규칙 제44조를 따라 도핑방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회원연맹에 제재하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회원연맹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만 항소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Time Limits for Appeals to CAS)

13. 이와 같은 규칙에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IAAF가 예상 피항소인인 사건에서 도핑재조사위원회가 규정하지 않는 한) 피항소인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성명을 제출하는 데에 45일의 기간이 있으며, 이는 항소 채택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작성된 문서의 소통 시작 일로부터 45일이거나(IAAF가 예상 피항소인일 경우,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 규칙 제42조 8항(b)에 따라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었던 날짜를 시작 일로부터 45일이다. 항소 성명 제출 기한인 15일 내로 피항소인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후 30일 내로 피고 기관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회답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항소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항소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짜로부터 (a)21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를 접수하고 (a)21일 후에 항소 제출을 할 수 있다.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IAAF Appeal of Decisions to CAS)

15.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해야 하는 가의 여부 또는 IAAF가 본래 기구가 아니어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에 참가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결정은(규칙 제42조 19항 참조)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의해 판단된다. 도핑재조사위원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선수가 다시 자격정지를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의 피항소인(Respondents to the CAS Appeal)

16. 일반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의 피항소인은 판결을 항소 대상으로 만든 기관을 뜻한다. 이와 같은 규칙 하에 회원연맹이 청문회의 집행을 다른 기관, 위원회, 또는 기관에 규칙 제38조 11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의 피항소인은 해당 회원연맹이어야 한다.
17.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피항소기관이 되는 경우, IAAF는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기관을 추가적인 피고로서 참석시킬 수 있는데 이는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를 포함한다.
18.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는 여러 기구 중의 하나일 경우 다른 피고 기구와 함께 중재기관 선정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임명되는 중재기관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IAAF가 택한 임명 기구가 선택된다.
19.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의 관련 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IAAF는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칙에 따라 항소 재판에 모든 권리를 지닌 기구로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에의 항소(The CAS Appeal)

20.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뢰된 모든 항소는 (규칙 제42조 21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항소 대상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청문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회는 회원연맹의 관련 재판 기관이나 IAAF의 결정이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 재판 기관이나 IAAF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회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회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나 관련

결정으로 인해 부과된 결과에 대하여 제재를 추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다.

21.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대한 항소가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청문위원회는 도핑재조사위원회와 본 기관의 결정에 귀속된 자료만을 검토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위원회는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관여할 수 있다.
 - (a)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객관적인 사실 근거가 없을 때, 또는
 - (b) 해당 결정이 도핑재조사위원회에 의해 고려된 이전의 사건과 확연하게 불일치할 때, 그리고 불일치성이 관련 사건의 근거나 사실을 토대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 또는
 - (c) 도핑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검열 기관이 도달할 수 없는 결정과 같을 때
22. IAAF를 관련시키는 모든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스포츠중재재판소 위원회는 IAAF 현장과 규칙 그리고 규정에 귀속된다(도핑방지규정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칙과 IAAF 현장과 규칙 및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IAAF 현장과 규칙 및 규정이 우선권을 가진다.
23. IAAF를 관련시키는 모든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에서 통할하는 법은 모네가스크 법령(Monegasque law)이며, 중재는 관련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로 진행된다.
24. 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위원회는 적절한 경우에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를 위한 비용이나 비용에 대한 공헌 비용을 관련 기관에 보상하여 줄 수 있다.
25.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관련 기관과 회원연맹에 귀속되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고 모든 회원연맹은 이와 같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

회원연맹의 보고책임(Member Reporting Obligations)

1. 모든 회원연맹은 도핑방지규칙과 도핑방지규정에 동의하는 서면 문서를 작성한 선수의 이름을 신속히 IAAF에 보고하여 국제 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규칙 제30조 3항 참조). 회원연맹은 서면 문서의 사본을 IAAF 사무국에게 보내야 한다.
2. 모든 회원연맹은 규칙 제34조 9항(b)에 따라 허가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IAAF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연맹은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시행된 검사 중에 검출된 비정상분석결과와 해당 선수의 이름, 그리고 관련 서류를 14일의 통보 기간 안에 신속하게 IAAF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연맹은 본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결과관리 절차에 대한 최신 진행 사항을 항시 IAAF 도핑방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기 규칙 제37조 2항 참고)
5. 모든 회원연맹은 매 년 초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연간 보고서의 일환으로 (현장 조항 제4조 9항 참조) 회원연맹에 의해 시행된 모든 검사나 이전 년도에 해당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이행된 검사(IAAF에 이행된 검사는 제외)를 IAAF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수별로 분류될 것이며, 이는 선수가 검사를 받은 시기, 검사를 시행한 주체, 그리고 검사가 경기기간중 또는 경기기간외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IAAF는 이 규칙에 따라 회원연맹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6. IAAF는 2년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에게 IAAF와 가맹 회원연맹들의 세계도핑방지규약 준수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제44조

회원연맹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s against Members)

1. 집행이사회는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회원연맹에 헌장 14조 7항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도핑방지규칙 하에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회원연맹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 (a) 규칙 제30조 2항에 따라 본 도핑방지규칙과 도핑방지규정을 회원연맹의 규칙 또는 규정에 도입시키지 못할 경우
 - (b)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이 서면 문서의 사본을 IAAF 사무국에 전달 하여(규칙 제30조 3항 참조) 선수의 참가자격을 보장시키지 못할 경우,
 - (c) 규칙 제30조 6항에 따라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d) 선수의 요청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규칙 제38조 9항 참조)
 - (e) IAAF가 선수의 소재지정보 파악을 위해 요구 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취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35조 17항 참조) 및/또는 선수를 대신하여 접수한 정보를 정확하게 갱신시키지 못하여 소재지정보를 확증하지 못한 경우(규칙 제35조 19항 참조)
 - (f) IAAF나 다른 회원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 또는 검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시행하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막을 경우(규칙 제35조 13항 참조).
 - (g) 규칙 제34조 9항(b)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의 협약 기록들을 IAAF와 세계도핑방지기구에게 보고하지 못한 경우.(규칙 제43조 2항 참조)

- (h) 회원연맹이나 해당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실시된 도핑관리 과정을 통해 접수된 비정상분석결과를 14일 통보기간 이내에 IAAF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또한 비정상분석결과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당해 선수의 신분을 보고하지 못한 경우 (규칙 제43조 3항 참조)
- (i) 도핑방지규칙에서 명시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는 국제 수준의 선수의 사건을 도핑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규칙 제38조 19항 참조)
- (j) 본 규칙에 따라 결과관리 절차에 대한 최신 진행 사항을 항시 IAAF 도핑방지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못한 경우 (상기 규칙 제37조 2항 참고)
- (k) 도핑방지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따라 도핑방지규칙 위반 선수에게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한 경우
- (l) 의심되는 도핑방지규칙의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IAAF가 요청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행에 실패한 경우 또는 IAAF가 규정한 시간 내에 조사 관련 서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규칙 제37조 12항 참조)
- (m) 이전 연도에,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또는 회원연맹에 의해 시행된 모든 도핑관리 활동 목록을 매년 첫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연간 보고서의 일환으로 IAAF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규칙 제43조 5항 참조)
3. 회원연맹이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집행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a) 다음 총회 전까지나 더 짧은 기간 동안 회원연맹의 자격을 정지시킴;
- (b) 회원연맹을 권고하거나 견책함;
- (c) 벌금을 부과함;
- (d) 허가나 보조 회원연맹에게서 보류시킴;
- (e) 회원연맹의 선수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함;

(f) 회원연맹의 임원이나 다른 대표자에 대한 인가를 없애거나 거부함; 그리고

(g)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제재를 부과함.

집행이사회는 규칙 제44조 2항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회원연맹에 대한 예정표를 시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정표 또는 예정표 변경 사항은 회원연맹들에 게 통지 및 IAAF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4. 집행이사회가 회원연맹에게 도핑방지규칙 임무 불이행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와 같은 결정은 IAAF 웹사이트에 공표되고 다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5조 승인(Recognition)

1.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따라 내려진 최종 결정은 IAAF와 각 회원연맹에 의해 승인되어 해당 결정이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규칙 제42조에 명시된 항소 권리의 측면에서, 도핑방지규칙과 규정이 일치하며 육상경기스포츠의 어느 가맹기구의 권한 안에 속한 검사나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은 IAAF와 각 회원연맹에 의해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도핑방지규칙 및 도핑방지규정과 다른 절차와 규칙에 따른 기구가 이행한 육상경기스포츠의 검사에 대하여 집행이사회는 이와 같은 검사가 기구의 규칙을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도핑방지규칙과 규정과 일치하여 검사 수준이 만족스러울 경우 모든 회원연맹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검사를 승인할 수 있다.
4. 집행이사회는 규칙 제45조 3항에 따라 검사에 대한 승인 책임을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도핑재조사위원회나 기타 관계자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5. 집행이사회가 (또는 규칙 제45조 4항에 의하여 집행이사회에서 임명된 자가) 가맹기구 이외의 육상경기스포츠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를 승인할 경우 해당 선수는 관련된 IAAF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되고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징계 절차와 제재에 귀속된다. 모든 회원연맹은 이와 같은 사건의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결정이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육상경기 이외의 스포츠에서 가맹기구가 행한 검사, 치료목적사용 면책, 그리고 청문회 결과와 다른 최종 판결이 도핑방지규칙과 규정과 일치하고 가맹기구의 관할권 안에 속할 경우 이는 IAAF와 회원연맹에 의하여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7. 규칙 제45조 6항의 이행 측면에서 육상경기 이외의 스포츠 기관이고 아직 세계도핑방지규약(Code)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이 도핑방지 규칙과 규정에 일치하는 규칙을 준수한다면 IAAF와 각 회원연맹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시효기한(Statute of Limitations)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발생된 것으로 제기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조치가 시작되지 않는 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도 시작할 수 없다.

제47조 해석(Interpretation)

1. 도핑방지규칙은 본래의 문맥상 육상경기스포츠가 개최되는 조건과 상황을 통제하는 경기대회규칙이다. 이 규칙들은 형사 절차나 고용 문제와 같은 법적 기준과 요구 사항에 귀속되거나 제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스포츠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한 기반으로 제안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정책과 기준은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이

IAAF에 의해 승인되고 공정한 스포츠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자의 폭 넓은 동의를 대표하며 모든 법정과 재판 기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본 도핑방지규칙은 가맹기구나 국가의 현존하는 법률이나 법규에 대한 참조가 아닌 독립적이고 지주적인 문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도핑방지규칙에 사용된 표제와 작은 표제들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도핑방지규칙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참조되는 조항의 해석에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제3장에서 사용된 정의는 도핑방지규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 본 도핑방지규칙과 세계도핑방지규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도핑방지규칙이 우선권을 지닌다.

제2절 - 의무규칙

제48조

IAAF 의무 위원회 (IAAF Medical Organisation)

1.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 또는 기구는 본 의무 규칙에 따라 IAAF의 대표로서 주요 역할을 한다 :
 - (a)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 (b) 의무 총무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2.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IAAF 현장 제6조 11항(j)에 의거하여 IAAF 집행이사회의 분과로서 임명되며, 모든 의무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IAAF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보통 연초에 최소 연 1회 소집되어, 이전 12개월간 IAAF의 의무 활동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 1년간의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의무 및 분과위원회는 1년동안 정기

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의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상의한다.

4. 본 규칙에 의거하여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 과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닌다 :
 - (a) 육상경기의 의무적 사항에 대한 정책 및 공식성명 수립;
 - (b) 육상경기와 관련된 스포츠의학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의무전문가들에게 제공;
 - (c) 육상경기에 적용되는 의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모든 육상 경기 규정에 대한 조언을 집행이사회에 제공;
 - (d)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세미나 기획 및 참가;
 - (e) 국제경기대회의 의무 서비스 조직 및 편성에 대한 제안서 및 지침서 발행;
 - (f) 육상경기 선수와 선수지원요원들의 스포츠의학 사안들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의료 관련 교육자료를 출간하고;
 - (g) 육상경기에서 대두되는 특정한 스포츠의학 사안들을 다루고 이에 따른 권고 및 제안을 하며;
 - (h) 스포츠의학과 관련하여 적절히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기타 관계 기관들과 협력한다.
5.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상기 의무사항들을 소규모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더욱 심도있고 전문적인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 총무

6. 의무 총무는 의무 및 도핑방지 부서 내에 의학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
 - (a) 본 의무 규칙에 따라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또는 임무를 위임받은 소규모 분과위원회)에 부여되는 다양한 임무를 협조;
 - (b)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에서 공표한 정책, 성명, 권고 또는 지침 이행에 대한 감독;
 - (c)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TUE(치료목적사용면책)의 행정 관리;

- (d)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에 대한 결정; 그리고
 - (e) IAAF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속성의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7. 의무총무는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의무총무는 최소 1년에 1회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더욱 정기적으로 자주 보고를 한다.
 8. 본 의무 규칙에 따라 의무 및 도핑방지부서에서 처리되는 의학적 정보는 엄격한 기밀성을 유지하며 관계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다.

제49조 선수 (Athletes)

1.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의학적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선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IAAF (및 해당 회원연맹, 책임자,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대리인 등)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상 및 상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0조 회원연맹 (Member Federations)

1. 상기 규칙 제49조에서 명시하는 바가 있지만,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엘리트 수준의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에 적합한 상태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연맹은 내부적 또는 외부적 기관을 통하여 선수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여해야 한다. 회원연맹이 규칙 제1조 1항(a) 및 (f)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시키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IAAF 의무 지침서에 따라 경기 전 건강 검진(PPME)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3. 모든 회원연맹은 규칙 제1조 1항(a) 및 (f)항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학적 관리를 위해 최소 1명의 팀 닥터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1조 국제경기대회 의무 및 안전 서비스 (Medical/Safety Service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1.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동안 적합한 의무 서비스와 안전/보안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요구되는 의무 및 안전/보안 대책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경기대회의 규모 및 속성, 참가하는 선수 인원수와 범부, 지원 임원수 및 관중의 규모, 해당 국가의 보건 수준 및 기후, 고도 등의 환경 조건 등.
2. 의무 및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가 국제경기대회에서 적합한 의무 서비스 및 안전/보안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를 발행하고 최신화 시킨다.
3. 특정 종목(예 : 로드레이스 및 경보 등)에 대해서는 본 의무 규칙에 따라 특정한 의무 및 안전 대책이 요구될 수 있다.
4. 국제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의무 서비스 및 안전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
 - (a) 경기대회 장소 및 선수 숙박 장소에서 선수 및 등록된 임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보건 서비스;
 - (b) 주 경기대회 장소에서 선수, 임원, 자원봉사자, 미디어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응급처치 및 구급체제의 확보;
 - (c) 안전에 대한 감시;

- (d) 긴급 및 후송 대책 협조; 그리고
 - (e) 적합한 특수 의료 서비스 협조.
5. 규칙 제1조 1항 (a)에 속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는 한 명의 의무 책임자를 임명하며, 그는 경기 대회기간 중 의료 서비스 및 안전에 대한 준비 및 협조를 해야 한다. 의무총무는 모든 의무 및 안전 사안에 대해서 IAAF와 대회조직위원회 간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한다.
 6. 규칙 제113조에 의거하여 IAAF는 규칙 제1조 1항(a)에 속하는 국제경기대회에 1명의 의무대표를 임명하여 경기대회 장소에 의료 검진, 치료 및 응급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와 선수들이 숙박하는 장소의 의무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분쟁(Disputes)

제60조 분쟁(Disputes)

총칙(General)

1. 규칙 제60조 2항이나 다른 규칙 혹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규칙 하에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아래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은 규칙 제60조에 속한 분쟁 조항에서 제외된다.
 - (a)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는 바 없이 제3장의 도핑방지규칙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에 관한 분쟁. 이와 같은 분쟁은 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b) 제1장의 도박 행위 위반이나 기타 부정부패 방지 위반은 윤리강령과 규칙 제9조에 따라 IAAF 윤리위원회에 의해 해결 될 것이다;
 - (c)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신분에 관한 경기대회 이전의 항의는 규칙 제146조 1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기술대표의 결정은 상소심판원에게 상소 권리 대상이 된다.
상소심판원의 결정 (또는 상소심판원이 없거나 상소심판원에 대한 상소가 없을 시 기술대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하는 항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소 권리는 없어진다. 사건이 경기 전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선수가 “항의 중” 경기에 참가 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경우, 이 사건은 IAAF 집행이사회에 회부되고 집행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하는 항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소 권리는 없어진다;
 - (d) 경기 결과나 운영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고 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기장에서 야기된 모든 항의나 기타 분쟁. 규칙 제146조 3항을 따라 이와 같은 사건에서 심판장의 결정은 상소심판원에게 상소 권리 대상이 된다. 상소심판원의 결정(또는 상소심판원이 없거나 상소심판원에 대한 상소가 없을 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하는 항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소 권리는 없어진다; 그리고

- (e) 윤리강령에 따라 내려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된 분쟁. 이와 같은 분쟁은 윤리위원회의 절차 규칙 조항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가 연루된 분쟁(Disputes Involving Athletes, Athlete Support Personnel and Other Persons)

3. 각 회원연맹과 대륙연맹은 세부규칙이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본 규칙에 따라 발생한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가 연루된 분쟁을 어떻게 야기된 바와 상관없이, 관련 청문회 기구나 회원연맹에 의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은 기관에게 청문회를 위탁해야 하는 조항을 회원연맹의 현장에 통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청문회는 다음의 원칙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청문회 기관에 의하여 적시에 시행되는 청문회를 가질 권리.
- 선수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혐의를 공정하고 적시에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
- 증인을 내세우고 심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변호인과 통역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개인적인 비용 부담으로).
- 이유를 첨부한 서면에 의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취할 권리.

4.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가

- (a) 다른 경쟁 선수들이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없거나 정지당한 사실을 알고 참가한 육상경기대회나 기타 대회의 경우, 또는 자격정지를 당한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행하여지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본 규칙은 마스터즈 연령그룹에 제한된 어떠한 육상경기대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141조에 따라);

- (b) 규칙 제2조(대회 개최 승인)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육상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 (c) 규칙 제4조(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필요 사항) 또는 이하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d) 규칙 제5조(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이하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e) 규칙 제6조(선수에 대한 보수/보상) 또는 이하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f) 규칙 제7조(선수의 대리인) 또는 이하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g) 규칙 제8조(국제 경기대회에서 광고와 전시) 또는 이하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h) 기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규칙 제60조 2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수는 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부과 받을 수 있다.

5. 규칙 제60조 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 (a) 혐의에 대한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되어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소속된(또는 규칙에 준수할 것을 동의한) 회원연맹에 전달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적시에 착수해야 한다.
- (b) 만약 조사 이후, 회원연맹이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부과될 혐의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들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회원연맹이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연맹은 이 사항과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게 된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IAAF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c) 규칙 제60조 4항의 위반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 사항을 통보 받은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서면 해명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해당 위반 협의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관련 회원연맹에 의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자격정지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IAAF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만약 회원연맹이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 IAAF가 이를 대신하여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임시자격정지 조치는 항소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규칙 제60조 5항(e)에 따라 회원연맹의 관련 청문회 기관에게 신속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d) 만약 협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14일 이내로 청문회 희망 요청을 서면상으로 회원연맹 혹은 기타 관련 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는 청문회 요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규칙 제60조 4항의 관련 조항에 따라 위반 행위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e) 만약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요청을 할 경우, 모든 관련 증거는 위반 협의를 받은 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규칙 제60조 3항의 원칙을 준수하는 청문회는 통보 날짜 이후 2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회원연맹은 청문회 날짜가 결정되는 즉시 이를 IAAF에 통보하여야 하며, IAAF는 참관인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청문회에 대한 IAAF의 참석이나 다른 사건에 대한

개입이 IAAF가 규칙 제60조 14항과 제60조 16항~17항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f) 만약 회원연맹의 관련 청문회 기관이 증거를 검토한 이후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할 경우, 회원연맹은 당사자에 대해 집행이사회에서 제시된 지침에 명시된 기간 동안 국제경기대회와 국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제재를 근거로 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한다. 만약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관련 회원연맹은 당사자에 대해 집행이사회에 제시된 지침에 명시된 기간 동안 국제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제재를 근거로 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지침이나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제재가 없는 경우, 관련 청문회 기관이나 회원연맹이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기간의 자격정지기간이나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 (g) 회원연맹은 판결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5일(영업일) 이내로 판결 사항을 IAAF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그리고 판결 사유를 문서 사본 형식으로 IAAF에게 보내야 한다).
6. 회원연맹이 청문회 시행을 다른 기구나 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회원연맹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와 상관없이), 또는 어떠한 이유로 회원연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 기구, 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원연맹은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규칙에 따라 청문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 기구나 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의 결정은 규칙 제60조의 목적에 따라 해당 회원연맹의 결정으로 간주되고 이 규칙에 명시된 “회원연맹”이란 용어의 해석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연맹과 IAAF 간의 분쟁(Disputes between a Member and the IAAF)

7. 세부규칙이나 규정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 회원연맹은 회원연맹과 IAAF 간에 야기된 모든 분쟁이 집행이사회에게 위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현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이사회는 해당 분쟁의 최종 판결을 위한 절차를 사건 정황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8. IAAF가 규칙 위반으로 회원연맹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하려는 경우, 회원연맹은 이와 같은 자격정지에 대한 근거를 사전에 서면 통보받아야 하고 현장 조항 제14조 10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관련 협의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회원연맹에게 주어져야 한다.

회원연맹 간의 분쟁(Disputes between Members)

9. 각 회원연맹은 회원연맹 간에서 야기된 모든 분쟁이 IAAF 집행이사회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현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이사회는 해당 분쟁의 최종 판결을 위한 절차를 사건 정황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규칙 제60조 4항의 결정에 관한 항소(Appeals from Decisions under Rule 60.4)

10. 규칙 제60조 4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결정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규칙 제60조 22항 참조) 항소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1. 다음은 규칙 제60조 4항에 따른 항소될 수 있는 판결의 불완전 목록이다:
 - (a) 회원연맹이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60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내린 판결;
 - (b) 회원연맹이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60조 4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내린 판결;
 - (c) 회원연맹이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칙

- 제60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 (d) 회원연맹이 규칙 제60조 4항에 따른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내린 판결(규칙 제60조 5항(b) 참조);
 - (e) 회원연맹이 규칙 제60조 5항에 따라 청문회를 집행하였고, 해당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의 집행이나 판결과 관련하여 회원연맹이 청문회를 적절하지 않게 집행하였거나 잘못된 판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경우;
 - (f) 회원연맹이 규칙 제60조 5항에 따라 청문회를 집행하였고, IAAF가 청문회의 집행이나 판결과 관련하여 회원연맹이 청문회를 적절하지 않게 집행하였거나 잘못된 판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경우;
12. 국제 수준의 선수들(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된 사건일 경우, 회원연맹에의 관련 기관이 내린 결정은 규칙 제60조 23항~제60조 28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만 독자적으로 항소될 수 있다.
13. 국제 수준의 선수(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가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회원연맹의 관련 기관의 결정은 (규칙 제60조 17항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회원연맹의 규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에게 항소될 수 있다. 각 회원연맹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하는 국가 수준에 항소 절차를 설립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청문회 기관에 의하여 적시에 시행되는 청문회를 가질 권리.
 - 법적 변호인과 통역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개인적인 비용 부담으로).
 - 이유를 첨부한 서면에 의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취할 권리.
-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의 판결은 규칙 제60조 16항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 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

(Parties Entitled to Appeal Decisions)

14. 국제 수준의 선수들(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된 모든 사건의 경우, 다음의 관계 당사자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 항소된 판결에 귀속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b)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연루된 기타 관계 당사자
 - (c) IAAF, 및
 - (d) 국제올림픽위원회(판결이 올림픽대회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 국제 수준의 선수들(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관계 당사자는 해당 회원연맹의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항소된 판결에 귀속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b)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연루된 기타 관계 당사자
 - (c) 회원연맹

IAAF는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이와 같은 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공판에 참관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IAAF의 공판 참석은 IAAF가 규칙 제 60조 16항에 따라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의 판결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 국제 수준의 선수들(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다음의 관계 당사자는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의 판결에 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a) IAAF; 및
 - (b) 국제올림픽위원회(판결이 올림픽대회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7. 국제 수준의 선수 또는 국제 수준 선수의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IAAF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판결이 올림픽대회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원연맹에 속한 관련 기관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어느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 회원연맹이 국가 수준의 항소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b) 규칙 제60조 15항에 명시된 어떠한 관계 당사자도 회원연맹에 속한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에게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 (c) 회원연맹의 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
18. 이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항소를 제출하는 관계 당사자는 항소 대상 판결의 기관에게서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도움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요구하는 경우, 항소 기관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에 대한 피항소인(Respondents to the CAS Appeal)

19. 일반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한 항소의 피항소인은 항소 대상인 판결을 항소로 의뢰한 대상자이다. 회원연맹이 청문회의 집행을 규칙 제60조 6항에 따라 기타 기관, 위원회 또는 재정 기관에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의 피항소인은 회원연맹이 된다.
20.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한 항소에서 피항소인일 경우, IAAF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피항소인으로서 다른 대상자(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 등 해당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를 포함)들과 함께 항소에 참여할 수 있다.
21.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한 항소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IAAF는 해당 항소 집행에 대상자로서의 참석을 선택할 수 있다. IAAF가 참석을 선택하고 항소에서의 IAAF의 신분이 공동 피항소인이다면, IAAF는 항소의 피항소인과 함께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임명되는 중재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IAAF의 선택이 우선권을 가진다.

IAAF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 하는 경우

(IAAF Appeal of Decisions to CAS)

22. IAAF가 해당 사건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또는 IAAF가 규칙 제60조 21항에 따라 스포츠중재 재판소에게 의뢰한 항소 절차에 관계자로서 참여해야 하는 지의 여부) 집행이사회나 집행이사회가 임명한 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집행이사회는 (또는 집행이사회가 임명한 자는) 적용되는 선에서 관련 선수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격정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도 동일한 시기에 결정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 (The CAS Appeal)

23. 집행이사회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항소인은 판결에 대한 항소사유를 서면으로 (IAAF가 항소인인 경우 영어나 프랑스어로) 통보한 날짜 또는 규칙 제60조 15항에 따라 해당 결정을 국가 수준의 항소 기관에게 항소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항소 성명을 작성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인이 IAAF가 아닌 경우, 항소인은 항소성명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IAAF에게도 항소 성명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항소인은 항소 성명 제출 기한 15일 이내에 항소 의뢰서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소 대상자는 항소의뢰서가 접수된 날짜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응답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뢰된 모든 항소는 사건으로부터 야기된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 위원회는 회원연맹의 관련 재판 기관의 판결이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판결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해당 판결에서 부과된 제재를 증가 또는 추가시킬 수 있다.
25. IAAF가 연루되는 모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스포츠중재재판소위원회는 IAAF의 현장과 규칙 및 규정에 귀속된다.

현존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칙과 IAAF의 현장과 규칙 및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IAAF의 현장과 규칙 및 규정이 우선권을 가진다.

26. IAAF가 연루되는 모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에서 지배하는 법칙은 모네가스크 법령이며(Monegasque law), 모든 중재는 관련 단체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영어로 진행된다.
27. 스포츠중재재판소 위원회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 특정 단체에게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집행 과정에서 나온 비용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배상해 줄 수 있다.
28.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관련 단체와 회원연맹을 귀속시키며, 어느 주체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지니며, 모든 회원연맹은 이 결정의 효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참조 사실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다음 통지사항을 통해 모든 회원연맹에게 전달된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

2014 - 2015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 (Technical Rules)

제100조 총칙(General)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인 경기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이하 본 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회요강과 프로그램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주-IAAF] 규칙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에 따라 개최되며, 이는 모든 대회요강, 광고문, 프로그램 및 인쇄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실외, 실내)와 올림픽대회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IAAF 경기규칙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선수에게 실제 명시된 규칙보다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는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경기방법을 결정한다.

[주-IAAF] IAAF 회원연맹(Members)은 자국내에서 개최하는 육상경기대회 운영에 IAAF 규칙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1장 임원(Officials)

제110조

국제임원(International Officials)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 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 (a) 조직대표
- (b) 기술대표
- (c) 의무대표
- (d) 도핑검사대표
- (e) 국제기술임원/국제크로스컨트리/로드레이스 및 산악레이스 임원
- (f) 국제경보경기심판원
- (g) 국제로드코스 계측원
- (h) 국제스타터
- (i) 국제사진판정심판원
- (j) 상소심판원

||

각 항목에 임명되는 임원 수와 그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는 현행 IAAF(또는 대륙연맹AAA) 경기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와 (e)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IAAF가 광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광고위원 임명은 규칙 제1조 1항 (c), (f) 및(j)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경우 해당 대륙연맹이, 규칙 제1조 1항 (b)에 명시된 경기대회는 해당 기관이, 그리고 규칙 제1조 1항 (d), (h) 및 (i)에 명시된 경기대회는 해당 IAAF 회원연맹이 결정 한다.

[주1-IAAF] 국제임원은 다른 임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임원복장 또는 기장(記章)을 착용해야한다.

[주2-IAAF] 위의 (e)부터 (i)까지의 국제임원은 적용되는 IAAF 정책에 따라 IAAF 레벨과 대륙 레벨로 분류될 수 있다.

||

본 규칙 또는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IAAF 또는 대륙연맹에 의하여 임명된 개인 임원의 여행비용과 숙박비용은 대회조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임원 개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11조 조직대표(Organisational Delegates)

조직대표는 항상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IAAF 집행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조직 회원연맹 및 조직위원회의 임무와 재정적 책임에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한다. 조직대표는 기술대표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2조 기술대표(Technical Delegates)

기술대표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대회조직위원회와 연계하여 경기운영에 관련된 모든 기술적 준비가 IAAF 경기규칙 및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술대표는 적절하게 경기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조직대표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대표는

- (a) 경기일정표와 참가기준기록을 해당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
- (b) 경기에 사용될 투척 용구의 목록 및 선수들이 자신의 용구 또는 제공되는 용구를 사용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c) 경기대회전에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연맹에게 대회 경기규정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배포한다.
- (d) 육상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준비에 책임을 다한다.
- (e) 참가신청을 관리하며 기술적 이유 또는 규칙 제146조 1항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규칙 이외의 이유로 참가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IAAF 또는 해당 대륙평의회의

재정(裁定)을 받아야 한다)

- (f) 필드경기의 예선통과 기준기록과 트랙경기의 예선라운드 설정의 기준을 준비에 대한 기반을 결정한다.
 - (g) 혼성경기(混成競技)의 트랙경기의 조 편성과 필드경기의 그룹 편성을 해야 한다.
 - (h)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기술회의의 의장직을 맡으며 기술임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 [주]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소속지도자 또는 주최 측의 관계자는 기술대표로 선임될 수 없다.

제113조

의무대표(Medical Delegate)

의무대표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최종적 권한을 갖는다.

의무대표는 의무검사, 치료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경기장소에 갖추어져 있는지, 선수들의 숙박 장소에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4조

도핑검사대표(Doping Control Delegate)

도핑검사대표는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도핑검사 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도핑검사대표는 도핑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5조

국제기술임원(ITOs)과 국제크로스컨트리, 로드레이스와 산악레이스임원(ICROs) 및 국가기술임원(NTOs)

1. 기술대표는 사전에 관련 기관에 의해 ITO 주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된 국제기술임원(이하 ITO)중에서 한 명의 ITO 주임을 임명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ITO 주임은 프로그램의 각 종목마다 적어도 한 명의 ITO를 임명하여야 한다. ITO는 해당 종목 심판장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ITO에게 할당된 해당 종목 경기가 실시될 때에는 계속 경기 현장에 머물면서 경기대회의 진행이 IAAF 경기규칙, 경기규정 그리고 기술대표가 내린 관련 결정 사항들이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ITO가 판단하기에 조언을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ITO가 이러한 사안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종목 심판장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대책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만약 이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IAAF 경기규칙 및 경기규정 또는 기술대표가 내린 결정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다면 국제기술임원(ITO)이 결정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IAAF 기술대표에게 회부한다.

ITO는 필드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표에도 서명하여야 한다.

[주IAAF] 심판장의 부재 시, ITO는 해당 심판원주임과 함께 경기를 진행한다.

[주] 본 연맹 및 전국연맹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에는 원칙적으로 NTO를 임명한다. NTO는 대회총무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IAAF의 ITO와 ATO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2. 크로스컨트리, 로드레이스 및 산악레이스 대회에 임명된 임원(이하 ICROs로 기술)들은 대회조직위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ICROs에게 할당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경기 현장에 있어야 한다. ICROs는 경기대회의 진행이 IAAF 경기규칙, 경기규정 및 기술대표가 내린 관련 결정 사항들이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16조

국제경보경기심판원(International Race Walking Judges) 및

국가경보경기심판원(National Race Walking Judges)

규칙 제1조 1항 (a)에 명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임명되는 경보경기심판원은 IAAF 레벨의 국제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주-IAAF] 규칙 제1조 1항(b), (c), (e), (f), (g)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임명된 경보경기심판원은 IAAF 레벨 또는 대륙레벨의 국제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주] 국가경보경기심판원(NRW)은 본 연맹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경기운영 위원회가 임명한다. 본 연맹이 주최, 공동주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경보경기심판원(NRW) 또는 본 연맹이 임명한 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제117조

국제로드코스 계측원(International Road Course Measurer)

IAAF 규칙 제1조 1항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경기장 외에서 개최되는 로드레이스 코스를 검증하기 위하여 1명의 국제로드코스 계측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된 로드코스계측원은 IAAF/AIMS 국제로드코스계측원 명부 (A급 또는 B급)에 등록된 계측원이어야 한다.

코스는 대회 전에 적절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계측되어야 한다. 계측원은 코스를 점검하고, 해당 코스가 IAAF 로드레이스 규칙 (제240조 3항 및 동항 [주-IAAF]를 참조)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증한다.

계측원은 코스 준비와 관련해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하고,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코스가 계측되고 공인된 코스와 동일한 코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진행을 관찰한다. 계측원은 기술대표에게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제118조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
(International Starter and International Photo Finish Judge)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장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 IAAF 또는 해당 대륙연맹은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을 임명한다.

국제스타터는 기술대표가 할당한 경기종목의 스타트 업무(및 기타 임무도)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은 모든 사진판정관련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9조
상소심판원(Jury of Appeal)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일반적으로 3명, 5명 또는 7명의 상소심판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상소심판원 중 1명은 상소심판위원장이 되고, 다른 1명은 간사(Secretary)가 된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소심판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규칙 제230조와 관련된 상소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소심판원 중 최소 1명은 국제(또는 대륙)레벨 경보경기심판위원이어야 한다.

상소심판원은 자국회원연맹 등록선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상소건과 관련된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상소심판위원장은 위 규칙이 시사한 상소심판원이 이미 물러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서의 탈퇴를 요청해야 한다. IAAF 또는 경기대회에 책임이 있는 대회조직위는 상소에 참여할 수 없는 상소심판원을 대체할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 상소심판원을 임명 해야 한다.

대회 주최자가 올바른 경기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기대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상소심판원을 임명한다.

상소심판원의 주 임무는 규칙 제146조에 명시된 모든 상소와 대회 진행 과정에서 야기되어 회부된 문제를 처리하고, 재결(裁決)을 내리는 것이다.

제120조

경기대회임원(Officials of the Competition)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는 경기대회 주최 국가연맹의 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인 경우, 적합한 국제기구의 규칙과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임원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원이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경기대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임원 (Management Officials)

- 경기본부장 : 1명
- 대회총무 : 1명
- 국가기술임원(NTO) : 2~5명 (트랙1, 도약1, 투척1, 경보1, 로드1)
- 기술총무 : 1명
- 총무원 : 약간명
- 대회연출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 1명
- 상소심판원 : 3 ~ 7명

||

경기임원 (Competition Officials)

- 소집실심판장 : 1명(이상)
- 트랙경기심판장 : 1명(이상)
- 도약경기심판장 : 1명(이상)
- 투척경기심판장 : 1명(이상)
- 혼성경기심판장 : 1명(이상)
- 로드레이스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경보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트랙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필드경기심판원주임(1명이상) 및 심판원(약간명)
- 도약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투척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혼성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로드레이스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트랙경보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보조원(약간명) 및 심판원(5명)
- 로드경보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보조원(약간명) 및 심판원(8명)
- 기록원 계시판 운영원 등을 포함한 기타 경보경기임원(약간명)
- 감찰원주임(1명) 및 감찰원(약간명)
- 계시원주임(1명) 및 계시원(약간명)
- || - 사진판정심판원주임(1명) 및 보조원(약간명)
- || -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주임(1명) 및 보조원(약간명)
- || - 스타트코디네이터(1명), 스타터 및 리콜러(약간명)
- || - 스타터 보조원 1명(이상)
- || - 주회기록원주임 주임(1명) 및 기록원(약간명)
- || - 기록정보처리원 1명 및 보조원(약간명)
- || - TIC 총무(1명) 및 보조원(약간명)
- || - 장내사령 주임(1명) 및 장내사령(약간명)
- || - 풍속측정원 1명(이상)
- || - 과학계측 심판원 1명(이상)
- || - 소집실심판원주임(1명) 및 소집실 심판원(약간명)

기타임원 (Additional Officials)

- 아나운서 : 1명(이상)
- 통계원 : 1명(이상)
- 광고위원 : 1명
- 공식계측원 : 1명
- 의사(의무원) : 1명(이상)

- 선수, 임원 및 보도계 간사(약간명)
- 선수계, 임원계, 보도계, 도핑검사계, 시설용기구계, 시상계, 조편성계, 서무계 및 보조원(각 약간명)

심판장과 심판원주임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복장 또는 기장(記章)을 착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임원들로 인해 경기장이 혼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선수 경기가 실시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자 의사 1명을 임명한다.

[주1] 전국연맹(중.고, 대학, 실업)이 주최, 주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기술임원(NTO, National Technical Officials)을 임명하여 국제육상경기연맹의 ITO/ATO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단, 경기대회의 소속지도자 또는 주최, 주관측의 관계자는 국가기술임원 (NTO)으로 선임할 수 없다.

[주2]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스타터, 장내사령 및 의사는 뚜렷이 구별되는 완장 또는 기장을 착용한다.

[주3] 기타 임원은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운영임원에 포함시킨다.

제121조

경기본부장(Competition Director)

경기본부장은 기술대표와 협의하여 경기 운영안을 계획하고, 기술 대표와 함께 이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고 경기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대회 참가자간의 상호 영향상황을 감독하며, 통신장치를 통해 모든 주요 임원들과 연락을 취한다.

제122조

대회 총무(Meeting Manager)

대회총무는 경기대회의 올바른 진행에 책임을 진다. 모든 임원들의 임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대리인을 임명하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원의 의무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명된 장내사령과 협조하여, 오직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주-IAAF] 4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대회나 2일 이상 개최하는 대회에서 대회총무가 약간명의 대회총무보조원을 임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대회규모에 따라 총무원을 두며, 대회총무의 임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한다. (예, 총무원, 관리사무 총무원)

제123조 기술총무(Technical Manager)

기술총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 (a) 필드경기의 트랙, 도움닫기주로, 서클, 원호, 낙하구역각도(투척 경기)와 착지장소, 그 외에 모든 장비와 용구가 IAAF 규칙에 준하는지 확인할 책임.
- (b) 기술대표가 승인한 경기대회의 기술적, 조직적 계획을 따른 장비와 용구의 설치와 철거에 대한 책임.
- (c) 기술대표가 승인한 경기대회의 기술적, 조직적 계획에 따라 경기대회 장소의 기술적인 구조가 완비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
- (d) 규칙 제187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 허가된 개인 투척용구에 대한 검사 및 표기에 대한 책임.
- (e) 규칙 제135조에 따라서 경기대회 개시 전에 필요한 증명서의 수령 확인에 대한 책임..

[주] 기술총무는 시설용기구계를 관할하며, 시설용기구계는 각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정비하여 해당경기 시작전에 배치하고 경기 종료 후에 회수한다.

제124조

대회연출 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대회연출 총무는 경기본부장과 함께 대회의 연출 준비를 계획하고, 조직대표 또는 기술대표와 협력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대회연출 총무는 경기본부장 및 해당 대표들과 함께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계획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대회연출 팀원들과 상호 연락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통해 팀원들 간의 소통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5조

심판장(Referees)

1. 소집실, 트랙경기, 필드경기, 혼성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개최되는 레이스 및 경보경기별로 적절하게 1명(또는 그 이상)의 심판장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트랙경기심판장과 경기장외 경기심판장은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

2. 심판장은 규칙(및 해당 경기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경기 도중(준비운동장, 소집실 및 경기 후 시상식까지 포함한) 발생하는 문제와 본 규칙(또는 해당 경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징계 관련 상황 경우, 소집실 심판장이 준비운동장에서 경기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경기규칙 적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과 관련된 심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트랙경기와 경기장 외 경기의 심판장은 이의가 제기된 순위에 대해서 심판원이 순위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만 순위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당 트랙경기심판장은 IAAF가 승인한 부정스타트 발견장치에 관련된 상황을 제외하고, 스타트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스타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심판장이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스타트발견장치가 제공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외다. 스타트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트랙경기심판장은 스타트 심판장으로 임명된다.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으로서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나,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해서 규칙에 따라 처리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해당 심판장은 모든 최종경기결과를 점검하고,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고, 과학계측심판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와 협조하여 신기록의 계측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장은 각 종목의 경기가 끝나는 즉시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점검하고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4. 해당 심판장은 소집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포함한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항의나 이의제기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심판장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경기에서 퇴장시킬 권리가 있다. 경고는 노란색 카드로, 퇴장은 붉은색 카드를 보여서 선수에게 알린다. 경고와 퇴장은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이 사항을 기록정보처리원과 다른 심판장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6. 심판장은 (즉시 또는 항의를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결정이 적용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개 그러한 결정에 대한 재고는 해당 종목의 시상식이나 또는 상소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7. 해당 심판장의 판단으로 어떤 경기대회에서 어느 종목 또는 어느 종목의 일부가 재경기를 요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심판장은 경기결과 또는 경기 일부의 결과를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당일(當日)이나 또는 다른 날에 재경기를 진행한다.
8. 혼성경기심판장은 혼성경기의 진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혼성경기의 각 개별 종목의 진행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9. 로드레이스 심판장은 적용되는 모든 상황에서(예 : 규칙 제144조 또는 제240조 8항에 따라) 실격처리를 가하기 전에 경고를 주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규칙 제146조가 적용된다.
10. 신체장애를 가진 선수가 대회에서 본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경우, 적절한 심판장이 해설하거나 동일한 종목에서 경기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떠한 이점도 받지 않는 선에서 관련규칙(규칙 제144조 3항은 제외)의 변이를 적용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상소 심판원에게 회부된다.

[주-IAAF] 이 규칙은 특정경기 대회의 규정에서 협용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 선수의 가이드 러너의 참여를 협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126조 심판원(Judges)

총 칙(General)

1. 트랙경기심판원주임과 필드경기심판원주임은 각 해당 종목의 심판원의 업무사항을 조정한다. 조직위원회가 사전에 심판원에게 임무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각 주임이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트랙경기 및 로드경기(Track Events and Road Events)

2. 심판원들은 트랙 또는 로드코스의 같은 쪽에 위치하여 선수의 피니시 순위를 판정한다. 심판원이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심판장에게 의뢰하여 판정을 구한다.

[주-IAAF] 심판원들은 피니시 라인에서 최소한 5m 떨어진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피니시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계단식 스탠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드경기(Field Events)

3. 심판원은 모든 필드경기에서 선수의 각 시기를 판정하고 기록하며, 유효한 시기는 계측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바를 높일 때, 특히 신기록이 시도될 때는 정확한 계측을 하여야 한다. 최소 2명의 심판원이 모든 시기의 기록을 관리하고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원은 유효시기는 흰색 깃발을, 무효시기는 붉은색 깃발을 들어 표시한다.

제127조

감찰원(트랙경기 및 경보경기)

(Umpires-Running and Race Walking Events)

1. 감찰원은 심판장의 보조원이므로 최종 판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2. 감찰원은 심판장이 지정한 지점에서 경기를 엄정하게 관찰하면서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규칙(규칙 제230조 1항 제외) 불이행 또는 위반을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심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칙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란색 깃발을 들거나 기술대표가 승인한 다른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해당 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4.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을 감찰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의 감찰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주1-IIAAF]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에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동이 일어난 트랙 지점에 적절한 물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2-IIAAF] 감찰원은 선수(또는 릴레이레이스일 경우는 팀)가 레이스를 피니시하지 않아도 규칙위반 사항을 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8조

계시원, 사진판정심판원 및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 (Timekeepers, Photo Finish Judges and Transponder Timing Judges)

1. 수동계시를 할 경우, 계시원은 참가선수의 인원수에 따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하며, 이중 1명이 계시원주임이 된다. 계시원주임은 계시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배당한다.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 또는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사용될 때, 이 계시원들은 예비계시원(back-up Timekeepers)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계시원, 사진판정심판원 및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은 규칙 제165조(계시 및 사진판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가 사용될 때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과 적절한 수의 사진판정보조심판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사용될 때에는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과 자동 무선계시보조원 약간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9조

스타트 코디네이터, 스타터 및 리콜러 (Start Coordinator, Starters and Recallers)

1. 스타트 코디네이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스타트팀 심판원에게 임무를 배정한다.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와 대륙선수권대회, 및 대륙종합경기대회(Games)의 경우, 기술대표가 국제 스타터에게 배정할 종목을 결정한다.
 - (b) 스타트팀 심판원이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독한다.
 - (c) 경기본부장에게 스타트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스타터에게 스타트 절차 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통보한다(예 : 계시원, 심판원, 사진판정심판원주임, 풍속 측정원의 준비 완료되었다는 뜻).
 - (d) 계시 장치회사 기술담당원과 심판원간의 교섭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 (e) 반응시간 및/또는 부정스타트 파형영상(波形 影像, waveform images)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포함한 스타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 (f) 제162조 8항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스타터는 ‘제자리에’ 상태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 부정스타트발견장치가 사용될 경우, 스타터 및/또는 배정된 리콜러는 부정스타트시에 나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헤드폰을 착용한다(규칙 제161조 6항 참조).
3. 스타터는 스타트 동작 중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특히 계단식 스타트를 할 경우에는 각 개별 레인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선수들에게 스타터의 구령과 스타트 및 리콜 신호가 동시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IAAF]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을 좁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크라우치 스타트(crouch start)를 사용하는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 신호총 또는 승인된 스타트 신호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차려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규칙상 모든 스타트 신호장치를 ‘신호총(gun)’이라고 한다.). 계단식 스타트로 진행하는 레이스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타터는 자신과 각 선수간의 거리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서도록 한다. 그러나 스타터가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없는 경우에는, 스타트 신호총을 그 지점에 설치하고 전기접촉으로 발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스타터를 보조하기 위하여 1명 또는 그 이상의 리콜러를 배치한다.
[주-IAAF] 200m, 400m, 400mH, 4×100mR, 4×200mR,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R에서는 최소 2명의 리콜러를 배치한다.
5. 각 리콜러는 자신이 담당한 선수를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6. 규칙 제162조 7항에 규정된 경고와 실격은 스타터만이 결정할 수 있다.
7. 스타트 코디네이터는 각 리콜러에게 특정 임무와 위치를 배당해 주어야 한다. 리콜러는 규칙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호기를 발사하여 레이스를 리콜하여야 한다. 레이스가 리콜되거나 스타트가 중지된 후에는 리콜러가 관찰한 사실을 스타터에게 보고하여 스타터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고 또는 실격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규칙 제162조 6항 및 제162조 9항 참조)
8.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는 레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칙 제16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IAAF가 승인한 부정스타트발견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0조 스타터 보조원(Starter's Assistants)

1. 스타터 보조원은 선수가 정해진 조(組) 또는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수표를 바르게 착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 스타터 보조원은 각 선수를 스타트라인 후방 약 3m지점의 집합선 (계단식으로 스타트하는 레이스에서는 각 스타트라인의 후방에 집합)에 정해진 선수의 레인이나 위치에 집합시킨다. 집합이 완료되면 준비완료상황을 스타터에게 알린다. 스타트를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스타터 보조원이 다시 선수들을 집합선에 집합시킨다.
3. 스타터 보조원은 릴레이레이스의 제1구간선수에게 배부할 배턴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4. 스타터가 선수들에게 “제자리에”를 명했을 때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제162조 3항과 4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부정스타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제162조 8항에 준하여 진행한다.

[주] 스타터 보조원은 스타트라인 옆쪽에서 선수가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한다.

제131조 주회 기록원(Lap Scorers)

1. 주회 기록원은 15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서 모든 선수의 완료한 주회를 기록한다. 특히 5000m이상 레이스와 경보경기에서는 심판장 감독하에 약간명의 주회기록원을 배치하고 주회 기록카드를 배부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선수의 각 주회의 시간을 기록하도록 한다 (시간은 공식계시원이 주회 기록원에게 통보한 대로 기록한다). 이러한 체계가 사용될 경우, 1명의 주회기록원은 4명 이하의 선수에 대하여 주회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경보경기는 6명이하). 수동주회기록 대신, 각 선수가 착용한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를 포함한 전산 주회기록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주회 기록원 1명은 피니시 라인부근에서 잔여 주회 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관리한다. 잔여 주회 표시는 선두주자가 피니시 직선주로에 진입했을 때 바뀐다. 또한, 이 표시를 적절한 시기에 수동으로 주회를 완료한 또는 완료할 선수에게 전달해준다.
마지막 1주회는 일반적으로 종을 울려서 각 선수에게 알려준다.
[주] 800m 레이스에도 최종회에 종을 울린다.

제132조 기록정보처리원(Competition Secretary) 및 기술정보센터(Technical Information Centre)

1. 기록정보처리원은 심판장, 계시원주임 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 및 풍속측정원이 제공한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기록을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기록정보처리원은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경기본부장에게 전달한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각 필드경기장에 있는 전산기록원이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가 전산에 입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랙경기 결과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의 지시하에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2. 기술정보센터(T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설치하고, 2일이상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도 권장된다. TIC의 주요 기능은 기술 관련 사안과 대회와 관련된 기타 사안들에 각 팀의 대표, 조직위, 기술대표, 대회운영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주] 경기결과 기록카드는 본 연맹의 지정카드를 사용한다.

제133조 장내사령(Marshal)

장내사령은 경기장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경기임원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출입 허가를 받은 기타 관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34조 아나운서(Announcer)

아나운서는 각 종목에 참가한 선수명 및 번호, 조편성, 추첨으로 결정된 레인이나 위치, 그리고 구간통과기록 등의 모든 관련정보를 관중에게 통보해준다. 아나운서는 경기결과기록 정보를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종목의 경기결과기록(순위, 시간, 높이, 거리 및 점수)을 통고하여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IAAF에 의해 영어와 프랑스어 아나운서가 선임된다. 아나운서는 대회연출 총무와 함께 그리고 조직대표 또는 기술대표의 감독 하에 방송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책임을 진다.

[주1] 통고할 때에는 트랙경기의 스타트와 필드경기의 시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주2] 트랙경기에 있어서 심판장 및 계시원주임이 협의하여 순위, 기록 및 구간 통과 기록 등을 신속히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5조
공식 계측원(Official Surveyor)**

경기대회 전, 공식 계측원은 마킹(markings)과 설비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기술총무에게 적절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확인 절차를 위해, 경기장 설계도와 도면 및 최근의 계측보고서를 공식 계측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본 연맹에서는 시설용구위원회가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계측한다.

**제136조
풍속 측정원(Wind Gauge Operator)**

풍속 측정원은 규칙 제163조 10항(트랙경기)과 제184조 11항(필드경기)에 따라 풍속측정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풍속 측정원은 해당 경기종목의 달리는 방향의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통보한다.

[주] 풍속측정원은 경기진행중의 기상상황에 대해서도 측정한다.

**제137조
과학계측심판원(Measurement Judge(Scientific))**

전자 또는 비디오 거리계측기 또는 기타 과학계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1명(또는 그 이상)의 계측심판원을 임명한다.

경기시작 전, 계측심판원은 관련 기술자들을 만나고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

|| 각 종목 경기 전, 계측심판원은 제조업체 및 장비 측정 실험실에서 제시한 기술적 필요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측장치의 설치장소 선정을 감독한다.

계측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경기전후에 다수의 심판원과 함께 심판장(및 가능하면 해당 종목 담당 국제기술임원)의 감독 하에 일련의 계측결과가 강철제 줄자(calibrated certified steel tape)를 사용하여 계측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발급된 양식에 서명한 후 그 양식을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첨부한다.

과학계측심판원은 경기중에 계측장비 작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필드경기심판장에게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제138조 소집실 심판원(Call Room Judges)

소집실심판원주임은 소집실에서 소집을 마친 선수가 준비를 마치고 경기 시작시간에 맞춰 경기장소로 갈 수 있도록 준비운동장(warm-up area)에서 경기장으로의 이동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들이 소속 국가의 관리기관이 공인한 국가 또는 클럽 유니폼을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선수의 선수표 부착상태와 참가선수 명단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경기화, 스파이크 수와 규격, 의복 그리고 선수 가방에 부착된 광고가 IAAF/KAAF 규칙과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지 않은 물건을 경기장 내로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발생하는 미해결 사항과 문제를 소집실심판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비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선수의 소속국가 통할단체(국가연맹)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 또는 클럽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43조 참조)

제139조

광고분과위원장(Advertising Commissioner)

임명된 광고분과위원장은 현행 IAAF/KAAF 광고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하고 감독하며, 소집실심판장과 함께 소집실에서 발생하는 광고에 관한 미해결 사항 또는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2장 경기대회 일반규칙(General Competition Rules)

제140조

육상경기 시설(The Athletics Facility)

트랙 및 필드경기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지침과 KAAF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단단하고 균일한 표면의 육상경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실외 경기대회는 현재 유효한 IAAF 1급 육상경기시설 공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설에서만 개최하여야 한다. 상기 시설이 있다면 IAAF 규칙 제1조 1항 (b)-(j)에 명시된 실외 경기대회도 이 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경우에서도, IAAF 규칙 제1조 1항 (b)~(j)에 명시된 실외경기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현재 유효한 IAAF 2급 육상경기시설 공인증이 필요하다.

[주1-IAAF]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는 트랙계측과 마킹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트랙과 필드 시설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상세하고 명확한 세부설명이 실려 있다. 이는 IAAF 사무국을 통해 입수 또는 IAAF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2-IAAF] 공인체계절차(Certification System Procedures)와 공인신청 및 시설계측보고서의 현 표준 서식은 IAAF 사무국을 통해 입수 또는 IAAF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3-IAAF] 로드경보경기. 로드레이스 또는 크로스컨트리 및 산악 코스에 대해서는 규칙 제230조 10항, 제240조 2항 및 3항, 제 250조2~4항 및 제251조 1항을 참조.

[주4-IAAF] 실내육상경기시설에 대해서는 규칙 제211조를 참조

제141조

연령 및 성별 그룹(Age and Sex Categories)

연령 그룹

1. 이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은 연령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청소년(Youth) 남·여 : 경기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 만16세 또는 17세 선수
 - 주니어 남·여 : 경기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 만18세 또는 19세 선수
 - 마스터 남·여 : 만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주1-IIAAF] 마스터즈경기대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IAAF와 WMA 평의회가 승인한 IAAF/WMA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주2-IIAAF] IAAF 경기대회 참가자격은 참가 최소 연령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기술규정에 의거한다.
2. 선수가 위에 정의된 연령그룹에 해당할 경우, 그 선수는 해당 연령그룹 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고 대회 규정에 준하는 유효한 여권 또는 다른 종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령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성별 분류

3. 본 규칙에 준하여 진행되는 경기대회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남녀 혼합 경기가 경기장 밖에서 운영되거나 규칙 제147조에 명시하는 제한된 경우중 하나일 때, 경기결과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구분되어 공표되거나 표시될 것이다.
4. 법에 따라 남성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남자 경기대회 참가자격이 있으며, 본 규칙과 규정에 준하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5. 법에 따라 여성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여자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본 규칙과 규정에 준하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6. 집행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해서 여자경기 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 (a)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 선수
 - (b) Hyperandrogen(남성호르몬 과다)을 일정치 이상 보유한 여자 선수.

적용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자격이 없다.

[주] 본 연맹이 인정하는 연령 그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남·여 : 만 13세 이하 재학생
- 중 학 교 남·여 : 만 16세 이하 재학생
- 고등학교 남·여 : 만 19세 이하 재학생
- 마스터 남·여 : 만 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제142조 참가신청(Entries)

1. IAAF/KAAF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 참가는 IAAF/ KAAF 참가자격기준에 적합한 선수들에게만 제한된다 (제2장 참가자격 참조).
2. 선수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은 규칙 제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수자격은 해당 선수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술대표에게 제기하지 않는 한, 선수 자격 승인이 인정된다 (규칙 제146조 1항 참조).

동시참가신청(Simultaneous Entries)

3. 선수가 동시에 트랙과 필드경기의 2종목에 참가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2종목 이상 필드경기에 참가할 경우, 선수가 1 라운드에 1회 또는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각 시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당심판장은 경기대회 시작 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경기순서와 다르게 참가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어느 시기에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경과되면 그 시기는 패스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가 거부(Failure to Participate)

4.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 선수는 아래 제공된 사항을 제외하고, 릴레이레이스를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종목(동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경기를 포함하여)에서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a) 최종참가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주IAAF] 경기참가 최종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정된 시간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b) 어느 종목의 예선라운드를 통과한 선수가 그 다음 라운드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c) 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은 경우. 이 사항에 대한 결정은 해당심판장이 내릴 것이며 관련사항을 공식 경기결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주IAAF] 규칙 제142조 4항 (c)에서 예견된 상황은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선수가 이전의 라운드에 참가 후 또는 참가 최종확인을 한 후 경기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규칙 제113조에 따라 임명된 의료 대표 또는 (의료 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위의 의료 임원이 선수를 진단한 것에 기초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타당한 근거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있는 다른 종목(혼성경기의 개별종목은 제외)에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이유(예 : 공식적인 교통 수단의 문제와 같은 선수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요소들)는 경기본부장(국제경기대회 기술 대표)의 확인 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143조

경기의복, 경기화 및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

경기의복(Clothing)

1.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청결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의복은 젖어도 속이 비치지 않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수는 심판원의 시각을 방해하는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선수 상의 유니폼은 앞과 뒤의 색이 동일해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국가연맹간의 대회)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 및 규칙 제1조 1항 (d)와 (h) (클럽컵 대회)에 의거하여 국가연맹을 대표할 때 선수들은 소속국가의 기관이 공인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시상식과 우승한 후 경기장을 주회할 때도 적용된다.

[주-IAAF] 대회 주최측은 해당대회 규정에 선수의복의 전면과 후면의 색깔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할 수도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소속단체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시상식과 우승 후 경기장을 주회할 때에도 적용된다. 릴레이레이스에서 각 팀 선수들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기화(Shoes)

2. 선수는 맨발로 경기에 참가하거나 한쪽 또는 양쪽 발에 경기화를 신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화를 신는 목적은 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지면을 힘차게 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착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부수적으로 불공정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화가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발등부분을 끈으로 동여매는 경기화 착용은 허용된다. 모든 경기화 종류들은 IAA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파이크 수(Number of Spikes)

3. 경기화의 밑창과 뒷굽은 최대 11개 이내의 스파이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스파이크 수가 11개 이내라면 몇 개라도 상관없으나 스파이크 위치는 1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파이크 규격(Dimensions of Spikes)

4. 밑창이나 뒷굽에서 돌출된 스파이크 길이는 9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높이뛰기와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파이크는 끝에서부터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한 변이 4mm인 정사각형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밑창과 뒷굽(The Sole and the Heel)

5. 밑창 및/또는 뒷굽에는 골이나 용기물, 톱니모양, 돌기물이 있더라도 무방하나, 이러한 모양들은 밑창의 재료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는 밑창두께가 13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뛰기에서 뒷굽은 19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다른 종목에서의 밑창 및/또는 뒷굽의 두께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IAAF] 밑창과 뒷굽의 두께는, 위에서 언급된 특징과 어떤 종류나 형태의 안쪽 밑창을 포함해서, 안쪽 상단과 바깥쪽 하단 사이의 거리로 측정된다.

경기화 삽입물과 부착물(Inserts and Additions to the Shoe)

6. 선수는 경기화의 안팎을 막론하고, 밑창의 두께가 상기 5항에서 명시한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밑창 두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전항에서 명시한 경기화의 종류로서 얻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수표(Athlete Bibs)

7. 경기 중, 모든 선수는 2개의 선수표를 가슴과 등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단,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가슴이나 등 중 어느 한쪽에만 선수표를 부착하여도 된다. 선수표는 일반적으로 스타트리스트 또는 프로그램에 기재된 선수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트레이닝복을 입는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이닝복에 선수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어떠한 또는 모든 선수표에 표기된 번호 대신 선수 이름 또는 기타 적절한 표식 (혼성경기의 현재 순위와 같은) 중 한 가지는 허용된다(앞이나, 뒤 또는 양쪽).
8. 선수표는 배포된 형태대로 부착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자르거나 접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거리 레이스의 경우, 공기 유통을 위해 선수표에 구멍을 뚫어도 좋으나 이로 인해 선수표의 글자나 숫자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9. 사진판독장치가 사용되는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는 선수의 경기복 하의 측면 또는 하반신에 접착성 형태의 번호표(추가 번호표식)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10. 상기 명시된 선수표 및/또는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44조**선수에 대한 조력(Assistance to Athletes)****구간통과기록의 표시(Indication of Intermediate Times)**

1. 구간통과기록과 우승예상시간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해당 심판장의 사전승인이 없이 경기장 내에 있는 관계자가 선수에게 시간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특정지점에 있는 선수들이 볼 수 있는 시간표시판이 없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구간통과기록과 우승예상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만 심판장의 사전승인이 가능하다.

[주-IAAF]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있는 경기장소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승인된 선수들과 임원만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조력(Assistance)

2. 심판장은 경기 진행 중 경기장소 내에서 조력을 주거나 받은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향후의 반복행위가 적발될 시 그 경기종목에서 실격될 것임을 주의를 통해 통보한다. 만약 선수가 경고와 주의 후에 해당 경기종목에서 실격되었을 경우, 해당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의 이전 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3.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조력으로 인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a) 동일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또는 한바퀴 뒤쳐졌거나 뒤쳐지려는 선수에 의해, 또는 (규칙 제144조 4항(d)에서 허용하는 기술장비 외의)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로 경기 중에 페이스 도움을 받는 경우.

(b) 비디오, 카세트녹음기, 라디오, CD, 무선송신기, 휴대전화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경기장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c) 규칙 제143조에 정확히 경기화를 제외하고, 규칙에 따른 장치의 사용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이득을 획득하게 하는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

4.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허용된다:

(a) 선수와 경기장 밖에 있는 코치와의 대화.

이런 소통을 도모함과 동시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각 필드경기가 실시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스탠드의 자리를 『코치석』으로 확보해 놓는다.

- (b) 이미 경기장소에 들어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또는 계속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의료처치 및/또는 물리치료

조직위원회가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구별되는 의복으로 분명히 식별되는 의무요원이 경기장소 내에서, 또는 경기장소 외의 의무치료구역에서는 경기본부장(국제경기대회는 의무대표나 기술대표)이 임명한 의무요원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건강진단/의료처치 및/또는 물리치료를 제공한다. 단, 어떠한 의료행위도 경기진행이나 선수의 시기 순서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경기 시작 바로 전 선수가 소집실을 떠난 후, 또는 경기 중에 기타 관계자가 현장에 있다거나 상기의 도움을 선수에게 주는 행위는 조력으로 간주한다.

- (c) 보호 및/또는 의료상의 목적을 위한 개인 보호물(예 : 밴드, 테이프, 벨트, 지지대 등).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대표와 함께 특정 상황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다.
(규칙 제187조 5항 참조)
- (d) 심박수 측정기, 속도-거리 모니터, 또는 스트라이드 센서 등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휴대하는 장치. 이러한 장치가 기타 관계자와의 통신수단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된다.
- (e) 필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그를 대신해 누군가가 경기장 밖에서 기록한 이전 시기(들)의 화면을 보는 것 (규칙 제144조 1항 참조). 재현 장치 또는 이 장치로 촬영한 화면을 경기장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풍향풍속정보(Wind Information)

5. 모든 도약과 원반 및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선수에게 대략적인 풍향과 풍속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1개 이상의 풍향기를 설치한다.

음료수/스펀지(Drinking / Sponging)

6. (a) 5000m 또는 그 이상의 트랙경기에서 조직위원회는 기후조건에 따라 선수들에게 물과 스펀지를 공급할 수 있다.
- (b) 10,000m를 초과하는 트랙경기에서는 음식물, 물, 스펀지 공급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음식물은 조직위원회 또는 선수가 준비 할 수 있으며, 선수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배치하거나 공인된 사람에 의해 선수의 손으로 전달 할 수도 있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는 시점부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임원들의 감독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45조

실격(Disqualification)

만약 선수가 어느 종목에서 경기규칙 위반으로 실격되었을 경우, 공식 경기결과 기록표에 규칙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62조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경기규칙 위반으로 그 경기에서 실격되었을 경우, 그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의 이전 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경기규칙의 위반에 의한 해당 종목에서의 이와 같은 실격은 그 경기대회에서 선수가 그 이후의 종목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실격이 될 경우, 공식경기결과표에 실격 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수가 규칙 제125조 5항에 따라 선수가 어느 종목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하여 제162조 5항에 의하여 2회의 경고를 받으면, 그 선수는 해당종목에서 실격된다. 만약 두 번째 경고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종목과 다른 종목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 선수는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종목에서만 실격된다. 실격된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에서 이전 라운드나 이전 다른 종목에서의 기록, 이전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가 실격이 될 경우, 선수는 심판장에 의해 혼성경기에서의 개별종목을 포함한 동일 경기대회의 향후 모든 종목으로부터 실격당할 수 있다. 만약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기본부장이 추가 징계 고려를 위해 해당 주관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항의 및 상소(Protests and Appeals)

1.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자격에 대한 항의는 대회 시작 전에 해당 경기연맹 또는 참가소속단체가 문서로써 대회총무에 제기한다. 대회총무가 결정을 내린 후, 상소심판원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의한 문제가 대회 시작 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선수는 일단 ‘항의중’의 상태에서 경기참가를 허용하고 그 문제를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 회부한다.
[비고] 국제경기대회에서는 기술대표에게 제기하고 항의 중의 선수문제는 IAAF 집행이사회 또는 해당기구에 회부한다
2. 경기결과 또는 경기진행에 관한 항의는 해당 종목의 경기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 30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모든 결과의 발표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해 둘 책임이 있다.
3. 모든 항의는 선수 자신이나 선수대리인, 또는 팀을 대표하는 임원이 심판장에게 구두로 제기하여야 하며,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는 팀은 만약 그들이 항의(또는 그 이후의 상소)와 관련된 종목의 동일라운드 (또는 팀의 점수에 영향이 미치는 경기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서 경기하고 있을 경우에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장은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공식 비디오녹화기(VTR)로 촬영된 비디오 영상과 사진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활용가능한 증거물 또는 기타 활용가능한 비디오 증거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직접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리거나 또는 상소심판원에게 회부할 수 있다. 항의 제기자는 심판장이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도 상소심판원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심판장에게 직접 항의 제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술정보센터 (국내경기대회에서는 대회총무)를 통해 심판장에게 항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4. 트랙경기에서는
 - (a) 선수가 부정스타트 판정에 대하여 즉시 구두로 항의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트랙경기심판장의 재량으로, 만약 의심스럽다면, 선수가 ‘항의 중’의 상태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트랙경기심판장이 어떠한 이유로 IAAF가 승인한 부정스타트발견장치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스타트발견장치에 의해 탐지된 부정스타트에 대해 항의 중인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항의는 스타터가 부정스타트를 리콜하지 못한 경우나 규칙 제162조 5항에 따라 스타트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 근거할 수 있다. 항의는 오직 레이스를 끝낸 선수 자신 또는 그 선수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만약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부정 스타트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스타트가 중단되게 주도한 행위를 한 선수, 그리고 규칙 제162조 5항 또는 162조 7항에 따라 경고나 실격의 대상이 되는 선수는 경고를 받거나 실격된다. 경고나 실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장은 해당 경기 또는 경기의 일부를 무효선언할 권리와 타당하다고 판단할 시 재경기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주IAAF] 부정스타트발견장치의 사용 유무와 상관 없이, 상기
(b) 조항과 관련된 항의와 상소의 권리는 적용된다.

5. 필드경기에서, 선수가 무효시기 판정에 대해 즉시 구두항의를 할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장은 임의로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계측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무효시기 결정에 대한 항의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을 경우,

- (a) 참가선수가 8명을 초과한 수평필드경기 시기의 첫 3회 라운드 중에 발생하였고, 그 항의 또는 그 후의 상소가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선수가 시기의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b) 만약 항의 또는 그 후의 항소가 인정될 경우에만 선수가 더 높은 높이를 시도할 수 있는 수직필드경기의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장이 의심한다면 모든 관련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항의를 제기한 선수가 경기를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협용할 수 있다.

6. 항의된 선수의 기록과 선수가 ‘항의 중’ 상태로 획득한 기타 기록은 오직 심판장이 그에 대한 유효판정을 내리거나 상소심판원에게 제기된 상소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유효처리를 한다.
7. 상소심판원에게 의뢰하는 상소신청은:
 - (a) 심판장의 결정에 따라 수정된 경기결과의 공식 발표 후 30분 이내 또는,
 - (b) 경기결과의 수정이 없을 경우, 항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조언이 주어진 후 30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소는 선수나 선수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선수가 속한 팀의 대표 임원이 미화 1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예탁금과 함께 신청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탁금은 돌수된다. 선수나 팀은 오직 상소를 신청하는 종목의 해당 라운드(또는 팀 또는 단체경기 점수가 적용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IAAF] 항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해당 심판장은 즉시 판결시각을 TIC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심판장이 판결사항을 관련 팀/선수(들)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TIC에서 그러한 판결을 게시하는 시간이 공식발표 시간이 된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의 상소는 소속팀의 책임자가 예탁금 50,000원을 첨부하여 대회본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상소는 즉결되며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8. 상소심판원은 모든 관계자들(심판장, 심판원)의 의견을 듣는다. 만약 상소심판원이 의심한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참고한다. 그러나 참고할만한 비디오 증거물을 포함한 모든 증거들도 확증적이지 못할 경우, 심판장 또는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판결을 인정한다.
[주1] 상소신청서는 대회총무 또는 상소의 절차에 관한 임무를 지닌 총무원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을 경유하여 상소심판원에게

회부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최자는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와 제출 장소를 참가팀 또는 선수에게 주지시켜 놓도록 한다.

[주2] 상소신청서 양식은 별표(別表)와 같다.

9.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소심판원은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결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최측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결정에 대한 재고는 오직 해당 종목의 시상식 이전에만 실행되어야 한다.
10. 만약 판정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점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상소심판위원회를 통해 IAAF 사무총장/국내경기는 경기본부장에게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상소심판원(또는 상소심판원이 없거나 상소심판원에게 상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장의 결정)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포함한 기타 기관에게도 그 이후에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은 없게 된다.

상소신청서

상소심판위원장 귀하

신청단체명 :

성명 : (인)

본인은 육상경기규칙 제146조에 의하여 금 50,000원을 예탁하고 아래와 같이 상소를 신청합니다.

경기대회명 : _____

연월일 : 년 월 일

종목 : (예선, 준결승, 결승) 조

선수번호 :

선수성명 :

상소이유 : 경기규칙 제 조 항에 저촉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임원만이 기입한다.

경기결과발표시각 : 시 분

구두항의수리시각 : 시 분, 수리자성명 :

심판장의판정시각 : 시 분

상소신청서수리시각 : 시 분, 수리자성명 :

판정서

판정자성명(상소심판위원장) :

판정결과 : 반려 몰수

판정사유 :

예탁금영수증

금 50,000원을 상소예탁금으로 예탁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시 분

수탁자

(인)

제147조 남녀 혼합경기(Mixed Competition)

육상경기장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남녀 선수간의 혼합종목 경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 제1조 1항 (a)~(h)에 준하는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의 필드 종목과 5,000m 또는 그 이상의 레이스는 혼합경기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규칙 제1조 1항 (i) 및 (j)에 준하는 대회에서는 해당 대륙 기관이 특정적으로 승인한다면 혼합경기가 허용된다.

[주-IAAF] 필드 경기에서 남녀 혼합경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성별로 대한 경기결과 기록표를 사용하고, 그 경기결과는 각 성별로 별도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148조 계측(Measurements)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와 국내의 전국규모대회의 트랙과 필드경기에서 모든 계측은 강철제 줄자, 고도계(高度計) 또는 과학 계측장치로 계측하여야 한다. 강철제 줄자, 고도계, 또는 과학 계측장치는 IAAF로부터 공인받아야 하고 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계측장치의 정확성은 국가의 측량담당 관련기관이 인정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계측은 국내 그리고 국제적 계측기준을 따른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되지 않는 다른 경기대회에서는 파이버글라스제 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주-IAAF] 신기록의 공인에 관해서는 규칙 제260조 26항(a)를 참조 한다.
[주] 특수장치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9조

기록의 유효성(Validity of Performances)

1. 선수가 수립한 기록은 IAAF 규칙 및 KAAF 규칙에 따라 개최된 공식대회에서 수립된 기록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전통적인 육상경기시설 외(예 : 도심, 해안가 또는 기타 체육시설 등)의 장소에서 달성된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공인한다 :
 - (a) 규칙 제1~3조에서 명시하는 적절한 대회운영기구(예 : IAAF, 대륙연맹)가 종목에 대한 승인을 발급한 경우
 - (b) 자격이 있는 국가기술임원(NTO) 임원들이 경기종목에 임명되어 운영하는 경우
 - (c) 경기규칙에 준하는 장비와 용구가 사용된 경우
 - (d) 경기당일 공식계측원에 의해 계측되고 발급된 인증서(규칙 제135조 준수)와 경기규칙에 준하는 경기장소 또는 시설에서 경기종목이 진행되는 경우.
- || [주-IAAF] 경기장소 또는 시설의 규칙 준수상황을 보고하는 데에 사용되는 필요한 현행 표준양식은 IAAF 사무국에서 입수 또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제150조

비디오 기록(Video Recording)

국내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가능한 기타 경기대회)에서는 기술대표가 만족할 만한 모든 종목의 공식 비디오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비디오 기록은 경기기록과 규칙위반 사항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충분해야 한다.

**제151조
채점(Scoring)**

점수제로 경기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대회 (친선, 대항경기)에서는 경기 개시 전 모든 참가팀(국제경기대회에서는 참가국)이 채점방법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트랙경기(Track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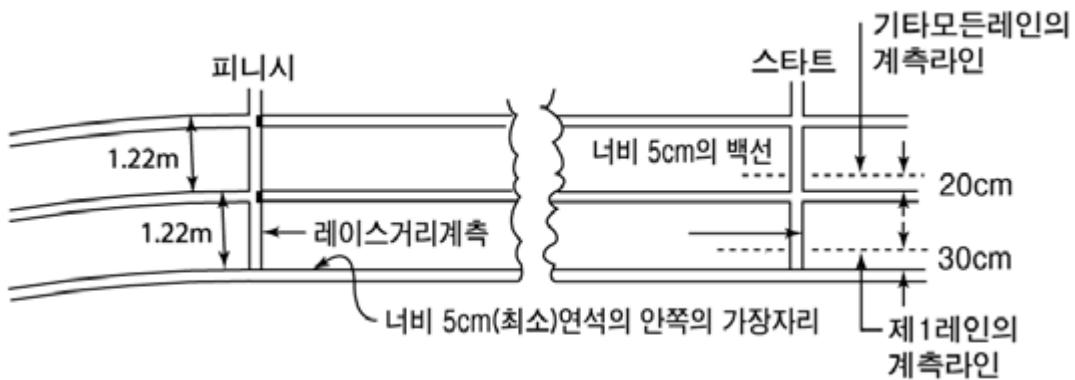
규칙 제163조 2항과 제163조 6항(제230조 11항, 제240조 9항 제외), 제164조 2항 및 제165조는 제7장, 제8장 및 제9장에도 적용된다.

제160조 트랙 계측(Track Measurements)

- 표준 트랙의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두 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약 5cm, 너비 최소 5cm이상의 적절한 재료로 만든 연석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흰색으로 칠한다. 두 개 직선주로의 연석은 생략될 수 있으며, 연석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필드경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곡선부의 연석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이동해야할 경우에는 표면아래에 그 장소에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표시하고 높이 최소 20cm의 원뿔이나 깃대를 흰색라인에 세워 표시하며, 원뿔이나 깃대의 밑바닥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흰색라인의 가장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격은 선수가 선 위로 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4m 이내로 띄워서 세운다. (깃발(旗)은 지면과 60°의 각도를 이루도록 트랙에서 필드쪽으로 뉘어서 세워야 한다.). 이 사항은 3,000m 장애물 트랙에서 물웅덩이를 뛰어 넘기 위하여 메인트랙(main track)을 떠나는 구간과 규칙 제162조 10항에 해당하는 스타트의 경우에는 트랙절반의 바깥코스에도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1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범위에서 직선주로에도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 계측은 연석의 바깥쪽으로 30cm 떨어진 지점을, 또는 곡선부에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트랙 안쪽을 표시한 라인으로부터 20c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트랙 계측(필드내에서 본 도안)

3. 레이스거리는 피니시라인에서 먼 쪽 스타트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스타트라인에서 가까운 쪽 피니시라인의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4. 400m까지(400m 포함)의 모든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는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구분된, 너비 $1.22m \pm 0.01m$ 의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한 개별레인을 달려야 한다. 모든 레인의 너비는 명목상 동일하여야 한다. 안쪽 레인은 규칙 제160조 2항에 따라 계측하나, 나머지 레인은 흰색라인(白線)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서 계측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모든 레이스에서 최대너비 1.25m 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5. 국내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트랙의 레인 수가 최소 8개이어야 한다.

[주] 레인에서 진행되는 직선레이스(100m, 100mH, 110mH) 및 200m, 400m, 400mH, 4x100m 릴레이레이스에서 전 레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제1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트랙의 너비 쪽 최대 허용경사한도는 너비쪽으로 100분의 1(1%) 달리는 방향쪽으로의 경사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IAAF] 새로 설치하는 트랙 경우에는 너비쪽 경사가 안쪽 레인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7. 트랙의 건설, 설계, 마킹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본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161조 스타팅 블록(Starting Blocks)

1. 400m까지의 모든 레이스($4 \times 200\text{m}$, 메들리 릴레이 및 $4 \times 400\text{m}$ 의 제1구간 포함)에서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레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트랙에 스타팅 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스타팅 블록의 어떠한 부분도 스타트라인과 겹치거나 다른 레인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스타팅 블록은 다음에 명시된 일반규격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스타팅 블록은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며 선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b) 스타팅 블록은 여러 개의 핀이나 스파이크로 트랙에 고정시키되, 핀이나 스파이크가 트랙에 미치는 손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스타팅 블록은 신속하게,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핀이나 스파이크의 개수, 두께 및 길이는 트랙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정된 스타팅블록은 실제 스타트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c) 선수가 개인용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때는 규칙 제161조 1항
 - (a) 와 (b)를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디자인이나 구조는 무방하다.
 - (d) 주최자가 스타팅 블록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타팅 블록은 선수가 스타트 자세에서 발을 얹는 두개의 발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판은 한 개의 견고한 틀 위에 장치되어

선수의 두 발이 블록을 밀면서 떠날 때 두 발에 아무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판은 선수의 스타트자세에 알맞도록 경사져 있어야 하고, 경사면이 편편하거나 약간 오목해도 무방하다. 발판의 표면은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흄을 내거나 오목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스파이크가 달린 경기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질(材質)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견고한 틀에 장치하는 발판의 표면은 조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스타트를 할 때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경우에서, 발판은 언제나 상호 앞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절이 끝나면 단단한 조임틀이나 멈춤 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조임틀이나 멈춤 장치는 선수가 손쉽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와 세계기록을 공인하기 위해서 신청된 기록을 위해서는)에서 스타팅 블록은 KAAF (IAAF)가 승인한 부정스타트발견장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장치가 기타 경기대회에서도 사용되는 것은 적극 권장된다.

[주-IAAF] 추가적으로 규칙의 범위내에서 자동리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주최자가 준비한 스타팅블록만을 사용해야 한다. 합성포장재트랙에서 개최하는 그 외의 경기대회에서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스타팅 블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2조 스타트(The Start)

1. 레이스의 스타트라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스타트라인에서 피니시라인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곡선으로 스타트라인을 그린다. 트랙경기에서 선수의 스타트 위치는 달리는 방향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긴다.

[주1-IIAAF]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는 종목의 스타트라인은 최대 너비 30cm로 선을 사용하며, 선의 색깔은 스타트 구역의 지면과 확연히 대조되는 색을 사용해서 그려야한다.

|| [주2-IIAAF] 1,500m 스타트라인은 바깥쪽 곡선레인선부터 동일한 합성 표면으로 된 범위까지 확장 할 수 있다.
2.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스타터는 영어, 불어 또는 자신의 모국어로 구령을 내린다.
 - (a) 400m까지의 레이스(4×200m, 제170조 1항의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 릴레이레이스 포함)에서는 “제자리에(On your marks)”와 “차렷(Set)”이라는 구령을 사용한다.
 - (b)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4×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 릴레이레이스 제외)에서는 “제자리에(On your marks)”의 구령만 사용한다. 모든 레이스는 위로 향해서 발사된 스타터의 신호총 소리에 의해 스타트한다.

[주-I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에 명시한 경기대회에서 스타터의 구령은 오직 영어만 사용한다.
3. 400m까지의 레이스 (4x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x400m의 첫 구간(제1주자)포함)에서는, 스타트 시 반드시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고 크라우치 스타트를 한다. “제자리에(On your marks)” 구령에 따라 선수는 스타트라인 뒤 배정받은 레인 안에서 완전하게 자세를 취하여야한다. “제자리에” 자세를 취할 때 선수의 손이나 발이 스타트라인 또는 그 전방의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양손과 최소 한쪽 무릎은 지면에 닿아야 하며, 양발은 스타팅 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차렷” 구령에 따라 선수는 즉시 양손은 지면에, 양발은 스타팅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곧바로 최종 스타트자세를 취해야한다. ||

스타터는 “차렷” 자세에서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신호총을 발사하여야한다.

4.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4x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x400m 제외)에서 모든 스타트는 스탠딩 자세로 한다. “제자리에 (On your marks)” 구령에 따라 선수들은 스타트라인에 접근해야하고 스타트라인 뒤에서 (레인에서 스타트 하는 레이스에서는 완전히 배정된 레인 안에 위치하여야) 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제자리에 (On your marks)” 구령 후, 선수들의 한 손 또는 양손은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하며 및/또는 발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전방의 지면에 닿으면 안 된다.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안정되고 올바른 스타트 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 신호총을 발사한다.
 5. “제자리에” 또는 “차렷”의 구령에 따라 모든 선수는 지체 없이 완전한 최종 스타트 자세(final starting position)을 취해야한다. 스타터는 만약 어떤 이유로 선수들이 “제자리에” 자세를 취한 후 스타트 진행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모든 선수들에게 제자리에서 물러서게 하며, 스타터 보조원이 다시 선수들을 집합시킨다(규칙 제130조 참조).
- 스타터가 판단하기에 선수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스타트를 중지시킨다,
- (a)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이 내려진 후에 신호 총소리가 나기 전에 손을 들거나 그리고/또는 크라우치 스타트의 경우 일어나거나 상체를 일으키는 등 정당한 이유(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장이 평가함) 없이 스타트를 중지시키는 경우, 또는
 - (b)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에 적절히 따르지 않거나, 적당한 시간 후에 최종 스타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 (c)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 후에 경기에 참여하는 경쟁

선수들을 음성이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심판장은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따라 선수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줄 수 있다(같은 경기에서 두 번의 위반을 한 선수의 경우에는 실격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스타트가 중지되었거나 심판장이 스타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부정스타트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표시로 초록색카드를 모든 선수에게 보여준다.

부정스타트(False Start)

6. 선수가 최종적으로 스타트 자세를 완전히 취한 후에는 신호총에서 발사된 신호음이 들리기 전까지는 스타트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타터 또는 리콜러가 선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스타트 동작을 시작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부정스타트로 간주한다.

IAAF가 승인한 공인 부정스타트발견장치를 사용할 때, 스타터 및/또는 임명된 리콜러는 부정 스타트(예: 반응시간이 0.100초 미만일 때)가 감지될 때 나는 음향소리를 분명히 청취할 수 있도록 헤드폰을 착용하여야 한다. 스타터 및/또는 임면된 리콜러가 음향신호를 듣자마자 신호총이 발사되었더라도 선수들을 불러들이고, 스타터는 어느 선수(들)가 부정스타트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스타트발견장치의 반응시간을 검사해야 한다.

[주1-IAAF] 선수의 발이 스타팅블록의 발판과 접촉되지 않거나 선수의 손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포함하거나 이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 움직임은 스타트의 시작으로 간주하지 않아야한다. 이러한 경우는, 적용된다면, 경고 또는 실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2-IAAF] 선 자세로 레이스를 스타트하는 선수들은 균형을 잃기 쉬움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스타트는 “불안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선수가 스타트 전에 밀리거나 떠밀려서 스타트 라인을 넘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혼선을 유발한 선수는 경고 또는 실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3-IAAF] IAAF가 승인한 공인 부정스타트발견장치를 사용될 경우, 스타터는 이 장치에서 제시된 증거자료를 결론적이라고 간주하고 수락한다.

7.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1회의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있는 선수는 어느 선수든지 실격된다.

혼성경기에서는 첫 번째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경고를 받으며, 각 레이스마다 단 한 번만의 부정스타트는 부정스타트에 책임있는 선수(들)이 실격되지 않고 허용된다. 같은 레이스에서 그 후에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있는 선수는 실격된다(규칙 제200조 8항(c) 참조).

8. 부정스타트가 발생한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 한다 :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있는 선수(들)는 실격되고 해당 선수 앞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주며, 해당 레인마커(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한다. 혼성경기에서 첫 번째 부정스타트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있는 선수(들) 앞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경고를 주고 해당 레인의 마커에도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한다. 이와 동시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스타터 보조원들은 같은 레이스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 앞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경고를 주고, 추후에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있는 선수는 모두 실격당할 것임을 알린다. 이 후, 추가적인 부정스타트 가 행해질 경우,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있는 선수 앞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실격을 통보하고, 해당 레인마커에도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한다. 레인

마커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있는 선수 앞에 카드를 들어 보이는 방식으로 경고나 실격을 통보한다. [주-IAAF] 실제로 선수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부정스타트를 하면 다른 선수도 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이를 따라 나간 선수도 부정스타트를 한 것이 된다. 이 때 스타터는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에게만 경고나 실격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고나 실격을 받는 선수는 1명 이상일 수도 있다. 만약 부정스타트가 어느 특정 선수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를 주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초록색카드를 보여준다.

9. 스타터나 리콜러가 판단하기에 스타트가 정당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호총을 발사해서 선수들을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

1000m, 2000m, 3000m, 5000m and 10,000m 레이스

10. 한 레이스에 12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참가했을 경우, 참가선수 중

|| 2/3를 한 그룹(제1그룹)으로 정상적인 원호형스타트라인에서,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그룹(제2그룹)으로 트랙의 절반의 바깥코스 별도의 원호형스타트라인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나눈다. 제2그룹은 최초의 곡선주로가 끝날 때까지 콘 또는 기로 표시한 트랙절반의 바깥코스를 달려야 한다(규칙 제160조 1항). 별도의 아크형스타트라인(제2그룹의 스타트라인)은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63조 5항에 규정된 800m레이스의 브레이크라인은 2,000m와 10,000m레이스의 바깥그룹의 선수들이(제2그룹) 정상적인 스타트를 한 선수(제1그룹)와 합류하는 지점을 표시해준다. 1,000m, 3,000m, 및 5,000m에서의 그룹스타트를 할 경우, 바깥그룹에서 스타트한 선수(제2그룹)가 정상적인 스타트를 한 선수(제1그룹)와 합류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라인을 피니시라인이

위치하는 직선주로의 시작 지점에 표시한다. 이 표시는 2개의 그룹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설치된 콘이나 기의 바로 앞, 제4레인과 5레인 (6레인 트랙에서는 제3레인과 4레인) 사이의 라인 위에 5cm × 5cm의 마크로 표시한다.

제163조 레이스(The Race)

1. 타원형 트랙 위에서 레이스와 겉는 방향은 왼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안쪽)에서부터 제 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트랙에서의 방해(Obstruction)

2. 선수가 경기하는 동안 떠밀리거나 막혀서 진로가 방해되었다면:
 - (a) 떠밀거나 막는 행위가 고의가 아니거나 또는 선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심판장은 선수(또는 그의 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재경기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가 그 후의 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 (b) 심판장이 타 선수가 떠밀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선수(또는 그의 팀)은 그 경기에서 실격된다. 심판장은 선수(또는 그의 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실격된 선수(또는 팀)를 제외하고 재경기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을 (실격 선수 또는 팀을 제외하고) 차후의 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규칙 제163조 2항 (a)와 (b) 둘 다의 경우에, 해당 선수(또는 팀)는 성실히 그 종목의 경기를 끝마쳐야 한다.

레인 위반 (Lane Infringement)

3. (a) 레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는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레이스의 일부를 레인에서 달리는 경기에도 모두 적용된다.

- (b)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는 모든 레이스(또는 레이스의 일부분)에서 선수가 곡선주로 혹은 트랙절반의 바깥코스에서 달리는 경우 (규칙 제162조 10항), 또는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가 물웅덩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트랙의 곡선부분을 우회하는 경우에 선수는 연석 또는 적절한 경계를 표시한 라인 또는 연석 위 혹은 안쪽을 밟거나 달려서는 안된다(트랙의 안쪽, 절반의 바깥쪽, 또는 3,000m 장애물 웅덩이 통과를 위해 트랙의 곡선부분을 이탈 할 때).

규칙 제163조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심판장이 선수가 본 규칙을 위반했다는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대해 인정할 경우에 그 선수는 실격된다.

4.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실격되지 않는다.

- (a) 다른 선수에게 밀리거나 방해를 받아서 자기의 레인 바깥으로, 또는 연석이나 적절한 경계를 표시한 라인마킹 위 또는 안쪽을 밟거나 달렸을 경우, 또는
(b) 직선주로에서 자기 레인과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가 물웅덩이를 통과하는 트랙의 직선부분의 바깥쪽, 또는 곡선주로에서 자기 레인의 바깥쪽 레인 라인의 바깥을 밟는 경우

이러한 이탈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선수와 부딪히거나 방해하여 그 선수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격되지 않는다.

[주-IAAF] 실질적 이득에는 선수들 사이에 간한(boxed)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랙 안쪽 경계의 안쪽을 밟거나 달리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800m 레이스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벗어나는 브레이크라인(breakline)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날 때까지 자기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제1레인 이외의 모든 레인을 가로지르는 너비 5cm의 첫 곡선주로의 끝에 표시된 원호형 라인(arced line)이다.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 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전, 레인라인 위에 가급적 브레이크라인과 레인라인과는 다른 색의, 높이 15cm이하의 5cm x 5cm 작은 콘(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를 세워 놓는다.

[주-IAAF] 국제친선대항경기대회(matches)에서는 참가국들의 합의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트랙이탈(Leaving the Track)

6. 선수가 자의적으로 트랙에서 이탈하면, 경기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선수는 경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선수가 경기에 다시 입장하고자 시도하면 심판장에 의해 실격 된다.

체크마크(Check-Marks)

7.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실시되는 릴레이레이스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트랙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지물을 둘 수 없다.

풍속측정(Wind Measurement)

8. 모든 풍속측정계는 본 연맹(국제경기대회는 IAAF)의 공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되는 풍속측정계의 정확성은 국내 측량담당 관련기관이 인정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계측은 국내 및 국제 계측기준을 따른다.
9. 비기계적(non-mechanical) 풍속측정계는 규칙 제1조 1항 (a)~(h)에 명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및 세계기록 / 한국기록 등 제출된 각종 기록을 공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규칙 제260조 8항의 정의를 따라). 기계적 풍속측정계에는 옆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튜브를 사용할 경우 측정장치의 양쪽 측면 길이는 적어도 튜브지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10. 트랙종목을 위한 풍속 측정계는 제1레인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피니시 라인으로부터 50m 시점에 설치하고,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11. 풍속측정계는 자동 및/또는 원격조정으로 작동을 시작 또는 정지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대회 전산장비(컴퓨터)로 직접 입력되도록 한다.
 12. 풍속을 측정하는 시간은 스타터 신호총의 섬광이 번쩍이거나 연기가 난 순간부터 다음 시간에 걸쳐 측정한다.
 - || 80m 10초간 (초등학교)
 - 100m 10초간
 - 100mH 13초간
 - 110mH 13초간
- 200m레이스의 풍속은 선두선수가 직선주로에 들어선 순간부터 10초간 측정한다.
- [주] 직선주로에 들어가는 위치에 깃발을 세워서 표시한다.
13. 풍속측정계는 초속 몇 m인가를 기록하는데, 1/100초의 풍속이 “0”이 아닐 경우에는 양수(+) 방향으로 초속 1m의 1/10로 올림하여 기록한다 (즉, 초속 +2.03m는 +21로 기록되며; 초속 -2.03m는 -20으로 기록된다). 초속 1/10m로 나타나는 디지털 표시 측정계는 본 규칙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64조 피니시(The Finish)

1.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주-IAAF] 경기장 밖에서 피니시하는 종목의 경우 피니시 라인의 폭은 최대 30cm까지 될 수 있으며, 색깔은 피니시 지점의 지면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이어야 한다.
2. 선수의 순위는 신체의 어느 부위(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胴體)”가 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라인에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면에 닿는 것으로 결정된다.

3.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측정되는 레이스(예 : 1시간 달리기)에서는 선수와 심판원에게 레이스의 종료시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 위해 스타터가 종료시간의 정확히 1분전에 신호총을 발사한다. 스타터는 계시원주임의 지시에 따라 스타트 후 적당한 시간에 다시 신호총을 발사하여 레이스가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경기종료를 알리는 신호총이 발사됨과 동시에, 담당심판원은 신호총이 발사되기 직전이나 발사됨과 동시에 각 선수가 마지막으로 트랙에 발을 터치시킨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록이 되는 거리는 이 표시의 뒤쪽 끝까지 정확하게 계측하되, m단위 미만은 버린다. 경기가 스타트하기 전에 각 선수에게는 최소 1명의 심판원을 마지막 도착지점 표시를 위하여 배치시켜야 한다.

제165조 계시 및 사진판정(Timing and Photo Finish)

1. 공식 계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승인된다.
 - (a) 수동계시(H.T.);
 - (b) 사진판독장치에 의한 완전자동계시(F.A.T.);
 - (c) 규칙 제230조(경기장 내에서 완전히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와 (로드레이스) 제250조(크로스컨트리레이스)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에 의한 계시
2. 계시는 선수의 신체 부분이(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 스타트라인과 가까운 쪽 끝의 피니시 라인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측한다.
3. 피니시한 모든 선수의 시간을 기록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800m 이상의 레이스에서는 매 주회기록(lap times)과 3,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는 1,000m마다 구간통과기록(intermediate times)을 기록한다.

수동계시(Hand Timing)

4. 계시원은 피니시라인 연장선상과 일렬로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트랙의 바깥쪽 레인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모든 계시원이 피니시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하기 위하여 계단식 스탠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시원은 디지털 판독이 가능한 수동전자계시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시장치를 KAAF와 IAAF 규칙에서는 ‘시계(watches)’라고 정의한다.
6. 2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팀 요원 또는 추가 계시원들이 규칙 제165조 3항에 따라 주회시간과 구간통과시간을 기록 한다.
7. 계시는 스타터의 신호총의 섬광 또는 연기가 난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8. 3명의 공식계시원 (이중 1명은 계시원주임)과 1~2명의 예비 계시원이 모든 종목의 1위를 계시한다. (혼성경기의 경우 규칙 제200조 8항(b) 참조). 예비 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공식계시원의 시계가 정확하게 계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고려되며, 그러한 경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비 계시원에게 지시하여 모든 레이스에서는 3명의 계시원에 의한 기록이 공식 1위의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9. 각 계시원은 자기의 시계 또는 기록한 시간을 타 계시원에게 보여주거나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공식 기록카드에 자신이 계측한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기록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계를 점검하도록 계시원주임에게 제출한다.
10. 수동 계시로 기록되는 모든 레이스의 경기시간은 다음과 같이 판독하고 기록한다.
 - (a) 트랙레이스에서는 시간이 정확하게 1/10초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늦은 1/10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예, 10.11의 기록은 10.2초로 기록).
 - (b) 일부 또는 전부가 경기장 외에서 실시되는 레이스의 기록은

시간이 정확히 완전 초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의 늦은 완전 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예, 2:09:44.3은 2:09:45초로 기록).

11. 위 10항과 같이 전환한 후, 만약 3개의 시계 중 2개가 일치하고 1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일치된 시계의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3개의 시계가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만약 2개의 시계만이 시간을 기록했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2개의 시계 중 늦은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채택한다.
12. 이상과 같이 규칙에 따라, 계시원주임은 각 선수의 공식기록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배부하기 위해 기록정보처리원에게 전달한다.

완전자동 계시 및 사진판정 장치(Fully Automatic Timing and Photo Finish System)

13.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IAAF가 승인한 완전자동 계시 및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1]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주2] 모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KAAF가 승인한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고] 모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규칙 제165조 8항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장치(System)

14. IAAF의 승인을 받기위해,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회 4년 이내의 정확도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a) 이 장치는 피니시라인의 연장선상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피니시 상황을 복합적인 영상으로 기록해야한다.
 - (i) IAAF 규칙 제1조 1항에 정의된 대회의 경우, 이 복합적인 영상은 최소 1초당 1,000개의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한다.

- (ii) 다른 대회의 경우, 이 복합적인 영상은 최소 1초당 100개의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한다.
각각의 경우에, 이 사진은 1/100초 단위로 일정하게 그어진 계시 눈금과 일치해야 한다.
- (b) 발사 순간과 계시 장치가 작동할 때까지의 종합 시간차가 일정하고 1/1000초 또는 1/1000초 미만이도록, 이 장치는 스타터의 신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15. 카메라의 정확한 정렬을 확인하고 사진판독 영상의 용이한 판독을 위하여, 레인 라인들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은 적절한 모양으로 검은색을 칠해야 한다. 이 디자인은 교차지점에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니시라인의 앞쪽 가장자리보다 앞으로 나와서도 아니 되며 2cm를 초과해서 넘어서도 안 된다.
16. 선수의 순위는 시간눈금과 판독선(reading line)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로 화상을 판독한다.
17. 장치는 각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하며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야 한다.
18. 계시장치를 스타트와 피니시의 양쪽에 설치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수동계시기록으로도, 완전자동계시기록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공인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진판정기록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식기록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순위 결정과 선수들간의 시간차를 조정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주-IAAF] 만약 계시 장치의 기전이 스타터의 신호에 의하여 작동되지 않았다면 사진의 계시눈금(time-scale)은 이 사실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작동(Operation)

19.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정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경기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사진 판독장치를 익힌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트랙경기심판장과 스타터의 협력 하에 매 레이스의 시작 전에 사진판독장치가 규칙 제165조

14항(b)의 범위 내에서(1/1,000초와 같거나 또는 미만) 스타터의 신호총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점조절(zero control)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정장치의 테스트를 감독하여야 하고 카메라가 올바르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 최소 2대의 사진판정 카메라를 트랙 양쪽에 1대씩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진판정장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즉, 별도의 전력공급을 받고, 별도의 장치와 케이블에 의한 스타터의 신호총의 신호를 기록하고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IAAF] 2대 이상의 사진판독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기술대표 (또는 임명된 국제사진판정심판원)는 경기대회 시작 전에 그 중 1대를 공식카메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카메라의 사진에 나타난 기록 및 순위는 공식카메라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피니시 순서에 대한 불명확성(예 : 공식 카메라의 사진에 선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애매하게 찍혔을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사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하지 않는다.

21.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적절한 인원수의 보조요원들과 협의하여 각 선수의 순위 그리고 그 결과로 공식기록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과가 정확하게 입력 또는 경기대회 결과시스템으로 전송되어서 기록정보 처리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 사진판정장치의 시간은 해당 임원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록이 명백히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공식기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사진판정사진에 나타난 시간차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시킬 수가 있다면 예비 계시원의 시간이 공식기록으로 인정된다. 계시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대비하여 예비 계시원 (back-up timekeepers)을 임명하여야 한다.
23. 사판정사진에 의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판독하고 기록한다.
 - (a) 10,000m이하의 모든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1/100초 단위로 판독하고 전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이 정확히 1/100초로 ||

계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늦은 1/100초로 환산하여 기록된다.

- || (b) 10,000m를 초과하는 모든 트랙 레이스의 기록은 1/100초 단위로 판독하고 전환하여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 영(zero)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으로 늦은 1/10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즉 : 59:26.32는 59:26.4로 기록한다).
- || (c)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 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레이스의 기록은 1/100초 단위로 판독하고 전환하여 완전 초 단위로 기록한다. 마지막 두 숫자가 영(zero)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으로 늦은 완전 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즉 : 2:09:44.32는 2:09:45초로 기록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

24. 규칙 제230조(완전히 경기장에서만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와 제250조에 명시된 종목에서 자동무선 계시장치의 사용은 다음 사항이 갖추어진 경우 허용된다.

- (a) 스타트, 코스, 또는 피니시라인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선수의 경기진행에 중대한 장애물 또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 (b) 선수의 유니폼, 선수표 또는 경기화에 부착된 자동무선계시장치와 케이스의 무게는 별 문제가 안 된다.
- (c) 이 장치는 스타터의 총소리에 의해서 또는 스타트 신호에 맞추어 작동을 시작한다.
- (d) 이 장치는 경기 도중, 피니시에서 또는 경기결과가 처리되는 과정의 어떠한 관문에서도 선수에 의한 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e) 모든 레이스에서 기록은 1/10 초 단위로 환산되고 완전 초 단위로 기록한다. 끝 단위가 영(zero)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으로 늦은 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예 : 2:09:44.3은 2:09:45초로 기록한다.)
- || [주-IAAF] 공식기록은 스타트 총소리(또는 등기된 스타트

신호)부터 선수가 피니시라인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이다. 그러나 선수가 스타트라인을 지나서 피니시라인을 통과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선수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공식 기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f) 피니시 순서와 기록의 결정은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요하다면 규칙 제164조 2항과 제16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IAAF] 피니시 순서 결정을 돋기 위해 심판원의 판정 및/또는 비디오 기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25. 자동무선계시장치 심판원주임은 자동무선계시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주임은 경기대회 시작 전에 관계된 기술임원과 협의하여 장치조정에 익숙해야한다. 장비 테스트를 감독하고, 피니시 라인 통과 동시에 이 장치가 통과할 때 선수의 피니시 기록이 기록되는지를 점검한다. 그는 심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제165조 24항(f)의 적용이 보장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6조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예선전 (Seedlings, Draws and Qualification in Track Events)

라운드와 조(Rounds and Heats)

1. 트랙경기에서 참가 선수 인원이 너무 많아 단일라운드(결승)로는 만족스러운 경기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예선라운드를 실시한다. 대회 주최측의 재량으로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의거하여 경기 참가 기준기록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에 한하여 시행하는 예선자격라운드를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선수는 예선라운드에 참가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임명된 기술대표가 예선라운드의 조편성을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작성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운드 수와 각 라운드의 조수를 결정하는데 아래 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트랙경기의 각 라운드에서 순위(P)나 기록(T)으로 진출하는 각 라운드의 통과자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사용한다.

100m, 200m, 400m, 100mH, 110mH, 400mH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3	2
33-40	5	4	4				3	2	2
41-48	6	3	6				3	2	2
49-56	7	3	3				3	2	2
57-64	8	3	8	4	3	4	2	4	
65-72	9	3	5	4	3	4	2	4	
73-80	10	3	2	4	3	4	2	4	
81-88	11	3	7	5	3	1	2	4	
89-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3	6	3	2	2
105-112	14	3	6	6	3	6	3	2	2

800m, 4x100mR, 4x400mR, 메들리 레이레이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3	2
33-40	5	4	4				3	2	2
41-48	6	3	6				3	2	2
49-56	7	3	3				3	2	2
57-64	8	2	8				3	2	2
65-72	9	3	5	4	3	4	2	4	
73-80	10	3	2	4	3	4	2	4	
81-88	11	3	7	5	3	1	2	4	
89-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3	6	3	2	2
105-112	14	3	6	6	3	6	3	2	2

육상경기규칙 2014–2015

1,500m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16-30	2	4	4						
31-45	3	6	6				2	5	2
46-60	4	5	4				2	5	2
61-75	5	4	4				2	5	2

2,000mSC, 3,000m, 3,000mSC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20-34	2	5	5						
35-51	3	7	5				2	6	3
52-68	4	5	6				2	6	3
69-85	5	4	6				2	6	3

5,000m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21-40	2	5	5						
41-60	3	8	6				2	6	3
61-80	4	6	6				2	6	3
81-100	5	5	5				2	6	3

10,000m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조수	순위	기록순
28-54	2	8	4
55-81	3	5	5
82-108	4	4	4

동일 국가나 팀에 소속한 선수들 및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가능한 한 모든 예선라운드에서 다른 조에 편성한다. 제1라운드 이 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조별로 편성된 선수들을 교환 편성할 때는 오직 규칙 제166조 3항에서 규정하는 랭킹이 비슷한 선수들에 한하여 실시한다.

[주1-IIAAF] 가능하면 모든 선수의 기록을 자세히 파악하고 조편성을 조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결승경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2-IIAAF]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에서는 별도의 조편성 표를 작성하여 해당 경기규정에 추가 시킬 수 있다.

[주] 국내의 경기대회에서는 중·장거리경기의 1조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0m, 3000mSC	15명이내
3000m, 5000m (그룹 스타트를 할 때)	27명이내
10,000m (그룹 스타트를 할 때)	30명이내

랭킹 및 조 편성(Ranking and Composition of Heats)

3. (a) 제1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립된 해당 종목의 유효한 기록리스트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각 조에 배정한다.
- (b) 제1라운드 후에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조에 배정된다.
 - (i) 100m~400m까지 종목과 4×400m까지의 릴레이레이스의 조편성은 이전 라운드의 순위와 기록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예선 각조 1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1위중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1위중 세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 예선 각조 2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2위중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2위중 세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아래의 기록으로 통과된 선수를 포함하여)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 중 예선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 중 예선 기록이 두 번째로 좋은 선수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 중 예선 기록이 세 번째로 좋은 선수 등
- (ii) 기타 종목의 경우에는 기존 경기결과 리스트를 토대로 시드배정을 하되, 이전 라운드에서 더 좋은 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c) 이 절차를 마친 후, 선수들의 각 조 편성 순서에 있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면, 3개조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 편성을 한다.

A	1	6	7	12	13	18	19	24
B	2	5	8	11	14	17	20	23
C	3	4	9	10	15	16	21	22

모든 경우에, 각 조별 경기순서는 각 조의 구성이 결정된 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레인추첨(Draw for Lanes)

4. 100m~800m까지의 경기와 4×400m까지의 릴레이레이스에서 몇 차례의 연속 라운드가 계속 진행될 때는 레인 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첨된다.
- ||
- (a) 제 1라운드 및 규칙 제166조 1항에 따른 모든 예선자격라운드의 레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b) 두 번째 라운드부터, 선수는 규칙 제166조 3항(b)(i), 800m 경우에는 제166조 3항(b)(ii)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라운드

후 순서가 정해진다.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추첨이 실시된다 :

(i) 3, 4, 5, 6의 레인에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4명 또는 4팀을 배정.

(ii) 7, 8레인에 5위와 6위의 선수 또는 팀을 배정

(iii) 1, 2레인에 최하위 순위의 선수 2명 또는 2팀을 배정

[주1-IIAAF] 레인이 8개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 방식에 준해서 필요한 수정을 하여 결정한다.

[주2-IIAAF] 규칙 제1조 1항 (d)~(j)에 해당되는 대회에서 800m 경기는 각 레인에 선수가 1명 또는 2명이 레이스를 하여도 좋으며, 또는 원호형스타트라인 뒤에서 그룹 스타트를 해도 좋다. 이 사항은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 제1라운드에서만 적용 하지만, 동순위 n 또는 심판장의 진출 허락으로 인하여 다음 라운드의 한조에 진출하는 선수 수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3-IIAAF] 800m 레이스에서는(결승전 포함), 레인 수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경우 어느 레인에 1명 이상의 선수를 배정할 것인지를 기술대표가 결정한다.

[주4-IIAAF] 선수들보다 레인이 더 많을 때, 안쪽 레인이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

5. 선수는 자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조 또는 레인 이외의 조 또는 레인에서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심판장의 판단으로 변경이 정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모든 예선라운드에서는 적어도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나, 가능하면 각 조의 3위까지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 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규칙 제16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규칙 제166조 2항, 특정 경기규정, 또는 기술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순위 또는 기록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기록으로 자격이 주어질 경우,

동일한 계시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 기록에 의하여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한 대회에 한한다.

7. 각 라운드의 최후의 조와 다음 라운드의 최초의 조 또는 결승경기 간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간격을 두어야 한다.

200m까지	45분
200m 초과-1,000m까지	90분
1,000m 초과	같은 날 실시하지 않음

단일라운드(Single Rounds)

8.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800m를 초과하는 종목, 4×400m를 초과하는 릴레이레이스 그리고 단일라운드(결승)만 실시하는 종목에서는 레인 순과 스타트 위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67조 동순위의 해결(Ties)

- 만약 심판원이나 사진판정심판원이 규칙 제164조 2항, 165조 18항, 165조 21항 또는 165조 24항에 의거해서도 동순위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기록에 의해 다음 라운드의 마지막 진출자를 결정하거나 규칙 제166조 3항(b)에 준하여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조의 선수들 간의 동순위가 있을 경우,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동순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수의 실제기록을 1/1000초까지 참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또는 규칙 제167조 1항에 따라서도) 동순위가 발생한다면, 순위 결정은 추첨을 통해 한다. 기록이나 순위에 의해 다음 라운드의 마지막 진출자를 결정할 때 동순위가 있다면, 그 선수들은 다음라운드에 진출하나, 동순위 선수 모두가 진출할 수 없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IAAF]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이 순위와 기록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고(예, 각 두 조에서의 3위까지와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른 2명) 순위에 근거한 마지막 진출자 자격의 순위에서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동순위 선수들은 배치하면 기록에 근거한 자격 선수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제168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1. 허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거 리
남자 : 일반, 주니어, 남고, 청소년	110m, 400m
여자 : 일반, 주니어, 여고, 청소년	100m, 400m
남중	110m
여중	100m

허들 레이스에서는 각 레인에 다음 표와 같이 10대의 허들을 설치 한다.

남자 : 일반, 주니어, 남고, 청소년 및 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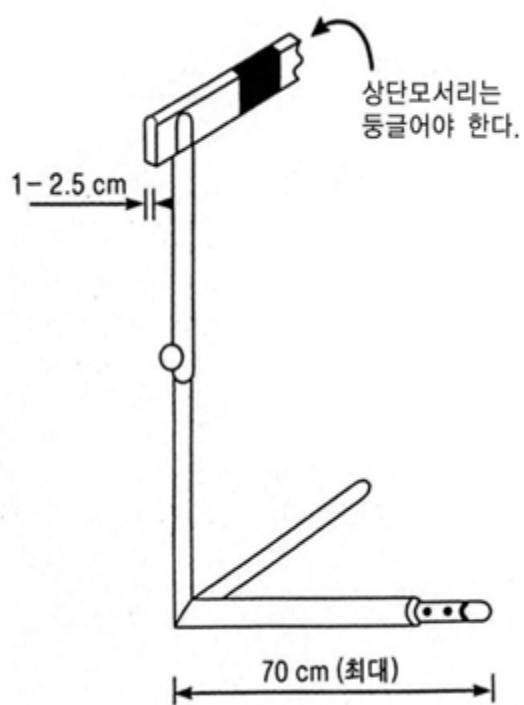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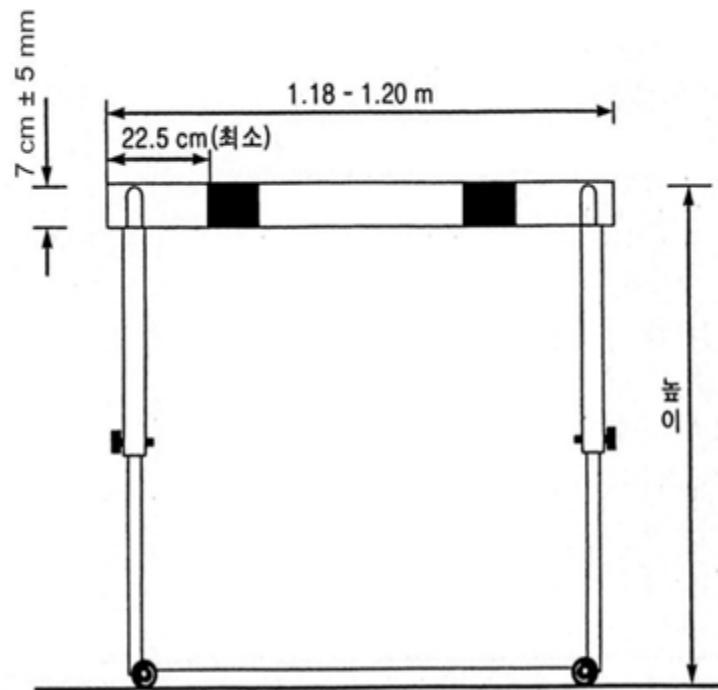
레이스거리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의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허들 ~ 피니시라인까지의 거리
110m	13.72m	9.14m	14.02m
400m	45.00m	35.00m	40.00m

- 남중은 400m 허들을 실시하지 않는다.

여자 : 일반, 주니어, 여고, 청소년 및 여중

레이스거리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의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허들 ~ 피니시라인까지의 거리
100m	13.00m	8.50m	10.50m
400m	45.00m	35.00m	40.00m

- 여중은 400m 허들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들 (예)

각 허들은 선수들이 허들에 접근하는 쪽에 받침대가 위치하도록 트랙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허들은 접근하는 허들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바의 옆 쪽 수직면이 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트랙 마킹과 일치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허들은 금속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 바는 목재나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허들은 1개 이상의 크로스바로 보강되는, 직사각형의 틀을 떠받치는 2개의 받침대와 2개의 지주(支柱)로 구성되고 지주는 각기 기저부의 양쪽 끝에 고정시킨다. 허들은 바의 상단(上端) 중심부에 최소한 3.6kg에 상당하는 힘이 수평으로 가해지면 기울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허들은 종목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한 높이에 따라 3.6kg이상과 4kg이하에 상당하는 힘이 가해질 때 기울어지도록, 평형추(平衡錘)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1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허들 상단 바의 중심부에 가했을 때 (지주편차를 포함하여) 허들 상단 바의 수평편차 최대값은 35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허들의 표준 높이는 다음과 같다.

종목	남자				여자		
	일반/남고	주니어	청소년	남 중	일반/주니어/여고	청소년	여 중
110mH/100mH	1.067m	0.991m	0.914m	0.914m	0.838m	0.762m	0.762m
400mH	0.914m	0.914m	0.838m		0.762m	0.762m	

[주 IAAF] 제조상 변수 때문에, 주니어 110mH 레이스에는 1.000m까지의 허들도 사용할 수 있다.

각 높이의 허용오차는 제조상의 변수를 감안해서 표준높이에서 $\pm 3\text{mm}$ 의 오차는 인정한다.

허들 너비는 1.18m ~ 1.20m이다.

기저부의 최대길이는 70cm이다.

허들의 총 중량은 10kg이상으로 한다.

4. 바 상단의 높이는 $7\text{cm} \pm 5\text{mm}$, 두께는 1cm~2.5cm, 상단 모서리는 둥글어야 한다. 바는 양끝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바의 상단은 흰색과 검정색 또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주위환경과 또한 대조를 이루는) 다른 색체를 칠하되, 양끝에는 연한색을 칠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6. 모든 레이스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제163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레인에서만 달려야 한다.
7. 선수는 각(모든) 허들을 넘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실격이 된다 :
 - (a) 발 또는 다리가 허들을 넘는 순간에 어느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낮게 허들의 평면(어느 측면이라도)을 통과한 경우; 또는
 - (b)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심판장이 판단할 경우
8. 규칙 제168조 7항(b)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들을 넘어뜨려도 실격되지 않으며 그 신기록도 인정된다.
9. 세계/한국기록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모든 허들은 본 규칙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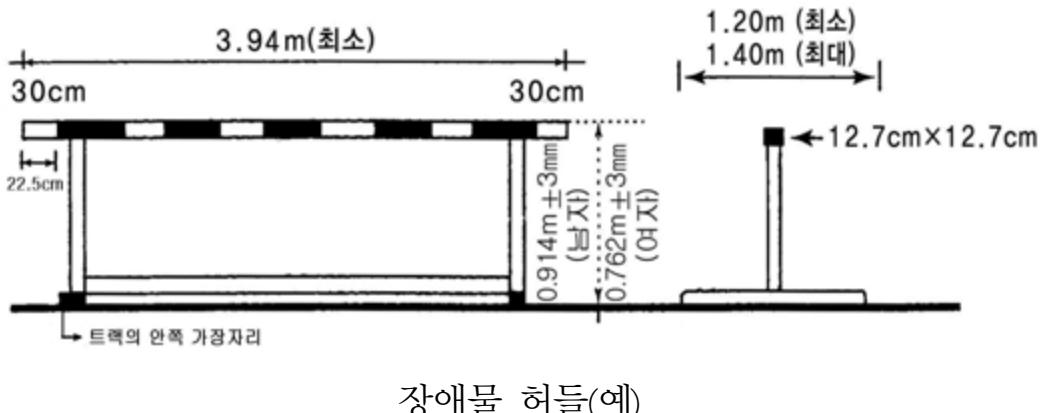
제169조 장애물 레이스(Steeplechase Races)

1. 표준거리는 2,000m와 3,000m이다.
2. 3,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28개의 허들과 7개의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하고, 2,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18개의 허들과 5개의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3. 장애물레이스에는 피니시라인을 처음으로 통과한 후, 매 주회마다 4번째의 물웅덩이와 5개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중 4번째는 물웅덩이다. 장애물 간의 거리는 트랙 한 바퀴의 약 1/5의 길이가 되도록 균일하게 배치할 수 있다.

[주1-IAAF] IAAF 육상경기매뉴얼에 명시되었듯이, 허들/스타트라인과 그 다음 허들 간의 안전거리가 피니시라인 전후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허들 간의 간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주2-IIAAF] 2,000m 장애물레이스에서 물웅덩이가 트랙의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5개의 장애물을 넘는 첫 번째 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스타트 후 피니시라인을 2회 통과하여야 한다.

4.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는 스타트로부터 첫 번째 주회의 시작까지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하지 않는다. 선수가 첫 번째 주회에 들어서기 전까지 허들은 트랙바깥에 놓아둔다. 2,000m장애물레이스에서는 첫 번째 장애물은 정상 주회의 세 번째의 허들이 되며, 그 보다 앞에 있는 허들은 선수들이 처음 통과할 때까지 트랙 바깥에 놓아둔다.
5. 남자/청소년 종목의 허들높이는 $0.914m \pm 3mm$ 이고, 여자/청소년 종목의 허들높이는 $0.762m \pm 3mm$ 이며, 너비는 최소 3.94m로 한다. 트랙의 허들과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의 상단 바 부분은 가로 세로 12.7cm의 정방형(正方形) 모양으로 한다.
각 허들의 무게는 80kg~100kg사이로 한다. 각 허들에는 양쪽에 길이 1.2m~1.4m의 기저부를 붙인다(그림 참조).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은 너비 $3.66m \pm 0.02m$ 로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수평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바의 상단은 흰색과 검정색 또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다른 색채 (주변환경도 대조를 이루는)를 칠하되, 양끝에는 연한색을 칠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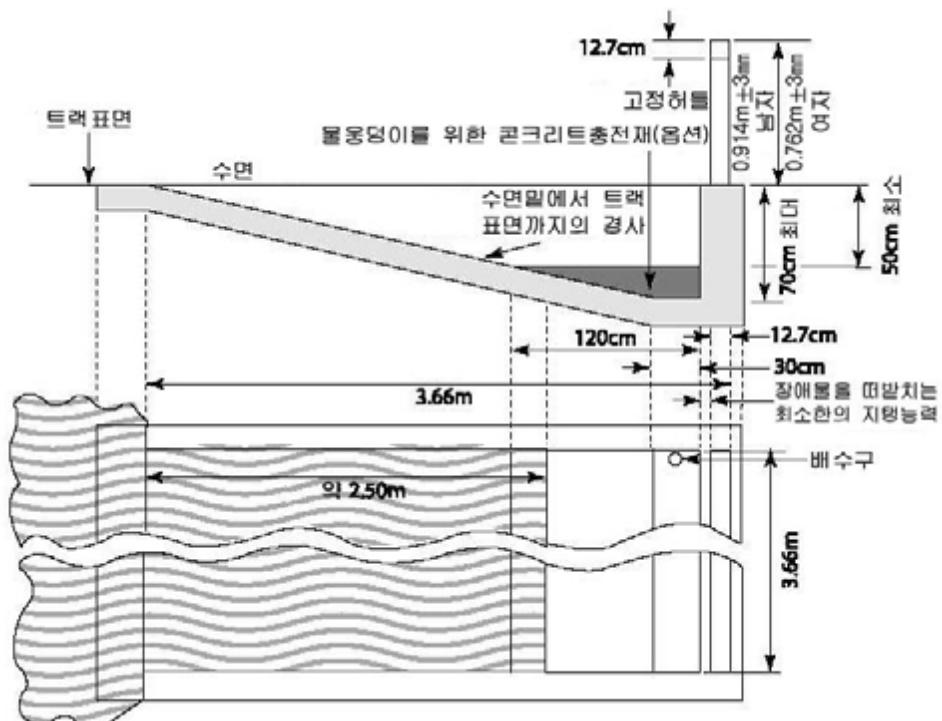
허들은 바 상단의 30cm가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에서 필드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트랙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레이스에 설치한 첫 번째 허들은 너비가 최소 5m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허들을 포함한 물웅덩이의 길이는 $3.66m \pm 0.02m$ 이고, 물웅덩이의 너비는 $3.66m \pm 0.02m$ 이다.

물웅덩이의 바닥재질은 합성포장재나 매트로 하며, 두께는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고 스파이크가 확실하게 찍힐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허들과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의 수심은 대략 30cm 깊이까지는 70cm가 되어야 한다. 바닥은 이 지점으로부터 물웅덩이의 먼 쪽 끝의 트랙의 표면까지 균일하게 경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레이스 스타트 시, 물웅덩이의 수면과 트랙표면의 차이는 2cm이내의 차이로 트랙표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주-IAAF] 물웅덩이의 수심은 트랙표면 수평으로부터 최대 70cm에서 최소 50cm까지 감소해도 좋다. 물웅덩이 바닥의 균일한 경사는 그림에 예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새롭게 시공되는 물웅덩이는 얕은 수심의 물웅덩이가 권장된다.



물웅덩이 (Water jump)

7. 각 선수는 물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통과해야 하고, 각 허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실패할 경우 실격처리가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격처리가 된다 :
 - (a) 물웅덩이의 바깥에 착지하는 경우, 또는
 - (b) 발이나 다리가 허들을 넘는 순간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낮게 허들의 측면(어느 쪽이든)을 통과하는 경우.이 규칙이 준수되는 한, 선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들을 넘을 수 있다.

제170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1. 릴레이레이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 4x100m, 4x200m, 100m-200m-300m-400m 메들리 릴레이 (Medley Relay), 4x400m, 4x800m, 4x1500m.

[주-IAAF] 메들리 릴레이는 규칙 제170조 14항, 18항, 19항, 20항이 적용되도록 적절히 수정된 경우 각 구간을 다른 순서로 달릴 수 있다.
2. 각 구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scratch line)을 표시하기 위해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트랙에 가로질러 표시한다.
3. 각 테이크오버존은 스크래치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가 20m여야 한다. 테이크오버존은 달리는 방향으로 스타트라인과 가장 가까운 존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레인에서 실시되는 각 테이크오버는 임명된 임원이 선수들이 그들의 테이크오버존에 맞게 배치되어있고 적용되는 가속 구간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임명된 임원은 또한 규칙 제170조 4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릴레이레이스의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달릴 경우, 선수는 다른 영구적인 마킹과 혼돈되지 않도록 구별이 분명한 색상의 최대 5cmx40cm의 크기의 접착테이프로 자기 레인 내의 트랙 위에

1개의 체크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체크마크를 해서는 안 된다.

[주] 국내의 경기대회에서는 각 소속팀에서 체크마크를 준비한다.

5. 릴레이 배턴은 목재나 금속 또는 다른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단면이 둥글고, 표면이 고르며, 속이 빈 관형(管型)이어야 한다. 길이는 28cm ~ 30cm이고, 바깥 지름은 40mm($\pm 2\text{mm}$), 무게는 50g이상이어야 한다. 배턴은 레이스 중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으로 칠하여야 한다.

[주] 초등학생용 배턴

길이 : 26cm~28cm, 둘레 : 9.5cm~10.5cm

무게 : 50 g 이상

6. (a) 배턴은 선수가 레이스 동안 계속 손에 쥐고 운반하여야 한다.
- (b) 선수가 배턴을 잘 잡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거나 (규칙 제144조 4항(c)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 손에 재료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c) 배턴을 떨어뜨렸을 경우, 배턴을 떨어뜨린 선수가 주워야 한다. 선수는 떨어뜨린 배턴을 줍기 위해 자기 레인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달려야 할 거리를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배턴이 달리는 방향의 측면이나 정면(피니시라인의 앞쪽 포함하여)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 선수는 반드시 배턴이 자신의 손에서 떠난 지점으로 되돌아 온 후 레이스를 재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가 방해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배턴을 떨어뜨려도 실격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 팀은 실격이 된다.
7. 배턴은 테이크오버존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한다. 배턴패스는 배턴을 받는 선수의 손에 처음 배턴이 닿는 순간에 시작해서 받는 선수의 손안에 완전히 넘겨진 순간에 끝난다. 테이크오버존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턴의 위치이다. 테이크오버존 외에서 배턴을 패스하는 경우는 실격이다.

8. 배턴을 받기 전과 그리고/또는 넘겨준 후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비어있을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레인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본 규칙 제163조 3항 및 4항은 이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신의 구간 끝부분에서 (배턴을 넘겨준 후) 자신의 위치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팀의 선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9. 배턴을 받는 선수를 떠밀어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경우는 실격된다.
10. 릴레이 팀의 각 선수는 한 구간만 달려야한다. 릴레이레이스 혹은 기타 종목에 대한 참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대회에 참가 신청한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릴레이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릴레이 팀이 첫 경기를 치른 후에는 2명의 추가 선수만이 예비 선수로 활용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11. 릴레이레이스에서 팀의 편성 및 주자 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당 경기 각 라운드 제1조의 첫 번째 소집시각 1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후의 변경을 하려면 대회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무담당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해당 팀의 경기가 있는 조의 최종 소집시각 전까지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 12 4x100m 레이스는 완전히 레인 내에서만 진행된다.
13. 4x200m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 (a) 가능하면, 완전히 레인에서 달린다 (레인에서 4개의 곡주로를),
 - (b) 제2 주자와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제3 주자는 브레이크라인 앞쪽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고, 그 후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3개의 곡주로를 달린다.)

(c)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한 브레이크라인의 앞쪽 끝까지 제 1주자가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1개의 곡주로를 달린다.)

[주-IAAF] 4개 이하의 팀이 참가하고 (a)가 불가능한 레이스에서는 상기 (c)의 적용을 권장한다.

14. 메들리 레이스는 첫 두 구간과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제3구간의 브레이크라인 지점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이 구간을 지나면서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2개의 곡주로를 레인에서 달리는 것이다)

15. 4x400m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a) 제 1주자와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제2 주자는 브레이크라인에 보다 가까운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3개의 곡주로를 달린다),

(b)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제1구간의 브레이크라인에 보다 가까운 가장자리까지만 레인에서 달린다.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즉 레인에서 1개의 곡주로를 달린다.)

[주-IAAF] 4개 이하의 팀이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상기 (b)의 적용을 권장한다.

16. 4x800m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a)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제1구간의 브레이크라인에 보다 가까운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즉 레인에서 1개의 곡주로를 달린다.)

(b)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17. 4x1500m 레이스에서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18. 4x100m와 4x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제1 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과, 메들리레이스의 제2구간 및 제3 주자는 테이크오버존의 앞 10m이내 지점부터 레이스를 시작해도 무방하다(규칙 제170조 3항 참조). 이 연장 제한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각 레인에 뚜렷한 마크를 하여야 하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19. 메들리레이스, 4x400m, 4x800m, 4x1500m 레이스의 최후의 테이크오버에서 선수들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없고, 존 내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20. 메들리레이스의 최종 주자와 4x400m 레이스의 제3구간 및 제4구간 주자는 최후(제2) 곡선주를 진입한 팀 순서에 따라(동일한 순서로) 해당 임원의 지시 하에 대기 순서대로(안쪽에서 바깥 순으로) 대기 위치에 선다. 앞 주자가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대기선수는 지정된 순서를 유지해야 하며, 테이크오버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주-IAAF] 완전히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4x200m 레이스의 경우에는, 앞 주자가 레인에서 달리지 않았다면 선수들은 스타트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추어 선다.

21. 4x200m, 메들리릴레이, 4x400m 레이스를 포함하여 레이스가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선수는 다른 팀의 주자가 다가올 때 다른 팀의 선수를 밀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 트랙 안쪽에 위치할 수 있다. 4x200m, 메들리릴레이 및 4x400m레이스에서 대기선수는 규칙 제170조 20항을 준수하여 지정된 순서를 유지한다. 만약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의 팀은 실격이 된다.

제4장 필드경기(Field Events)

제180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필드경기

경기장소에서의 연습시기(Practice Trials at the Competition Area) ||

1. 경기장소에서 경기시작전에 각 선수는 연습시기를 할 수 있다. 투척경기에서는, 연습시기는 추첨된 순서로 항상 심판원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2.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선수들은 연습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사용할 수 없다.
 - (a) 도움닫기주로 또는 발구름 장소
 - (b) 장대높이뛰기 장대
 - (c) 용구
 - (d) 서클 또는 투척 낙하구역 내의 지면 (용구를 지참하거나 지참하지 않아도)

마커(Markers)

3. (a) 도움닫기주로를 사용하는 모든 필드경기에서는 도움닫기 주로의 바깥에 마커를 두어야 한다. 단,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주로위에 마커를 둘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돋기 위해 (주최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1개나 2개의 마커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마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필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 또는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그 외의 어떤 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
- (b) 서클에서 실시되는 투척경기에서는 선수는, 한 개의 마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마커는 서클 바로 후방 또는 서클에서 인접한 경기장 내의 지면에만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마커는

선수 각 개인의 투척 시기중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야하며 심판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낙하장소 내 또는 근처에 개인의 마커를 설치할 수 없다.

기록마커(Performance Markers)

4. 현 세계기록 및 (필요할 시에는) 현 대륙기록 또는 한국기록 또는 대회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나 마커를 설치할 수 있다.

시기순서 및 시기(Competing Order and Trials)

5. 선수들은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경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125조 5항과 145조 2항이 적용된다. 예선라운드가 있을 경우에는 결승경기에서 새로운 추첨으로 시기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80조 6항 참조).
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선수는 경기시기의 각라운드에서 1회의 시기만 실시할 수 있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필드경기에서 8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하고, 이중에서 유효한 기록이 가장 좋은 8위의 선수에게는 3회의 추가시기를 허용한다. 최후의 통과 순위(8위)에서 놓고 2명 이상의 선수가 최고기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칙 제180조 2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도 동순위가 될 경우에는 동순위의 선수에게 3회의 추가 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각 선수에게 6회의 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처음 3라운드의 시기에서 유효시기가 1회도 없는 경우에는, 이 선수들은 유효시기가 있는 선수보다 먼저 최초의 추첨한 시기 순서대로 다음 라운드의 시기를 이행한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 :

- (a) 후반 3라운드의 시기순서는 전반 3라운드 후의 기록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 (b) 시기순서가 바뀌어야 하고 어느 순위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해당 동순위선수들은 최초의 추첨에 의한 시기순서대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주1-IIAAF] 수직도약경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81조 2항을 참조.

[주2-IIAAF] 만약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규칙 제146조 5항에 의거하여 항의 중에도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심판장이 허용한다면, 이 선수는 모든 다음 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 보다 먼저 경기에 임한다. 항의를 제기한 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추첨에 의한 시기 순서대로 실시한다.

[주3-IIAAF] 대회주최측은 한 종목에 8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할 경우, 모든 선수에게 4회의 시기를 부여해도 좋다는 내용을 대회 규정에 명시하여도 좋다.

시기의 기록(Recording of Trials)

7. 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 (a)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시기는 계측결과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O”라는 기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b) 무효 시기는 ‘X’라는 기호로 표기한다.
- (c) 선수가 시기를 포기(“패스”)하는 경우, “—”라는 기호로 표기한다.

시기의 종료(Completion of Trials)

8. 심판원은 해당 시기가 종료될 때까지, 흰색 깃발을 들어서 유효 시기임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유효시기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a) 수직도약경기의 경우, 심판원이 규칙 제182조 2항, 183조 2항, 또는 183조 4항에 의거하여 무효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때 유효가 결정된다.

- (b) 수평도약경기의 경우, 규칙 제185조 2항에 의거하여 선수가 착지장소를 떠난 후 유효가 결정된다.
- (c) 투척경기의 경우, 규칙 제187조 17항에 의거하여 선수가 서클이나 도움닫기주로를 떠난 후 유효가 결정된다.

예선경기(Qualifying Competition)

9. 예선경기는 필드 종목에서 참가선수가 너무 많아서 단일 라운드(결승)에서 만족하게 경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 실시한다. 예선경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수가 참가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예선라운드의 기록은 결승 경기기록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참가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예선경기를 한다.

10. 선수는 무작위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되, 가능하면 각 국가 혹은 팀의 대표선수들이 각각 다른 그룹에 편성되도록 한다. 여러 그룹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 동시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 실시한 그룹이 경기를 마친 후 즉시 다음 그룹이 연습시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 도약 경기와 포환던지기 경기는 예선 경기에 한해서 병렬 또는 떨어진 2개의 장소에서 실시하여도 좋다. 단 이들 장소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11. 4일 이상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 수직도약 종목은 예선경기와 결승경기 사이에 1일 휴식일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예선 경기의 제반조건은 주최자가 결정한다. 결승경기에는 적어도 12명의 선수가 진출하도록 한다.

[비고] 예선 통과 자격조건. 예선 통과 기준 및 결승 진출 선수는 기술대표가 결정한다. 기술대표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조직 위원회가 이 조건들을 결정한다. 규칙 제 1조 1항 (a), (b), (c) 및 (f)에 해당되는 경기에서는 최소 12명의 선수가 결승경기에 진출하도록 한다.

13.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기타 필드경기의 예선경기에서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예선 통과 기준기록에 도달한 선수는 그 이후의 시기는 하지 않는다.
14. 결승경기에 참가할 선수가 규칙 제 180조 12항에 정의된 결승경기의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예선경기에서 3회 연속 무효시기를 하지 않은 선수는 규칙 제181조 2항에 따라 예선 통과 기준으로 정해진 높이에서 최종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여야 한다.
15. 만약 사전에 결정된 예선 통과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거나 필요한 선수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승경기 진출자 그룹에 예선경기 기록에 따라 추가 보충하여 충족시킨다. 최후의 예선통과 순위에 경기 종합 결과기록에서 동기록의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 제180조 22항 또는 제181조 8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만약 동순위로 결정될 경우에는, 동순위의 선수들은 결승경기에 진출한다.
1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의 예선경기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 높이에 바를 올리는 시간은 두 그룹이 동시에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두 그룹은 거의 같은 경기수준의 선수들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해(Obstruction)

17. 어떠한 이유로도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를 받은 경우, 심판장은 그 선수에게 재시기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시기지연(Delay)

18. 필드경기에서 선수가 부당하게 시기(試技)를 지연시킬 경우, 그 시기를 허용하지 않고 1회의 무효시기로 기록한다. 부당한 시기지연인지 아닌지는 심판장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경기종목의 담당심판원은 선수에게 시기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그 시기에 허용되는 시간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만약 선수가 시기를 시도하지 않고 그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경과된다면,

1회의 무효시기로 간주한다.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선수가 경기 전에 요청한 크로스바의 위치를 조정한 후부터 시기시간이 시작되며, 그 이후의 조정을 위한 추가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시기를 시작한 후에 허용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허용한다.

다음의 시기 허용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별종목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1분	1분	참가선수 1분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명	3분	5분	
동일선수연속시기(2명이상 남아있을시)	2분	3분	

혼성경기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1분	1분	참가선수 1분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명 또는 동일선수의 연속시기	2분	3분	

[주1-IIAAF] 시기 허용시간의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선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또한, 선수에게 시기 허용시간이 15초가 남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심판원은 노란색 깃발을 올려 계속 들고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2-IIAAF]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1회 시기에 허용된 시간은 바를 새로운 높이로 올릴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선수의 연속 시기를 위하여 허용된 시간은 제외된다.

[주3-IIAAF] 경기를 시작하는 모든 선수의 첫 번째 시기의 허용시간은 1분이다.

[주4-IIAAF]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수는 1위 결정경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도 포함된다.

경기도중 이탈(Absence during Competition)

19. 선수는 심판원의 허가를 받고 심판원이 동행할 경우에는 경기 진행 중에 경기장소를 떠날 수 있다.

경기장소 또는 경기시간 변경(Change of Competition Area or Time)

20. 기술대표 또는 해당 심판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시기의 한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IAAF] 바람의 강도나 방향의 변화가 경기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경기 결과(Result)

21. 각 선수의 기록은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인정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는 동기록의 순위결정 경기에 시기 기록도 포함된다.

동기록의 순위결정(Ties)

22.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최고기록이 동일한 선수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대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두 번째 기록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등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만약, 본 규칙 제180조 22항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일 경우에는, 동순위로 결정된다.
수직도약 경기를 제외하고, 어느 순위가 동기록일 경우에는, 1위를 포함하여 동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IAAF] 수직 도약경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81조 8항 및 9항을 참조

A. 수직도약 경기(Vertical Jumps)

제181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원주임은 최초의 높이와 우승이 결정되어 선수 1명만이 남을 때까지 또는 1위 동기록의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각 라운드의 시기종료 후에 계속해서 올리는 바의 높이를 선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기(Trials)

- 선수는 심판원주임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느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되며, 이 후의 도약 높이는 선수가 선택하여 도약할 수 있다. 1위 결정경기를 제외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무효시기가 되면 그 이상의 도약을 계속 할 수 없다.
이 규칙의 취지는 선수가 어느 높이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기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기를 실패한 후에)를 패스한 경우라도 다음 높이를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선수가 어느 높이에서 시기를 패스하였을 때에는 1위 결정경기를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높이에서 차후의 시기를 시도할 수 없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의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선수가 경기를 완료하였을 때 어느 선수가 경기장 내에 없다면, 심판장은 해당 선수의 다음 시기의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 그 선수가 경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 다른 모든 선수가 실패한 후라도, 선수는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 우승한 선수 1명만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시기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높이뛰기는 2cm, 장대높이뛰기는 5cm미만으로 바를 올려서는 안 된다.

(b) 바 높이 인상의 폭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

본 규칙 제 181조 4항 (a)와 (b)는 세계신기록, 한국신기록 및 각종 부별 신기록의 높이로 바로 올리는 것에 선수들이 동의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1위로 결정된 후에 올리는 바의 높이 또는 인상의 폭은 해당 심판원 또는 심판장과의 협의를 통해 선수가 결정한다.

[주-IAAF] 혼성경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경기대회와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혼성경기에서는 경기 전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높이뛰기는 3cm, 장대높이뛰기는 10cm씩 바를 높여야 한다.

계측(Measurements)

5. 모든 계측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바 상부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완전한 cm 단위로 계측한다.
6. 크로스바를 새로운 높이로 올린 경우에는 선수가 그 높이를 시기하기 전에 바의 높이를 계측한다. 모든 신기록 시도의 경우, 최후의 계측 이후로 시기 중 바를 건드렸다면 심판원들은 신기록 높이에 대한 각 차후의 시도 전에 그 높이를 재계측 하여야 한다.

크로스바(Crossbar)

7. 크로스바는 섬유유리(fibre-glass), 또는 금속이 아닌 기타 적절한 재질로 만든 것으로 바의 양끝을 제외하고, 횡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크로스바의 전체 길이는 : 높이뛰기 $4.00m \pm 2cm$ 이고, 장대높이뛰기 $4.50m \pm 2cm$ 이다. 크로스바의 최대 무게는 : 높이뛰기 $2kg$ 이고, 장대높이뛰기 $2.25kg$ 이다. 크로스바의 원형부분의 직경은 $30mm \pm 1mm$ 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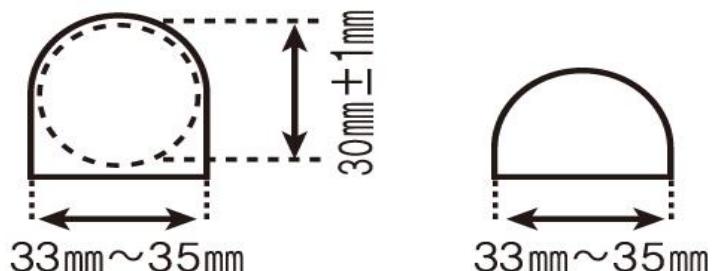
크로스바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형막대기와 지주의 바걸이에 얹기 위한 너비 $33\sim35mm$, 길이 $15\sim20cm$ 의 양쪽 끝부분 2개.

양쪽 끝부분은 원형이거나 반원형으로 바를 바걸이에 거는 부분의 표면이 편평해야 한다. 이 편평한 표면은 크로스바의 수직 횡단면의

중심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양쪽 끝부분은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양쪽 끝부분은 바와 바걸이와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기타 재질로 덮어씌워져서는 안 된다.

크로스바는 무게중심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되며, 바걸이에 바르게 걸었을 때 높이뛰기 바는 2cm이내, 장대높이뛰기 바는 3cm이내로 휘어야 한다.

- 탄력성의 조절 : 바걸이에 바르게 걸고 크로스바 중간에 3kg의 무게를 달았을 때 높이뛰기 바는 최대 7cm이내, 장대높이뛰기 바는 11cm이내로 휘어질 수 있다.



크로스바 끝부분의 대체 형태

순위 결정 방법(Placings)

8. 만약 2명 이상의 선수들이 동일한 최종 높이를 성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a) 최후의 성공한 높이에서 시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b) 만약 규칙 제181조 8항(a)의 적용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성공한 높이까지 포함하여 경기 중 총 무효시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c) 만약 규칙 제181조 8항(b)의 적용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1위 결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선수들에게는 동순위가 부여된다.

(d) 1위 결정의 경우에는, 만약 사전에 해당 경기의 기술 규정에 의해서 또는 경기 시작 전에 기술대표에 또는 임명된 기술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규칙 제181조 9항에 의거하여 해당선수들 간에 1위 결정경기(jump-off)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 선수들이 어느 단계에서 계속해서 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위 결정경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1위 동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IAAF] 본 규칙의 (d)조항은 혼성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위 결정경기(Jump-off)

9. (a) 해당 선수들은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또는 모든 해당선수들이 더 이상 시기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높이에서 반드시 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b) 각 선수는 각 높이에서 1회의 시기를 실시한다.
(c) 1위 결정경기는 규칙 제181조 1항에 의거하여 해당 선수들이 모두 성공한 최후의 높이의 다음 높이에서 시작한다.
(d) 만약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선수 2명 이상이 성공한 경우는 바를 높이고, 모두 실패한 경우는 바를 낮춘다.
높이뛰기는 2cm씩, 장대높이뛰기는 5cm씩 바의 높이를 증가시키거나 낮춘다.
(e) 만약 선수가 특정 높이에서 시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자동적으로 상위에 대한 자격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단 1명의 선수만 남게 된다면, 그 선수는 해당 높이를 시기하지 않아도 우승자로 결정된다.

[높이뛰기 예]

경기가 시작될 때 심판원주임이 발표한 높이 :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9m....

선수	높이							무효 시기수	1위 결정경기			순위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1m	1.89m	1.91m	
A	O	XO	O	XO	X-	XX		2	X	O	X	2
B	-	XO	-	XO	-	-	XXX	2	X	O	O	1
C	-	O	XO	XO	-	XXX		2	X	X		3
D	-	XO	XO	XO	XXX			3				4

O : 유효시기, X : 무효시기, — : 패스

A, B, C, D 선수 모두 1.88m 높이에 성공했다.

동순위에 관한 규칙적용 방법 : 규칙 제181조 8항과 9항이 적용된다.

심판원은 최후에 성공한 높이(1.88m 포함)
까지의 시기 중 총 무효시기 수를 계산
한다.

D선수는 “A”, “B”, “C” 선수보다 무효시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4위가 된다. “A”, “B”, “C” 선수는 여전히 동순위이고 이것은 1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순위의 선수들은 최후에 성공한 높이의 다음 높이인 1.91m에서 1회의 추가시기를 한다.

모든 선수들이 실패하였으므로, 1위 결정경기를 다시 실시하기 위하여 바 높이를 1.89m로 낮춘다. “C” 선수만 1.89m에서 실패함으로서, 아직 동순위인 다른 두 선수, 즉 “A”와 “B” 선수는 1.91m에서 3번째 1위 결정경기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B’ 선수만이 성공함으로써 우승자가 된다.

외부의 영향(Extraneous Forces)

- 선수가 바를 넘을 때 선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향(예 : 돌풍)에 의해 바가 떨어진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선수가 바를 건드리지 않고 넘은 후에 바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시기는 성공(유효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바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 기회를 준다.

제182조 높이뛰기(High Jump)

경기(Competition)

1. 선수는 한 쪽 발로 발구름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도약 후, 선수의 도약중의 동작으로 인해 바가 바결이에서 떨어진 경우, 또는
 - (b) 크로스바의 도움닫기주로측에 가까운 가장자리를 두 지주의 사이 또는 그 바깥쪽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 통과하여 수직면 너머의 지면(착지장소(매트) 포함)을 크로스바를 클리어하지 않고 닿는 경우. 하지만, 선수가 도약할 때 발이 착지장소에 닿았고, 심판원이 선수가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무효시기가 되지 않는다.

[주IAAF] 본 규칙의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 지주의 바깥쪽으로 3m 떨어진 두 지점의 사이로 (일반적으로 접착테이프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너비 50mm의 흰색라인을 지면에 긋는다 흰색라인의 도움닫기주로 쪽 가장자리는 크로스바의 도움닫기주로 쪽 가장자리 수직면을 따라 긋는다.

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Runway and Take-off Area)

3. 도움닫기주로의 최소길이는 15m로 하며, 규칙 제1조 1항(a), (b), (c), (e) 및 (f)에 준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20m가 되어야 한다. 조건이 가능하다면, 최소 25m이상으로 한다.
4. 도움닫기주로의 후면 15m와 발구름 장소의 전체적인 최대 내리막 경사 ~~허용한도는~~ 두 지주의 중간을 중심으로 하는 반원형의 반경을 따라서 250분의 1(0.4%)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칙 제182조 3항에 명시된 최소 반지름을 갖는다. 착지장소는 선수의 도움닫기가 경사를 올라가는 방향이 되도록 위치해야 한다.

5. 발구름 장소는 수평면이거나 경사가 있다면 규칙 제182조 4항과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경기 기구(Apparatus)

6. 지주는 어떠한 형태라도 무방하나 견고하여야 한다. 지주에는 크로스바를 올려놓는 바걸이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지주의 높이는 크로스바를 올렸을 때 실제의 높이가 크로스바의 상단보다 적어도 10cm 이상 더 높아야 한다.

두 지주 사이의 간격은 4.00m이상, 4.04m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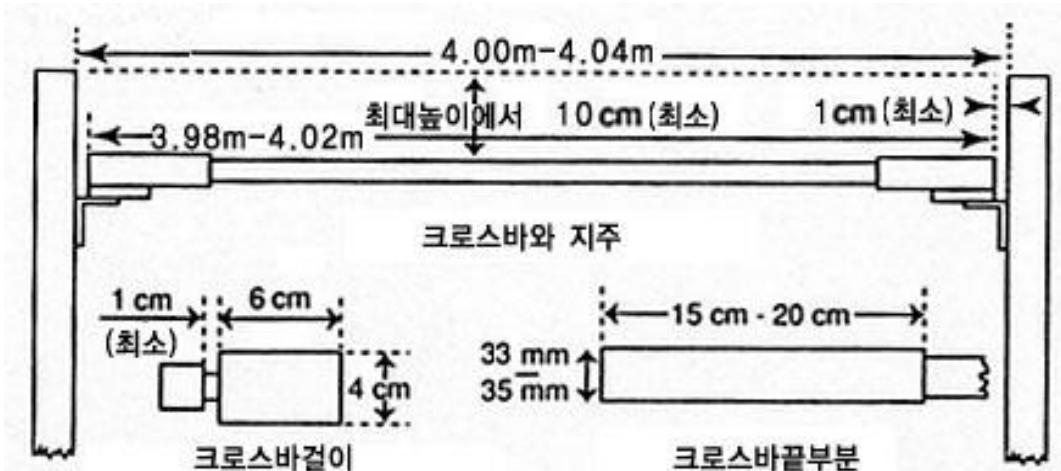
7. 경기 중에는 지주를 이동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발구름이나 착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해도 좋다. 지주를 이동할 경우에는 한 라운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8. 크로스바 걸이는 너비는 4cm, 길이는 6cm의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바걸이는 도약 중에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반대편 지주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크로스바의 양쪽 끝부분은 선수가 도약 중에 건드렸을 때 앞쪽이나 뒤쪽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걸이 위에 얹어놓아야 한다.

바걸이의 표면은 매끈해야 한다.

바걸이는 고무 또는 바걸이와 바의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기타 재질로 덮어씌워서는 안 되며, 어떤 종류의 스프링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바걸이는 크로스바의 양쪽 끝 바로 아래의 발구름 장소에서 위로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높이뛰기 지주와 크로스바

- 크로스바의 양끝과 지주 사이에는 최소한 1cm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착지장소(Landing Area)

-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의 경기대회에서, 착지장소는 크로스바의 수직면 뒤로 길이 6m x 너비 4m x 높이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대회의 경우, 착지장소는 길이 5m x 너비 3m x 높이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IAAF] 지주와 착지장소의 간격은 착지장소가 지주에 닿아서 크로스바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10cm이상 떼어놓도록 한다.

제183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

경기(Competition)

- 선수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크로스바의 가장자리가 박스의 뒷끝 바로 위에서부터 착지장소쪽으로 80cm 지점까지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지장소 방향으로만 크로스바를 이동시킬 수 있다.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자신의 1차 시기에서 희망하는 크로스바의 위치를 담당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임원은 그 선수의 크로스바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크로스바의 위치를 재변경하고자 한다면, 처음 신청한 위치에 크로스바가 설치되기 전에 담당임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로스바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시간도 그의 시기 허용시간에 포함된다.

[주-IAAF] 장대높이뛰기 박스의 뒷끝과 수평이 되고 도움닫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너비 1cm의 선을 착지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그려야 한다. (“0”선, zero line) 이와 유사한 선은 착지장소 표면에도 나타나며, 지주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도약 후, 선수의 도약 중 동작에 의하여 크로스바가 양쪽 바걸이(peggs)에 얹혀있지 않을 경우;
- (b) 크로스바를 넘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분이나 또는 장대로 박스 뒷끝을 통해 수직면 너머의 지면(착지장소포함)에 닿는 경우; 또는
- (c) 지면을 떠난 후, 아래쪽 손을 위쪽 손보다 위로 이동시키거나, 위쪽 손을 장대 위쪽으로 더 높게 이동시킨 경우;
- (d) 도약 중에 선수가 크로스바를 손으로 안정시키거나 다시 올려놓는 경우.

[주1-IAAF] 선수가 흰색라인으로 표시한 도움닫기주로의 바깥쪽 어느 지점에서 달려도 무효시기가 아니다.

[주2-IAAF] 시기 중에 장대가 박스에 올바르게 꽂아진 후에 착지장소에 닿았을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아니다.

- 3. 선수는 경기 중에 장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두 손이나 장대에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장갑의 사용은 허용된다.
- 4. 장대를 놓고 바를 넘은 후, 장대가 크로스바나 지주로부터 떨어져 넘어질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장대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장대를 만졌다면, 심판장이 누군가 장대를 만지지 않았다면, 크로스바를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는 무효시기로 기록된다.

5. 시기 중에 선수가 사용하는 장대가 부러진 경우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재시기가 주어진다.

도움닫기주로(Runway)

6. “0” 라인부터 계측된 도움닫기주로의 길이는 최소 40m로 하나, 가능하다면 45m로 한다. 너비는 $1.22 \pm 0.01\text{m}$ 이고,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7.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100분의 1(1%), 그리고 후반 40m의 도움닫기 방향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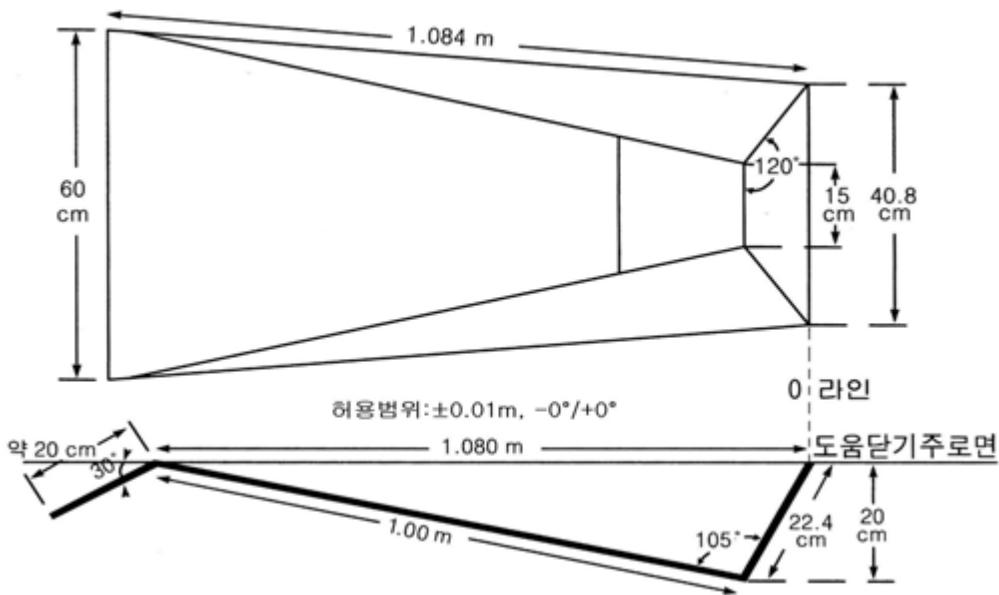
경기 기구(Apparatus)

8. 장대높이뛰기의 발구름(take-off)은 박스에서 실시된다. 장대높이뛰기 박스는 적합한 재질로 만들며, 위쪽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부드러우며, 도움닫기주로면보다 땅속으로 낮게 설치한다. 박스의 밑면 인쪽의 길이는 1m, 앞끝의 너비는 60cm, 스톱보드의 밑면의 너비가 15cm가 되도록 점차 좁아진다. 도움닫기주로와 같은 높이에서의 박스의 길이와 스톱보드의 길이는 밑바닥과 스톱보드가 이루는 각도는 105° 로 결정된다. (치수와 각도의 허용범위는 각각 $\pm 0.01\text{m}$ 이고 $-0^\circ / +1^\circ$ 이다).

박스의 밑바닥은 도움닫기주로면과 같은 높이의 앞끝으로부터 스톱보드와 맞닿는 곳까지 경사를 이루는데 스톱보드와 만나는 부분의 수직깊이는 20cm가 된다. 박스는 양측면이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스톱보드와 맞닿는 측면이 밑바닥과 약 120° 의 각도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주-IAAF] 선수는 자신의 어느 시기 중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박스주위에 패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의 설치는

선수의 시기 중에 이뤄져야하며, 해당 시기가 완료되면 선수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1항 (a), (b), (c), (e) 및 (f)의 대회에서는 이 장비를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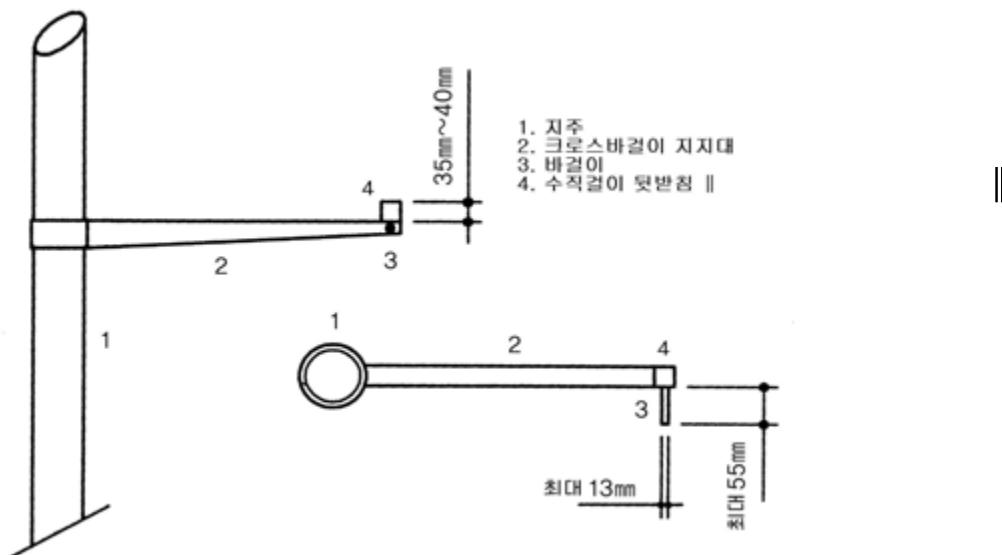
장대높이뛰기 박스(상단 및 측면에서 본 그림)

9. 지주는 어떠한 형태라도 무방하나 견고하여야 한다. 지주밑면의 금속 구조 및 착지장소 위의 지주 하단 부분은 선수와 장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로 만든 보호용 덮개를 덮어야 한다.
10. 크로스바는 선수 또는 장대가 닿았을 때 착지장소 방향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수평바걸이에 얹어놓아야 한다. 크로스바걸이는 마디나 움푹 들어간 곳이 없이, 굽기가 직경 13mm이하로 일정하여야 한다.

크로스바걸이의 길이는 매끄러운 크로스바걸이 지지대에서 55mm 이내로 연장되어야 한다. 매끈하고 크로스바가 걸이의 맨위에서 얹히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수직 걸이 뒷받침은, 걸이 위로 35~40mm 이상 연장 할 수 있다. 크로스바 걸이 사이의 거리는 4.30m~4.37m이어야 한다. 크로스바 걸이는 고무 또는 크로스바

걸이와 크로스바의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기타 물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 되며, 어떤 종류의 스프링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주-IAAF] 선수가 지주의 받침대에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주에 고정적으로 부착시켜 이어낸 연장 부분(크로스바걸이 지지대)에 크로스바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하면 크로스바의 길이를 늘이지 않고도 지주의 간격을 넓힐 수 있다 (그림참조).



크로스바걸이 지지대 – (착지장소 및 위에서 본 그림)

장대 높이뛰기 장대(Vaulting Po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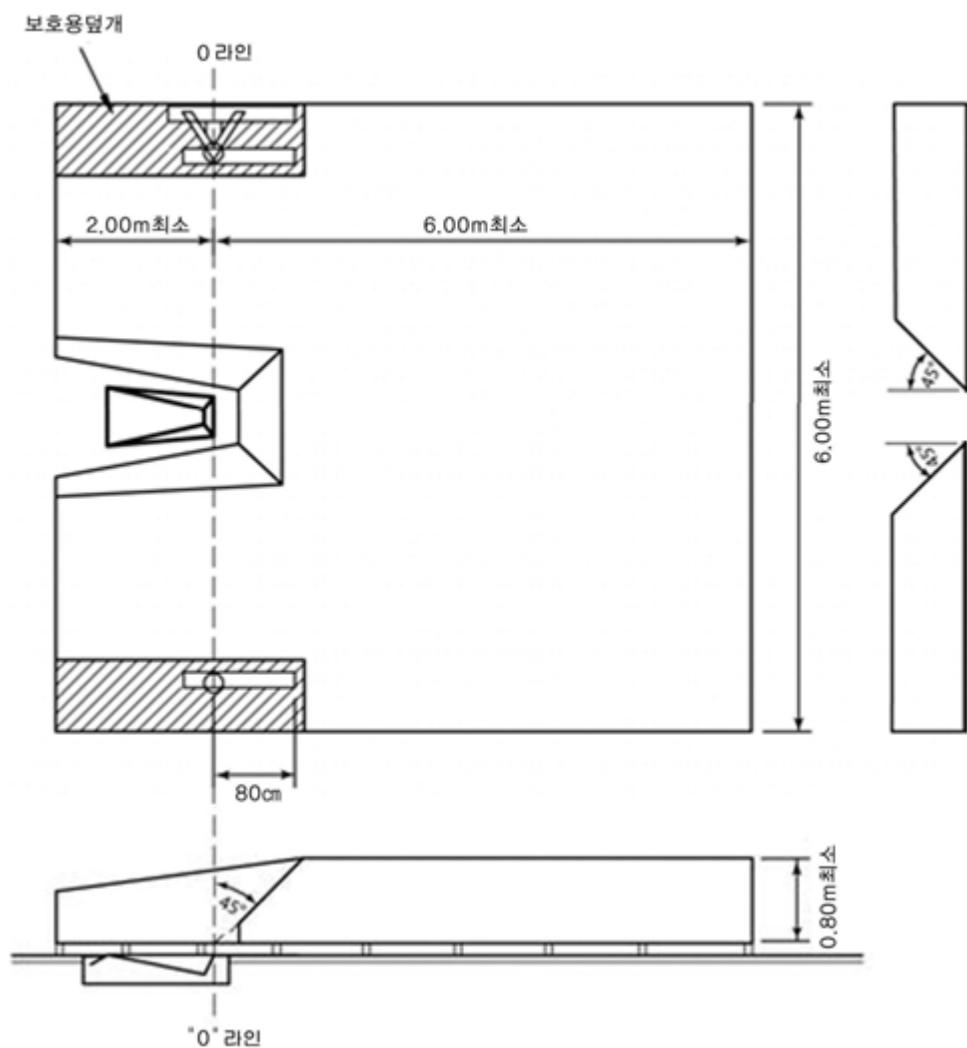
11. 선수는 자신의 개인 장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선수의 장대를 사용할 수 없다.

장대의 재질 또는 혼합재료, 길이 또는 굵기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기본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장대는 손잡이 끝에 (손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감거나, 하단 끝부분에 (장대 보호를 위해) 테이프와 그리고/또는 기타 적절한 물질로 감아도 좋다. 손잡이 끝에 감는 테이프는 부분적으로 겹쳐 감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름의 큰 변화가 (표면에 “링” 모양이 생기는 등) 없도록 균등하게 감아야 한다.

착지장소(Landing Area)

12.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에 명시된 대회에서
 착지장소는 길이 6m (앞쪽 부분을 제외하고, “0” 라인의 뒤쪽에)
 \times 너비 6m \times 높이 0.8m 이상 되어야 한다. 기타 경기대회의 경우,
 착지장소는 길이 5m (앞쪽 부분 제외) \times 너비 5m 이상이어야 한다.
 앞쪽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길이 2m이어야 한다.
 박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착지장소의 측면은 박스에서 10cm ~15cm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약 45°의 각도로 박스로부터 경사지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그림참조).



장대높이뛰기 착지장소(상단 및 측면에서 본 그림)

B.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

제184조 총칙(General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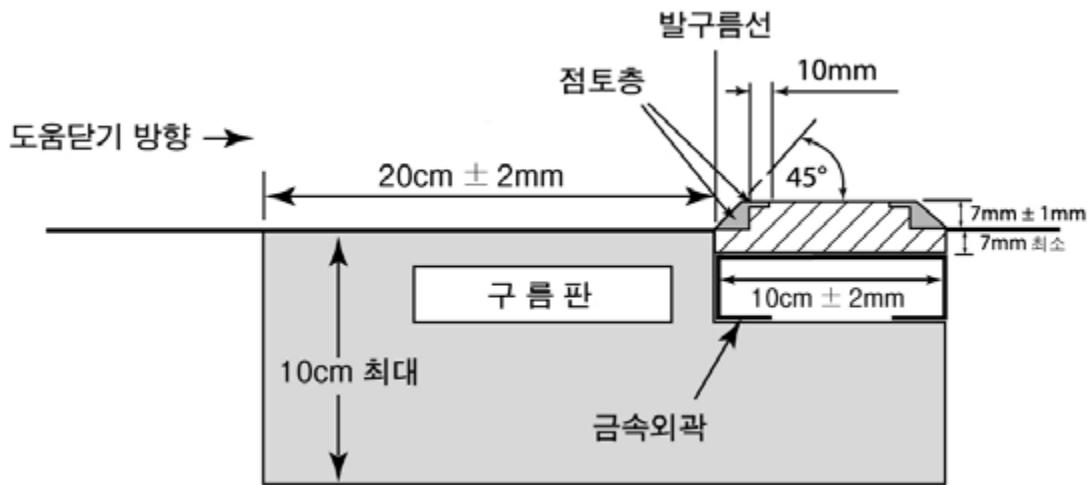
도움닫기주로(Runway)

- 도움닫기주로의 최소 길이는 해당 발구름선에서 도움닫기주로 끝까지 계측하여 40m 이상이며, 조건이 가능하다면 45m 이상으로 한다. 너비는 1.22m ($\pm 0.01m$)이고,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도움닫기주로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도움닫기 주로의 최후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발구름판(Take-off Board)

- 발구름은 도움닫기주로 및 착지장소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매설된 발구름판으로 표시된다. 착지장소와 제일 가까운 발구름판의 가장자리선을 발구름선이라 한다. 심판원의 판정을 돋기 위해 발구름선을 바로 지나 점토표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발구름판은 선수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찍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재 또는 기타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길이는 1.22m($\pm 0.01m$), 너비는 20cm($\pm 2mm$), 두께(깊이)는 1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구름판은 흰색으로 칠한다.
- 점토표시판은 너비 10cm($\pm 2mm$), 길이 1.22m($\pm 0.01m$)의 목재나 기타 재질로 만든 견고한 판으로 만들고 구름판과 대조적인 색으로 칠한다. 가능하다면 점토표시판은 대비되는 제3의 색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점토표시판은 발구름판의 착지장소와 가까운 방면으로 도움닫기주로 상 오목한 곳이나 단(檀)에 설치한다. 표면은 높이 7mm($\pm 1mm$)로 발구름판 수평면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 점토판 가장자리는 45° 로 경사가 져야하고, 도움닫기주로 방향의 가장자리 부분에 두께 1mm의 점토층으로 길이에 따라 덮어씌우거나 점토로 채울 시 45° 의 경사가 지도록 가장자리를 깎아서 만들어야 한다(그림 참조).



발구름판과 점토판

점토판의 상단부분의 대략 첫 10mm 부분과 전체 길이를 점토로 덮어씌운다.

오목한 곳에 점토를 덮은 이 구조의 전체는 선수의 각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점토층 아래에 있는 표면은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잘 찍히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점토층은 선수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롤러나 적당한 형태의 땅고르게(스크레이퍼)로 편편하게 고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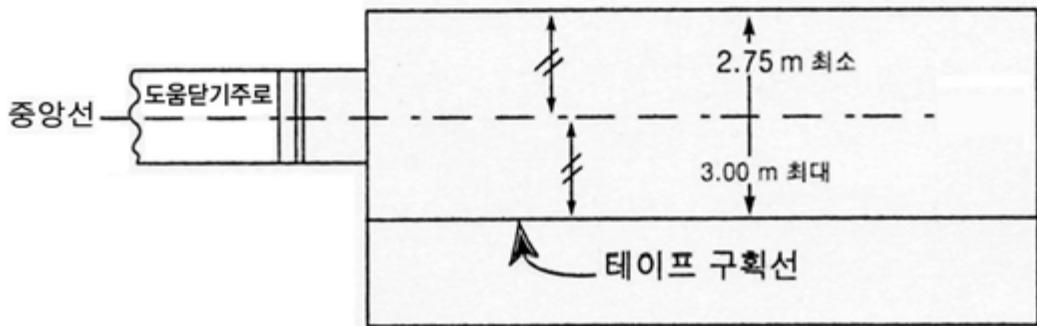
[주-IAAF] 발자국을 지우는 동안 경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분의 교체용 점토판을 갖추어 두면 편리하다.

착지장소(Landing Area)

6. 착지장소의 너비는 최소 2.75m에서 최대 3m이내이어야 한다. 착지장소는 가능한 한 도움닫기주로 중앙선이 연장되었을 때

착지장소의 중앙선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도움닫기주로의 중앙선이 착지장소 중앙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착지장소에 1개의 테이프 또는 필요하다면 2개를 쳐서 상기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참조).



도움닫기주로 중앙선과 일치하도록 구획한 멀리뛰기/세단뛰기의 착지장소

7. 착지장소는 부드럽고 습기 있는 모래로 채워야 하며, 표면은 발구름판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

거리계측(Distance Measurement)

8. 각 도약의 계측은 각 유효시기 직후에 행한다(또는 규칙 제146조 5항에 따라 구두항의가 즉시 제기된 후). 모든 도약의 계측은 선수 신체의 어느 부분 또는 신체에 부착되어있는 어떤 물체가 착지장소에 닿아서 만든 착지 흔적의 발구름판과 제일 가까운 가장자리 지점부터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까지를 계측한다.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계측한다.
9. 모든 수평도약경기에서 계측거리가 완전한 센티미터 단위로 계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측거리보다 낮은 쪽으로 가장 가까운 0.01m(1cm) 단위로 기록하여야 한다.

풍속측정(Wind Measurement)

10. 풍속은 발구름선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거리(멀리뛰기 : 40m, 세단뛰기 : 35m)의 도움닫기주로 옆에 설치된 마크를 선수가 통과한 순간부터 5초 동안 측정한다. 만약 선수가 40m 또는 35m보다 짧은 거리의 도움닫기를 할 경우에는 도움닫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풍속을 측정한다.
11. 풍속측정계는 발구름선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높이는 1.22m로 하며, 도움닫기주로에서 2m 이내로 떨어져 설치한다.
12. 풍속측정계는 규칙 제163조 8항 및 9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규칙 제163조 11항 및 12항의 작동 방법을 따르며, 규칙 제163조 13항의 판독법을 따른다.

제185조

멀리뛰기(Long Jump)

경기(Competition)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선수가 발구름을 할 때 도약하지 않고 달려나가거나, 도약 동작 중에 신체 일부분이 발구름선 너머의 지면에 닿은 경우; 또는
 - (b) 발구름선의 연장선 전후에서 발구름판의 측면 바깥에서 발구름 할 경우, 또는
 - (c) 도움닫기 중 또는 도약 중에 공중제비 유형의 동작을 행한 경우, 또는
 - (d) 선수가 발구름 이후 그리고 착지장소와의 첫 접촉 전에, 도움닫기주로 또는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또는
 - (e) 착지과정에서 선수가 모래장에 남긴 가장 가까운 착지 흔적보다 발구름선과 가까운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닿을 경우; 또는

- (f) 규칙 제185조 2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착지장소를 퇴장할 때.
2. 착지장소를 퇴장할 때, 선수의 발이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접촉하는 지점은 모래장의 착지 혼적(이는 착지장소내에서 균형을 잃어서 남겨진 또는 최초 착지 혼적보다 발구름선에 가깝게 걸어서 돌아갈 때 남긴 어떠한 혼적일 수 있다.)보다 발구름선에서 더 멀어야한다. ||
- [주-IAAF] 이러한 최초의 접촉은 착지장소를 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수는 무효시기가 되지 않는다.
- 선수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한 흰색라인 바깥으로 어느 지점에서든지 달릴 경우; 또는
 - 규칙 제185조 1항(b)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선수가 발구름판에 도달하기 전에 발구름을 할 때; 또는
 - 규칙 제185조 1항(b)에 따라 선수 경기화/발의 일부분이 발구름선에 도달하기 전에 발구름판 측면 바깥쪽의 지면을 닿을 때; 또는
 - 착지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신체 부분 또는 그 순간 신체에 부착되어있는 어떠한 물체가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쪽 지면에 닿았을 때(이러한 접촉이 규칙 제185조 1항 (d)나 (e)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 규칙 제185조 2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착지장소를 떠난 이후에도 다시 착지장소를 걸어서 통과할 때.

발구름선(Take-off Line)

-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쪽 끝 지점까지의 거리는 최소 10m이어야 한다.
- 발구름선은 착지장소의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1m~3m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86조 세단뛰기(Triple Jump)

규칙 제184조 및 제185조는 다음과 같은 추가조항과 함께 세단뛰기에도 적용한다 :

경기(Competition)

1. 세단뛰기는 흡(hop), 스텝(step), 점프(jump)의 순으로 실시한다.
2. 흡은 선수가 발구름한 발과 동일한 발로 착지를 하여야 하고, 스텝은 반대 발로 착지하고, 이어서 점프를 행한다.
선수가 도약 중에 발구름하지 않는 다리(sleeping leg)가 지면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IAAF] 규칙 제185조 1항(d)는 흡과 스텝 단계로부터의 정상적인 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구름선(Take-off Line)

3. 남자의 경우,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쪽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 한다.
4.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발구름선이 착지장소의 가까운 가장 자리로부터 여자는 11m, 남자는 13m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경기대회의 경우, 이 거리는 경기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다.
5. 발구름판과 착지장소 사이에는 스텝과 점프 단계에서 안정되고 균일한 발구름을 할 수 있도록 너비 1.22m($\pm 0.01m$)의 발구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트랙에서는 발구름 장소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C. 투척경기(Throwing Events)

제187조 총칙(General Conditions)

공식 용구(Official Implements)

-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IAAF 또는 KAAF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AAF 또는 KAAF 공인증을 소지한 용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의 공식 용구는 본 연맹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표는 각 연령그룹별로 사용되는 용구의 규격을 나타낸다.

용 구	여 자				남 자				
	여 초	여 중	청소년	여고 주니어/일반	남 초	남 중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 반
포 환	3.000kg	3.000kg	3.000kg	4.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원 반	-	1.000kg	1.000kg	1.000kg	-	1.000kg	1.500kg	1.750kg	2.000kg
헤 머	-	-	3.000kg	4.000kg	-	-	5.000kg	6.000kg	7.260kg
창	-	600g	500g	600g	-	600g	700g	800g	800g

- [주]IAAF] 현 표준 용구 공인/갱신신청서 및 공인제도절차 양식은 IAAF 사무국 또는 IAAF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위원회는 모든 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구가 경기대회 전에 조직위원회에 의해 검사 및 승인되고 IAAF 공인 용구이며 모든 선수에게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기술대표는 각 경기대회의 해당 경기규정에 따라 선수 개인의 용구 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구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용구 리스트에 이미 같은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용구를 사용할 수 없다.

[비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주최자가 모든 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용구의 사용은 공식계측원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선수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3. 경기 중에는 용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조력(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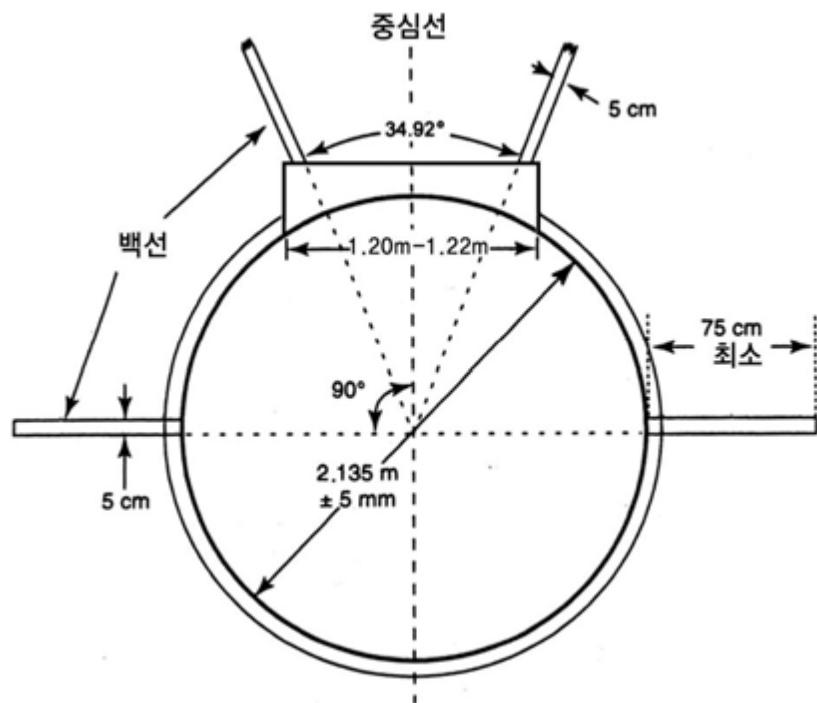
- || 4. 다음은 조력으로 간주되며, 허용되지 않는다.
- (a) 2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프로 감는 것. 손이나 손가락에 테이핑 할 때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핑하지 않아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된다. 경기 시작 전에, 테이핑 한 것을 심판원주임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b) 시기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력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치 즉, 몸에 부착하는 추를 포함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c) (해머던지기를 제외한) 장갑 사용. 해머던지기의 경우, 장갑은 손등과 손바닥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엄지 손가락외에는 장갑의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어서 개방되어야 한다.
 - (d) 선수가 서클 안이나 경기화에 어떠한 물질도 뿌리거나 바르는 것 그리고 서클 표면을 거칠게 해서는 안 된다.
- || 5. 다음은 조력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허용된다.
- (a) 손잡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손에만 또는 (해머던지기의 경우) 장갑에 적당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포환던지기 선수는 목에 이와 같은 적절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b) 포환던지기와 원반던지기 선수들은 분필이나 이와 비슷한 물질을 그들의 용구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된 모든 물질은 젖은 형겁을 사용해 쉽게 지울 수 있고 어떠한 잔여물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 (c) 규칙 제187조 4항(a)에 위반되지 않는 손과 손가락의 테이핑 사용은 허용된다.

투척서클(Throwing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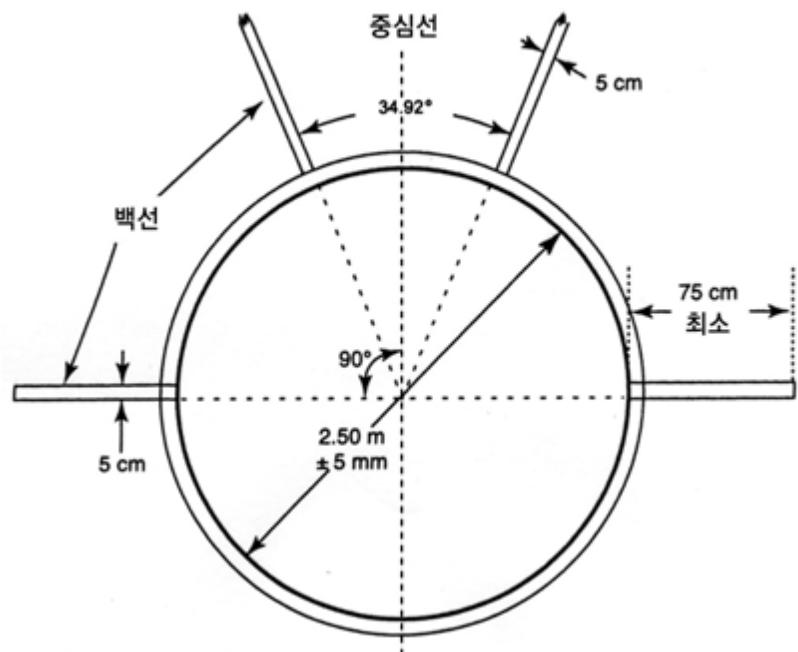
6. 서클의 테는 대상(帶狀)의 철이나 강철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은 바깥지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 서클주위의 지반은 콘크리트, 합성 물질, 아스팔트, 목재 또는 기타 적당한 재질로 만든다.

서클내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견고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든다. 이 내부의 표면은 수평을 이루고 서클 테의 상단보다 $2\text{cm} \pm 6\text{mm}$ 낮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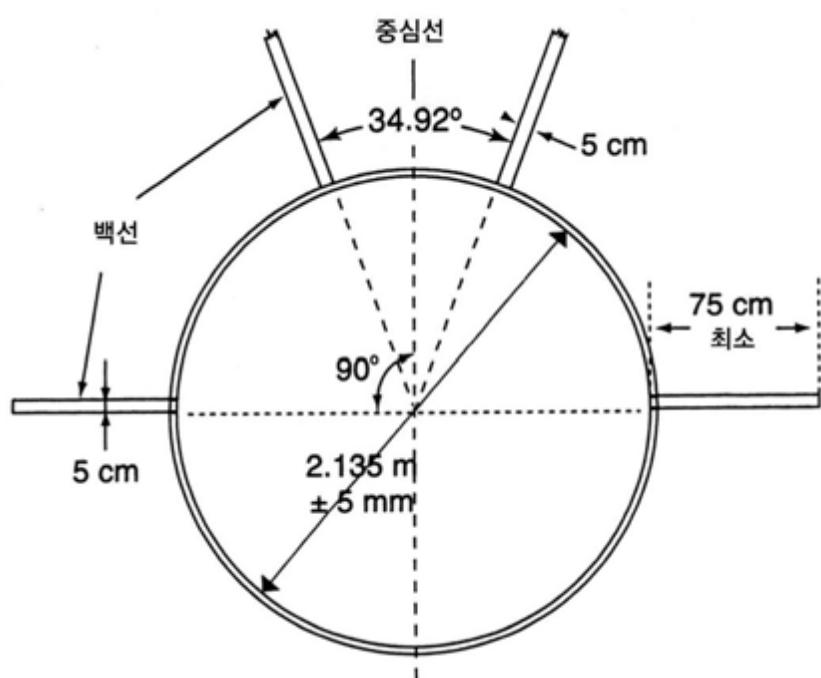
포환던지기에서는 이와 같은 규격에 맞는 이동식 서클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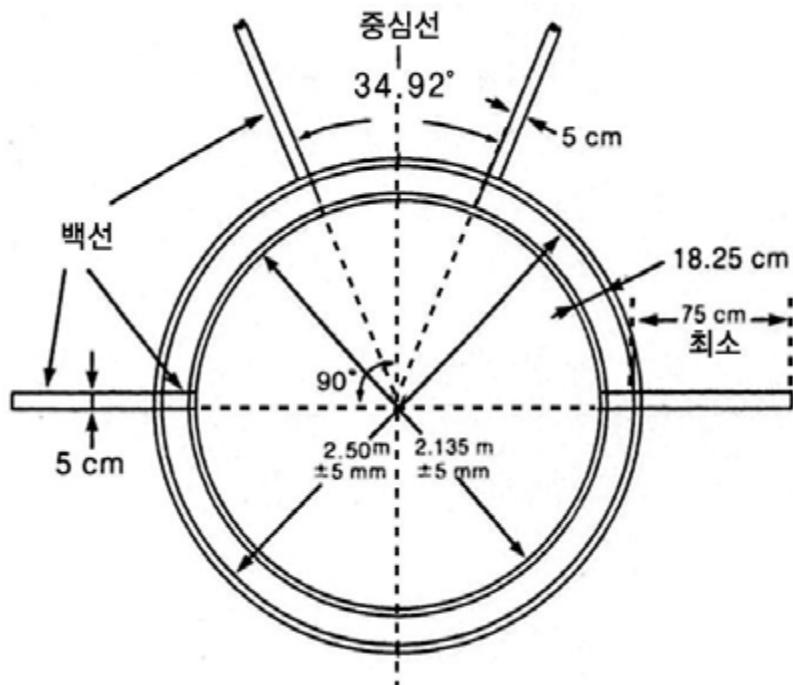
포환던지기서클 설계도



원반던지기서클 설계도



해머던지기서클 설계도



원반과 해머던지기서클의 동심원(同心圓) 서클 설계도

7. 서클의 내측 지름은 포환던지기와 해머던지기는 $2.135m \pm 5mm$, 원반던지기는 $2.50m \pm 5mm$ 이다.

서클 테의 두께는 최소 6mm이며 백색 페인트를 칠한다.

원반던지기 서클 안에 원형고리를 설치하여 서클의 지름을 2.50m에서 2.135m로 축소시키면 원반던지기 서클에서 해머를 던져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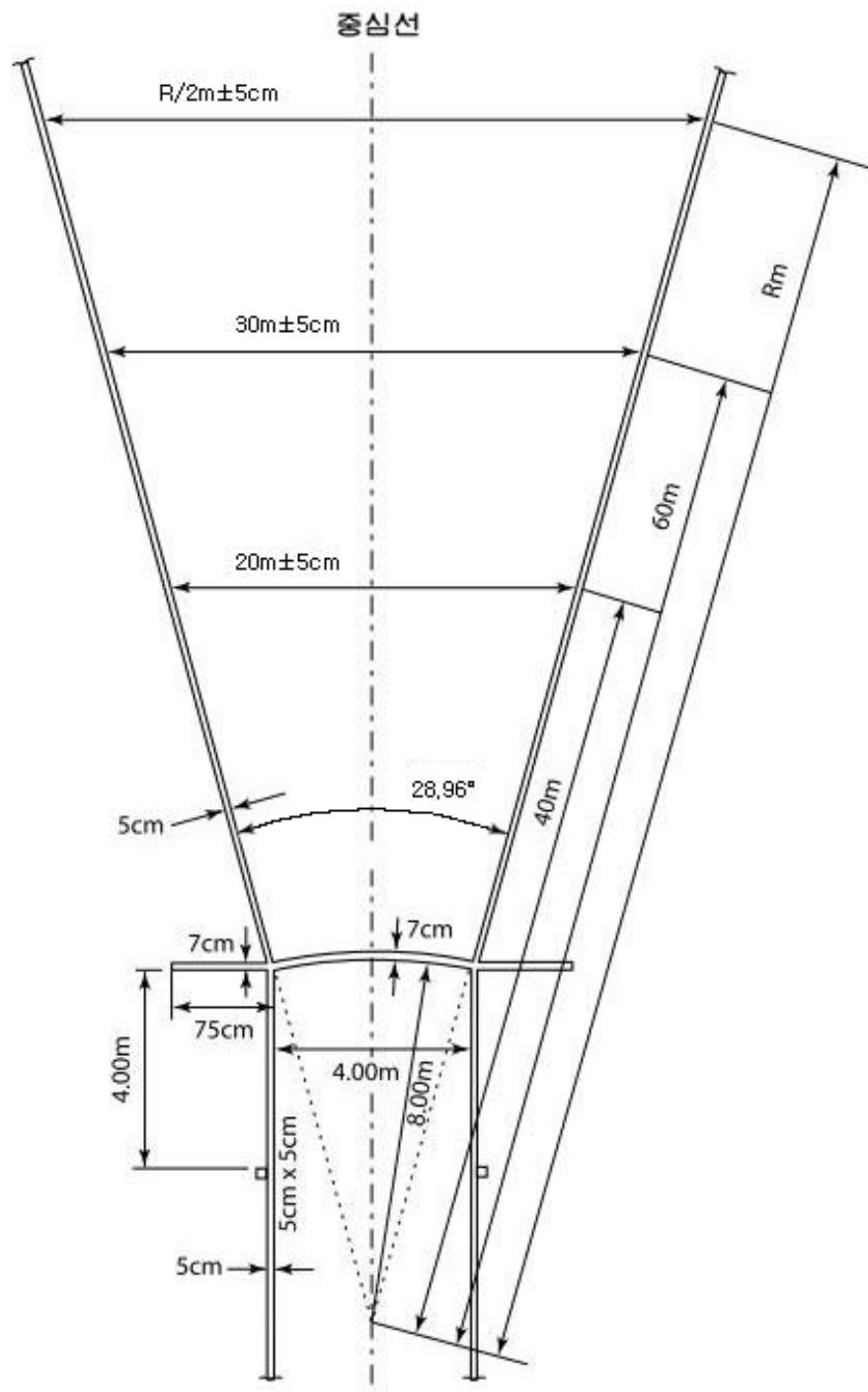
[주-IAAF] 서클 원형고리는 백색 이외의 색으로 채색하여, 규칙 제187조 8항에서 요구하는 흰색라인이 분명히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8. 서클 테 상단부분부터 서클 양쪽 측면으로 최소 길이 75cm,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연장해서 그린다. 이 흰색라인은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든다. 이 흰색라인의 뒤쪽 가장자리는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며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론적인 선의 연장이다.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Javelin Throw Runway)

9. 최소길이가 33.50m인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의 대회들을 제외하고, 도움닫기주로의 최소길이는 30m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길이는 36.50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는 4m 간격을 두고 평행을 이루는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투척은 반지름 8m 서클의 원호(圓弧) 뒤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호는 너비 7cm의 선으로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다. 원호는 백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선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는 원호의 양쪽 끝에서부터 그려진다. 이 선은 백색이어야 하며, 길이 75cm와 너비 7c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측면경사도는 100분의 1(1%), 그리고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와 낙하구역

낙하구역(Landing Sector)

10. 낙하구역은 투척용구의 흔적이 남도록 신더(석탄재) 또는 잔디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11. 낙하구역의 최대 내리막 경사도는 투척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 (a) 창던지기를 제외하고 낙하구역은 두 개의 선의 안쪽 가장자리가 연장된다면 서클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34.92° 의 각도로 5cm 너비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주]IAAF] 34.92° 의 낙하구역은 낙하구역 경계선(sector lines)이 서클 중심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계선 간 간격이 $12m \pm 0.05m (20 \times 0.60m)$ 가 되도록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서클 중심으로부터 매 1m마다 경계선 사이의 간격이 60cm씩 증가하게 된다.

- (b) 창던지기의 낙하구역은 너비 5cm의 2개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하고, 이 흰색라인의 안쪽 가장자리를 연장하면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와 2개의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과 교차하는 2개의 교차점을 통하여 서클의 중심에서 교차되도록 한다(그림참조). 낙하구역의 각도는 약 28.96° 이다.

시기(Trials)

13. 포환, 원반, 해머던지기는 용구를 서클 안에서 투척되며, 창던지기는 용구를 도움닫기주로에서 투척된다. 서클에서 행하는 시기의 경우, 선수는 서클 안에서 정지 자세로 시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선수가 서클 테의 안쪽 면에 닿는 것은 허용된다. 포환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규칙 제188조 2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스톱보드의 안쪽 면에 닿는 것은 허용된다.
14. 시기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규칙 제188조 1항 및 제193조 1항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포환이나 창을 투척한 경우,
 - (b) 선수가 서클 안으로 들어와 투척동작을 시작한 후, 선수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서클 테의 상단(또는 상단 안쪽 가장자리) 또는 서클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 (c) 포환던지기의 경우, 선수의 신체 어느 부분이 스텁보드의 안쪽 면(상단 부분으로 간주되는 상단 가장자리는 제외) 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닿은 경우,
- (d)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의 신체 어느 부분이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한 선이나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주-IAAF] 다른 규칙이 위반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원반 또는 해머의 부분이 투척 후 그물장을 쳤다면, 이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15. 각 투척경기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기 중에 선수는 시작한 시기를 중단하고 용구를 서클 또는 도움닫기주로의 안이나 바깥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서클이나 도움닫기주로로 돌아와서 새 시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는 서클 또는 도움닫기주로를 규칙 제187조 17항을 준수하여 퇴장해야 한다.

[주-IAAF] 본 항에서 허용한 모든 동작들은 규칙 제180조 18항에 명시된 시기 최대 허용 시간에 포함된다.

16. 포환, 원반, 해머두부 또는 창두부가 지면에 처음 닿을 때에 낙하구역 경계선 또는 낙하구역 경계선 바깥에 지면 혹은 물체(규칙 제187조 14항 주 - IAAF에 제시된 조항에 나온 그물장을 제외한 물체)를 접촉하면 무효시기가 된다. ||

17. 용구가 지면에 낙하하기 전에 선수가 서클 또는 도움닫기주로 밖으로 나가거나 다음의 경우일 때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서클에서 실시하는 투척은, 선수가 서클을 퇴장할 때에 서클 테의 상단이나 서클 바깥 지면에 최초로 닿는 장소가 서클의 중심을 이론적으로 통과하여 서클 양쪽 측면 바깥으로 그어진 흰색라인보다 완전히 뒤쪽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 ||

[주-IAAF] 서클 테의 상단이나 서클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닿는 것은 서클을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 (b)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도움닫기주로를 퇴장할 때에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이나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닿는 장소가 원호의 흰색라인 또는 평행선에 직각으로 원호의 양쪽 끝에 그은 흰색라인보다 완전히 뒤쪽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 창이 지면에 낙하한 후, 선수가 투척 원호의 양쪽 끝으로부터 4m 도움닫기 후방에 주로를 가로질러 그어진 선(페인트로 표시하거나, 또는, 주로 옆의 마커로 표시한 가상의 선일 수도 있음)에 닿거나 선 뒤로 가는 순간, 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가 창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이 선보다 뒤쪽 그리고 주로 안에 있다면, 도움닫기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18. 투척 후, 용구는 서클이나 도움닫기주로 옆의 용구 거치대 구역까지 들고 운반하여야 하며, 절대로 던져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

계측(Measurements)

19. 모든 투척경기에서의 계측거리가 완전한 cm가 아닐 경우에는 계측된 거리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0.01m(1cm) 단위로 기록한다.
20. 각 투척의 계측은 각 유효시기 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또는 규칙 제146조 5항에 의거한 구두항의가 즉각 제기된 후).
- (a) 포환, 원반 또는 해머두부가 가장 가까운 낙하 흔적에서 서클 중심에 이르는 선을 따라 서클 원주의 안쪽까지 계측한다.
- (b) 창던지기의 계측은 창의 두부가 지면에 최초로 낙하한 흔적에서 원호의 일부인 서클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제188조 포환던지기(Shot Put)

경기(Competition)

1. 포환은 어깨에서부터 한 손으로만 던져져야 한다. 선수가 서클

안에서 투척을 시작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는 포환이 목 또는 턱에 닿거나 가까이 근접하여야 하고, 투척동작 중에는 손이 이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포환을 어깨선의 후방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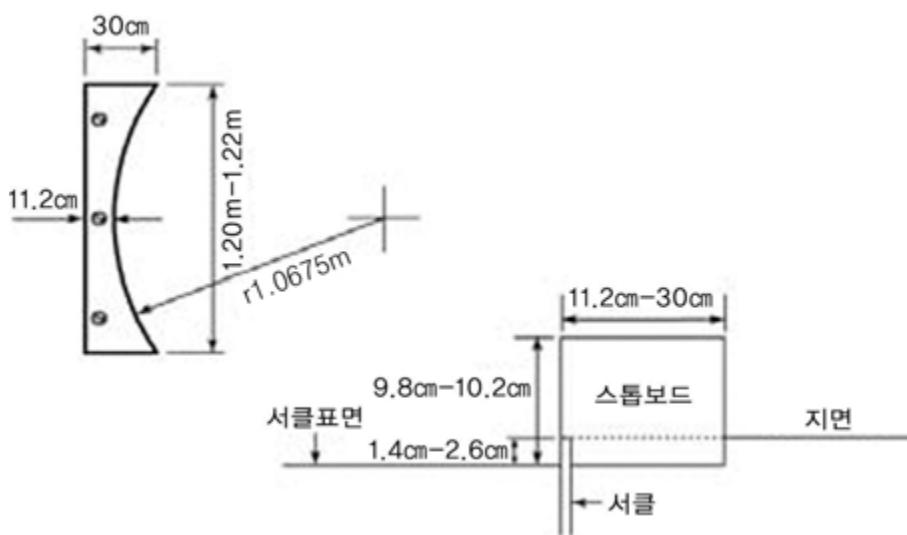
[주-IAAF] 옆으로 전방도립회전 식으로 던지는 기술(cartwheeling techniques)은 허용하지 않는다.

스톱보드(Stop Board)

2. 스톱보드는 백색으로 칠해진 원호모양으로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서 안쪽 표면이 서클 테의 안쪽 가장자리와 합치되고 서클 표면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스톱보드는 스톱보드의 중심점이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일치되도록 설치하며(규칙 제187조 6항 그림 포환서클 참조), 지면이나 서클을 둘러싸는 콘크리트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주-IAAF] 1983~1984년 IAAF 시방서(示方書)에 의거한 스톱보드는 인정한다.

3. 스톱보드의 너비는 11.2cm~30cm이고,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弧arc)의 현(弦chord)은 길이가 $1.21m \pm 0.01m$ 이며, 높이는 서클 안의 수평면과 비교하여 $10cm \pm 0.2cm$ 가 높다.



포환던지기 스톱보드(상단 및 측면에서 본 모습)

포환(Shot)

4. 포환은 견고한 철(鐵), 황동(黃銅), 황동보다 더 부드럽지 않은 금속구(金屬球), 또는 속에 납이나 기타 재질을 채운 상기와 같은 금속외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포환은 구형(球形)이고 표면은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면높이는 $1.6\mu\text{m}$ ($1.6/1000\text{mm}$)미만이어야 한다. 즉, 미가공도 번호가 N7이하가 되어야 한다.
5.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포 환	여 자			남 자				
	여초/여중	청소년	여고 주니어/일반	남 초	남 중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 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중량	3.000kg	3.000kg	4.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3.005kg	3.005kg	4.005kg	3.005kg	4.005kg	5.005kg	6.005kg	7.265kg
	3.025kg	3.025kg	4.025kg	3.025kg	4.025kg	5.025kg	6.025kg	7.285kg
직 경	최소	85mm	85mm	95mm	85mm	95mm	100mm	105mm
	최대	110mm	110mm	110mm	110mm	110mm	120mm	125mm
								1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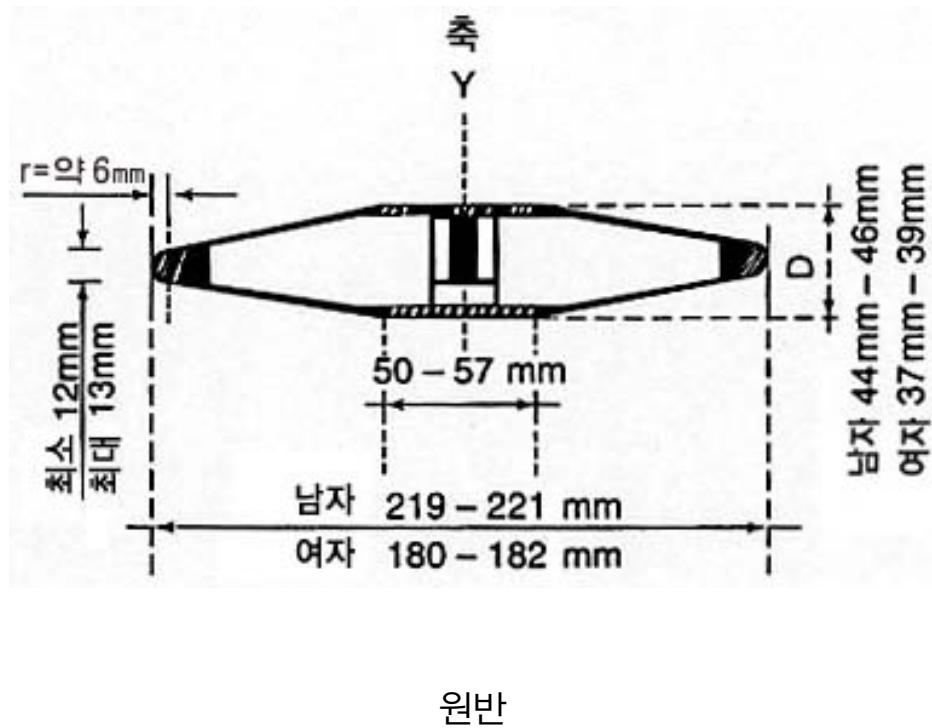
제189조 원반던지기(Discus Throw)

원 반(Discus)

1. 원반의 본체는 속이 차거나 비어도 되며,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고, 테는 금속제로 하고, 가장자리는 둥글어야 한다. 테 가장자리의 횡단면은 반경 약 6mm의 완벽한 원호가 되어야 한다. 원반의 상하 양쪽 중심부에는 편평하고 둥근 금속판(金屬板)을 붙일 수도 있다. 원반 중심부분이 평면이고 원반의 치수나 전체무게가 규격에 일치하다면 금속판이 없는 원반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원반의 양면은 동일하여야하고 오목볼록하거나 (요철) 돌기 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테의 커브가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원반의 중심에서 반경 25mm ~ 28.5mm의 원주(圓周)에 이르는 원반의 양면은 직선으로 경사를 만든다.

원반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져야 한다. 원반의 테의 커브에서 시작해서 원반의 두께는 최대 두께 D까지 일정하게 증가한다. 최대로 두꺼운 부분은 원반의 Y축으로부터 25mm~28.5mm거리의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Y축까지의 원반 두께는 일정하다. 원반의 상·하면은 동일하여야 하며, 원반은 Y축 회전에 관해서도 대칭을 이루어어야 한다. 원반은 테의 표면을 포함해서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매끈하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원반

2. 원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원 반	여 자	남 자			
	여중/청소년/여고 주니어/일반	남 중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 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1.000kg	1.000kg	1.500kg	1.750kg	2.000k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1.005kg	1.005kg	1.505kg	1.755kg	2.005kg
	1.025kg	1.025kg	1.525kg	1.775kg	2.025kg
금속테 외측지름	최소	180mm	180mm	200mm	210mm
	최대	182mm	182mm	202mm	212mm
금속판의 지름	50~57mm	50~57mm	50~57mm	50~57mm	50~57mm
금속판의 두께	37~39mm	37~39mm	38~40mm	41~43mm	44~46mm
테의두께(6mm지점)	12~13mm	12~13mm	12~13mm	12~13mm	12~13mm

제190조
원반던지기 그물장(Discus Cage)

1. 모든 원반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명시한 그물장은 경기장 외에서의 경기에서 관중이 있거나 타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실행될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규칙에서 제시한 규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본 연맹 또는 IAAF 사무국에 요청하면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주-IAAF] 규칙 제192조에 규정된 해머던지기용 그물장을 안쪽 지름이 2.135/ 2.50m인 동심원 서클을 설치하거나, 해머 서클 앞에 원반던지기 서클을 별도로 만들고 해머용 그물장 문구를 연장하여 원반던지기용 그물장으로 사용해도 된다.

2. 그물장은 25m/초의 속도로 움직이는 2kg의 원반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원반이 그물장에 맞고 튕겨 나와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가는 위험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은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3. 그물장은 그림의 평면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U자형을 갖춰야 한다. 문구(門口)의 너비는 6m이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m 너비 문구의 끝부분은 그물장의 안쪽 가장자리이다. 가장 낮은 부분의 그물을 또는 매단 그물망의 높이는 최소 4m이어야 한다.

원반이 그물장의 이음부분이나 그물망, 그물을, 또는 매단 그물망의 밑으로도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1-IIAAF] 서클 뒷쪽의 그물을/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그물장이 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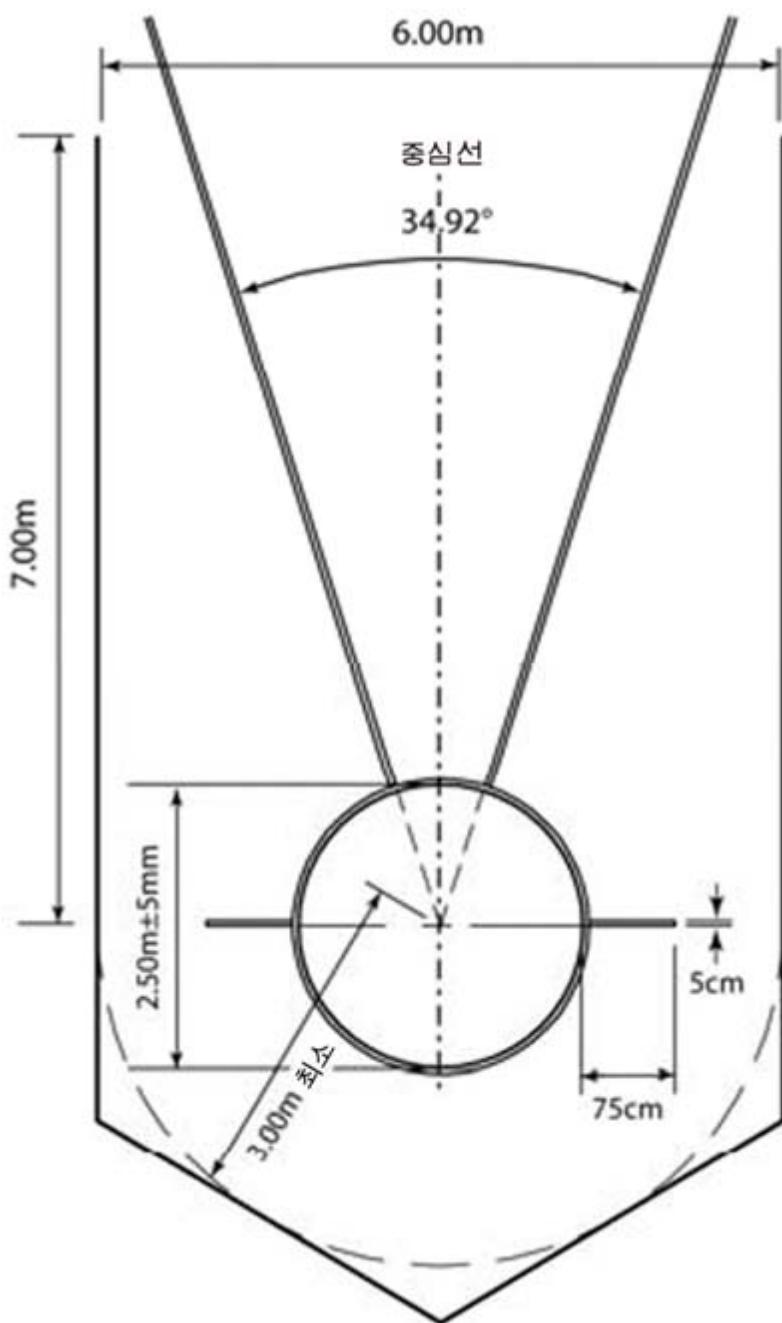
[주2-IIAAF] 종래의 그물장 설계와 비교하여 동일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만든 개선된 설계는 IAAF와 KAAF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주3-IIAAF] 원반던지기 경기가 진행되는 중 인접 트랙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트랙 쪽 그물장 측면을 연장하거나 그리고/또는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4. 그물장의 그물망은 적합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줄 또는 대안으로 부드럽거나 장력도(張力度)가 높은 강철제 철사로 만들도록 한다. 그물망 눈의 최대크기는 철사의 경우 50mm, 섬유줄인 경우 44mm이어야 한다.

[주-IIAAF] 그물망의 규격과 안전점검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있다.

5. 이 그물장에서 실행되는 원반던지기의 최대 위험 낙하구역 각도는, 동일 경기대회에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사용할 경우, 약 69°이다. 따라서, 경기장 내의 그물장 설치 위치와 배열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다.



원반던지기 전용 그물망의 설계도

제191조 해머던지기(Hammer Th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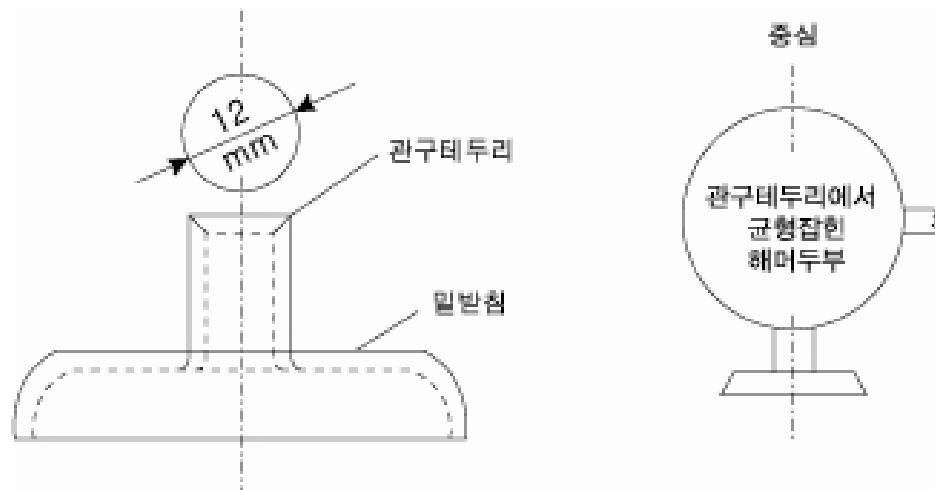
경기(Competition)

1. 예비스윙이나 회전하기 전에 투척동작 시작 위치에 있는 선수는 해머의 두부(頭部)를 서클 안 또는 바깥 지면에 놓아도 된다.
2. 해머 두부가 서클의 안이나 바깥지면 또는 서클 테 상단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선수는 멈췄다가 다시 던질 수 있다.
3. 해머가 투척 중 혹은 공중에서 파손된다면, 시기가 본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 무효시기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선수가 몸의 중심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느 부분을 위반하더라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고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부여한다.

해머(Hammer)

4. 해머는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금속제 두부, 접속선(wire) 및 핸들).
5. 두부는 견고한 철(鐵) 또는 황동(黃銅)보다 부드럽지 않은 다른 금속구(金屬球) 또는 속에 납이나 견고한 기타 물질을 채운 상기와 같은 금속외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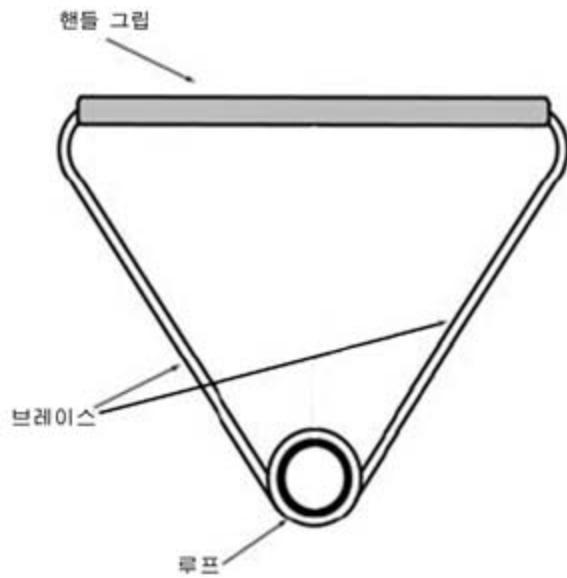
두부의 무게중심은 구체의 중심에서 6mm이하이어야 한다. 즉, 지름이 12mm인 둥근 관구(管口)의 뾰족한 수평모서리에 두부(핸들과 접속선은 부분만)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두부 속에 내용물을 채운다면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고 무게중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해머두부 무게중심 검사기구

6. 접속선은 지름이 3mm 이상이며, 아은 곳이나 매듭이 없고 탄력성이 있는 강철줄이어야 하고, 투척 중에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접속선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을 고리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접속선은 보통의 베어링 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인 회전고리를 이용하여 두부에 연결시킨다.
7. 핸들은 단단하고 어떤 종류의 경첩으로도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3.8kN(380kgf)의 신장 부하 시, 핸들의 전체 변형범위는 3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핸들을 접속선에 연결시킬 때 접속선의 고리 안에서 회전하여 해머의 전체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핸들은 루프형태로 접속선에 연결시킨다. 회전고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핸들은 대칭적 구조로서 곡선 또는 직선 손잡이(grip) 및/또는 베텀대(브레이스)가 있을 수 있다. 핸들의 최소 파괴력은 8kN(800kgf)가 되어야 한다.

[주-IAAF] 규격에 일치하는 다른 유형도 허용된다.



일반적인 해머 핸들

8. 해머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해 머	여 자		남 자		
	청소년	여고 주니어/일반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 반
경기허가 및 기록 공인 최소무게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3.005kg	4.005kg	5.005kg	6.005kg	7.265kg
	3.025kg	4.025kg	5.025kg	6.025kg	7.285kg
핸들의 내측에서 해머 전체길이	최대	1195mm	1195mm	1200mm	1215mm
		(허용오차 없이 최대 길이에 적용한다)			
두부의 지름	85mm~100mm	95~110mm	100~120mm	105~125mm	110~130mm

[주-IAAF] 용구의 무게는 해머 두부, 접속선 및 손잡이 전체를 포함한다. |||

제192조 해머던지기 그물장(Hammer Cage)

1. 모든 해머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명기한 그물장은 경기장 외에서의 경기에서 관중이 있거나 타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실행될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규칙에서 제시한 규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본 연맹 또는 IAAF 사무국에 요청하면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 그물장은 초속 32m의 속도로 움직이는 7.260kg의 해머 두부를 막아 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물장은 해머가 그물장에 맞고 튕겨나와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가는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 규칙의 모든 요건에 합치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3. 그물장은 그림에서 보이는 평면도와 같이 U자형을 갖추어야 한다. 문구(門口)의 너비는 6m가 되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너비 6m의 문구의 끝부분은 선회축 그물망의 안쪽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한다. 가장 낮은 그물을 또는 매단 그물망의 높이는 그물장 뒷쪽의 그물을 또는 매단 그물망은 최소 7m이고, 선회축그물을에 연접한 마지막 2.80m의 그물을은 최소 10m이상이어야 한다.
해머가 그물장의 이음부분이나 안전망 또는 그물망을 뚫거나, 그물을 또는 매단 그물망의 밑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IAAF] 그물망이 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5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서클 뒷쪽의 그물을/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로 문제는 안 된다.
4. 너비 2m의 이동식 그물을 2개가 그물장 전방에 준비되고, 매번 1개만을 작동시킨다. 이동식 그물을의 최소 높이는 1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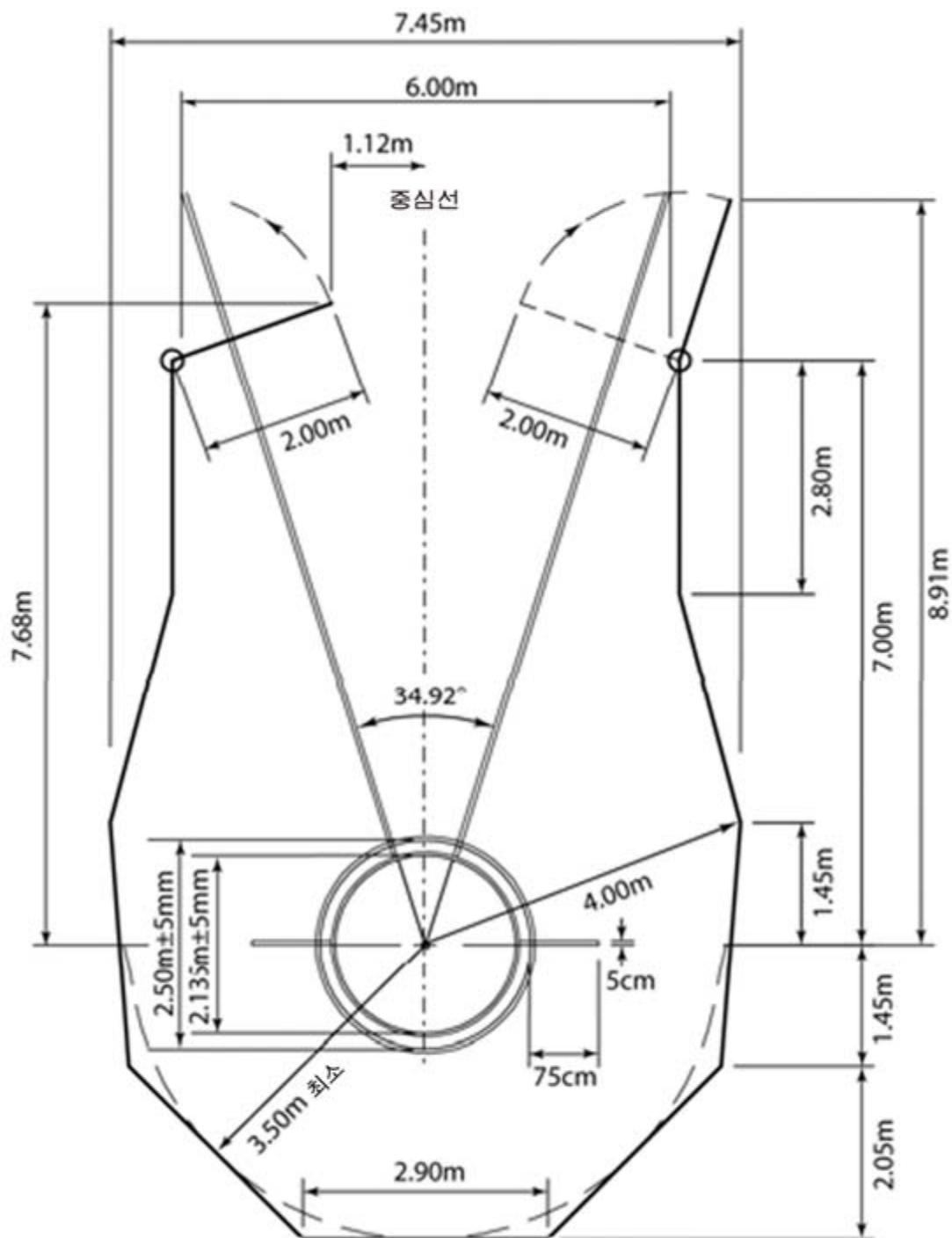
[주1-IIAAF] 왼쪽 그물틀은 선수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투척할 때 사용하고, 오른쪽 그물틀은 선수가 시계방향으로 투척할 때 사용한다. 오른손 투척선수와 왼손 투척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도중 그물틀을 좌우로 이동 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힘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 그물틀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2-IIAAF] 양쪽 그물틀의 끝부분의 위치는 설계도에 제시되어 있지만, 경기 중에는 선수의 손잡이(왼손 또는 오른손)에 따라 한 쪽 그물틀만 닫아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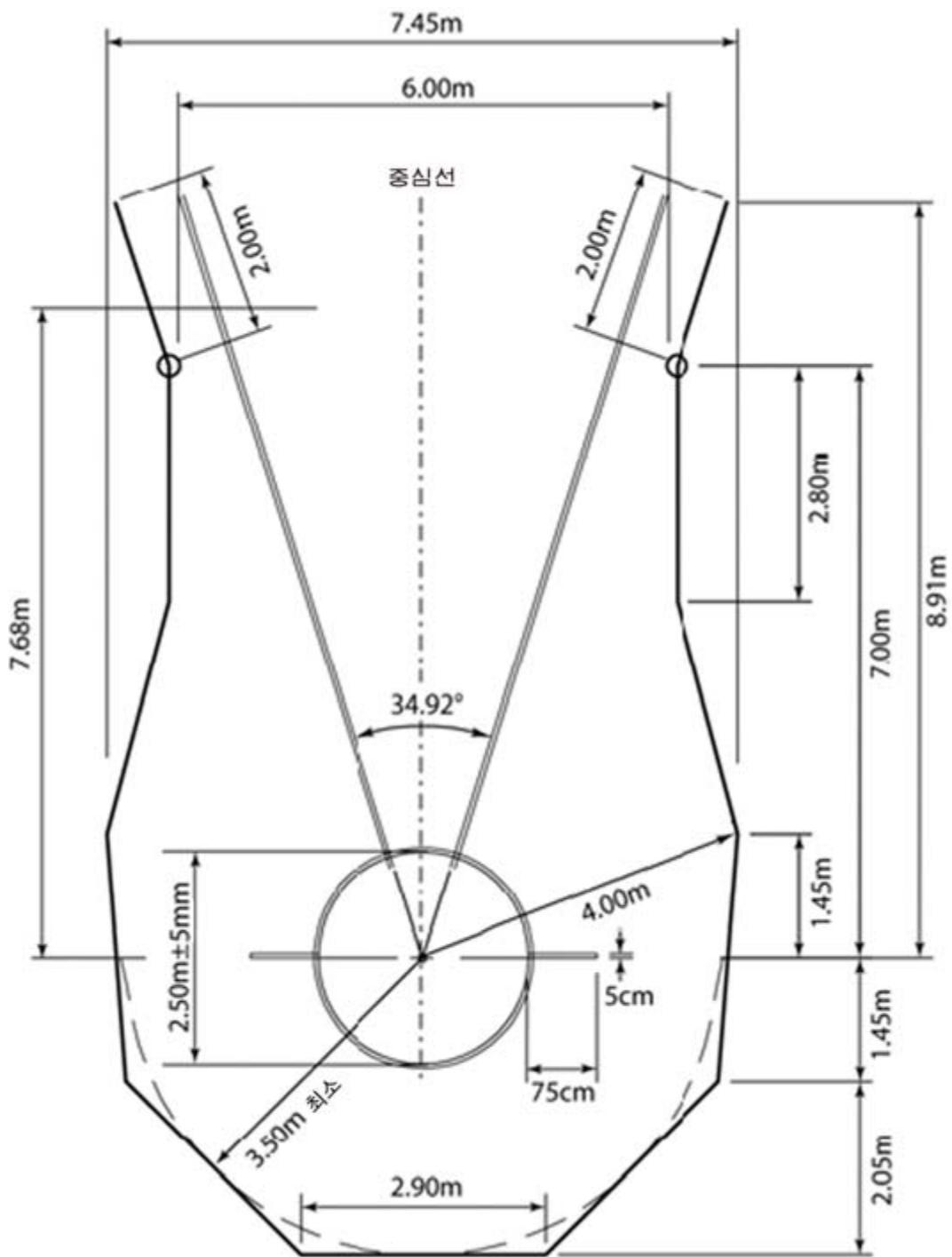
[주3-IIAAF] 이동식 그물틀을 작동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예시된 위치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동식 그물틀은 작동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면에 그물틀의 작동위치를 표시(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할 것을 권장한다.

[주4-IIAAF] 이러한 이동식 그물틀의 구조와 작동은 그물장의 전반적인 설계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평이나 수직축에 이용해 밀어 넣거나 접어놓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러한 이동식 그물틀이 해머의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해머가 고정식 그물틀과 이동식 그물틀 사이를 뚫고 나갈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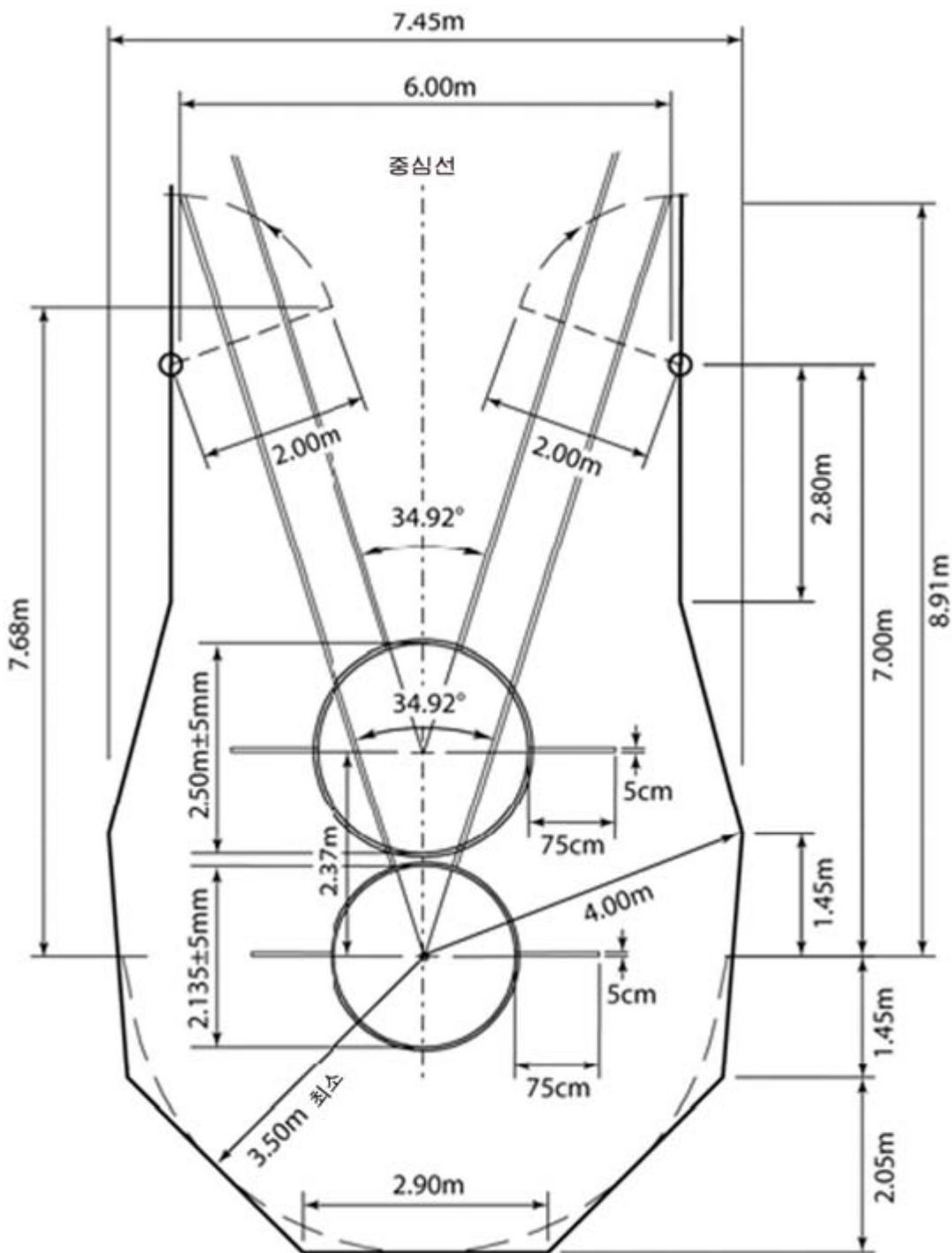
[주5-IIAAF] 종래의 그물장의 설계와 비교하여 보호기능이 동일하고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만든 개선된 설계는 IAAF와 KAAF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동심원서클의 해머 및 원반던지기 그물망
(해머던지기 배치)



동심원서클의 해머 및 원반던지기 그물망
(원반던지기 배치)



별도서클의 해머 및 원반던지기 그물망

5. 그물장의 그물망은 적당한 천연 또는 합성섬유줄이나, 또는 부드럽거나 장력도(張力度)가 높은 강철제 철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물망 눈의 최대크기는 철사의 경우 50mm, 섬유줄인 경우 44mm이어야 한다.
 [주-IAAF] 그물망의 규격과 안전점검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6. 같은 그물장을 원반던지기에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름 2.135m/2.50m인 동심원의 서클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클의 동일한 표면을 해머던지기와 원반던지기 활용하게 된다. 해머던지기 그물장은 이동식 그물틀을 그물장 문구를 막지 않도록 고정시켜서 원반던지기에도 사용한다.
 동일한 그물장 안에 해머던지기와 원반던지기 서클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낙하구역의 중심선상에 두 서클을 설치하되, 원반던지기 서클을 해머던지기 서클 앞에 설치하고, 원반던지기 서클의 중심점으로부터 해머던지기 서클의 중심점이 2.37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원반던지기 경기 시, 이동식 그물틀을 그물장 측면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IAAF] 서클 뒤쪽의 그물틀/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도의 서클의 경우 동심원서클 또는 해머던지기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50m 떨어져 있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또는 2004년 이전의 규칙으로 제작된 별도의 서클들이 있고 원반던지기 서클이 후방에 있는 그물장이면 3.00m이다.)(규칙 제192조 3항 참조).
7. 이 그물장에서 해머던지기 최대위험낙하구역 각도는 동일한 경기대회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참가할 경우 약 53° 이다. 따라서, 그물장의 경기장 내 위치와 배열은 안전을 위한 중대한 사항들이다.

제193조
창던지기(Javelin Throw)

경기(Competition)

- || 1. (a) 창은 한손으로만 손잡이를 쥐어야 한다. 창은 어깨 또는 던지는 팔의 상박 위로 던져야 하고 팽개치거나 내던져서는 안 된다. 비정통적인 투척방법(non-orthodox styles)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창던지기는 금속제 두부가 창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지면에 낙하하였을 경우만이 유효시기가 된다.
(c) 선수는 창이 공중으로 던져지기 전까지 어느 순간에도 신체를 완전히 돌려서 등이 투척 원호(arc)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2. 창이 투척 중 또는 공중에서 파손된 경우, 규칙에 합당하게 시기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수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떠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허용한다.

창(Javelin)

- 3. 창은 촉과 창자루 및 끈으로 감은 손잡이로 3개 부분이 구성하고 있다.
- 4. 창자루는 단단하거나 또는 속이 비어야 하고, 고정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하여 금속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창자루 표면은 윰푹 들어가거나 볼록해서는 안 되며, 홈이 파이거나 용기져서도 안되고, 구멍이 있거나 거칠어도 안 된다. 창자루 표면의 끝손질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균일하여야 한다.
- 5. 창자루에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 두부를 고정시켜야 한다. 두부는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완성된 두부의 표면이 매끄럽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두부 앞쪽

끝에는 기타 금속합금으로 보강된 촉끝을 포함할 수 있다. 두부의 각도는 4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창 중심(重心의)의 둘레를 감은 손잡이의 지름은 창자루의 지름보다 8mm 이상 더 크면 안 된다.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표준적인 무늬의 표면이어야 하며, 가죽끈, 새김 눈 또는 오목하게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손잡이는 굵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7. 횡단면은 어느 부분이나 원형이어야 한다([주1-IIAAF] 참조). 창자루의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은 손잡이 바로 앞에 있어야 한다. 손잡이의 아래 부분을 포함한 창자루의 중심부분은 원통형이거나 뒤끝 쪽으로 가늘어지는 형태이지만, 손잡이 바로 앞부터 손잡이 바로 뒷 부분까지 지름이 0.25mm보다 더 줄어들면 안 된다. 창은 손잡이로부터 앞끝의 촉과 뒤 끝에 이를 때까지 점점 가늘어진다. 손잡이로부터 앞쪽의 끝과 뒤끝에 이르는 종단면은 일직선이거나 약간 볼록하여야 하며 ([주2-IIAAF] 참조), 창길이의 전체에서 두부의 바로 뒤와 손잡이의 앞과 뒤를 제외하고는 지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부의 뒷부분 지름의 감소는 2.5mm 이상이면 안 되고, 종단면의 요구사항인 이러한 감소는 촉 뒤쪽으로 30cm를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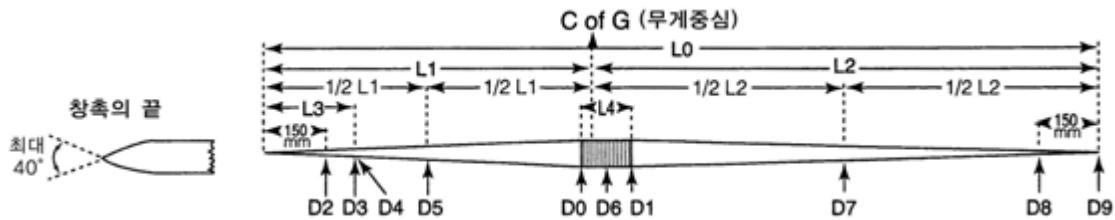
[주1-IIAAF] 횡단면은 전체가 원형이어야 하나 어느 지점의 횡단면에서든 최대와 최소의 지름 차이가 2%인 것은 허용이 된다. 어떤 지명된 횡단면에서든 이 2개의 직경 평균치는 아래 도표의 원형창(圓形槍) 규격과 일치되어야 한다.

[주2-IIAAF] 종단면의 모양은 최소 500mm 길이의 직선 금속날과 두께 0.20mm, 1.25mm인 2개의 간극 게이지(feeler gauge)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약간 볼록한 부분은 직선 날을 창의 짧은 부분과 견고하게 접촉되었을 때 앞뒤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다. 직선부분은 직선 날을 창에 단단하게 고정시켰을 때, 창과 접촉한 직선 날 사이에 0.20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두부와 창자루의 연결부분 바로 뒷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는 1.25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8.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창	여 자		남 자		
	청소년	여중/여고 주니어/일반	남 중	청소년	남고 주니어/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중량 (손잡이 끈 포함)	500g	600g	600g	700g	800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505g	605g	605g	705g	805g
	525g	625g	625g	725g	825g
전체길이	최소	2.000m	2.200m	2.200m	2.300m
	최대	2.100m	2.300m	2.300m	2.400m
금속제축 끝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0.780m	0.800m	0.800m	0.860m
	최대	0.880m	0.920m	0.920m	1.000m
뒷끝(꼬리)에서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1.120m	1.280m	1.280m	1.300m
	최대	1.320m	1.500m	1.500m	1.540m
금속제두부 길이	최소	220mm	250mm	250mm	250mm
	최대	270mm	330mm	330mm	330mm
손잡이의 너비	최소	135mm	140mm	140mm	150mm
	최대	145mm	150mm	150mm	160mm
가장 굵은 부분의 창자루 지름(DO)	최소	20mm	20mm		23mm
	최대	24mm	25mm		28mm
					30mm

9. 창에는 투척 중에 중심(重心)이나 투척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동부분(可動部分)이나 기타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 창의 금속제 두부의 촉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 두부의 촉끝의 각도는 40° 를 넘지 못한다. 촉끝으로부터 150mm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창의 중심점(重心點)과 금속제 두부 촉끝과의 중간지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 창자루 꼬리까지 점차 창자루가 가늘어짐에 있어, 중심(重心)과 꼬리와의 중간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창의 꼬리에서 150mm인 지점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꼬리 끝의 창자루 지름은 3.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국제 경기용 창

길 이		지 름		최 대	최 소
LO	전 체 길 이	D0	손잡이의 앞	-	-
L1	촉끝-무게중심	D1	손잡이의 뒤	D0 0.25mm	D0 – 0.25mm
1/2 L1	L1 의 절반	D2	촉끝으로부터 150mm	0.8 D0	-
L2	창 뒤끝-무게중심	D3	창 두부의 뒤쪽	-	-
1/2 L2	L2의 절반	D4	창 두부의 바로 뒤	-	D3 – 2.5mm
L3	창 두부	D5	창끝 중간점-무게중심	0.9 D0	-
L4	손잡이	D6	손잡이 중간	D0 + 0.8mm	-
		D7	창 뒤끝 중간점-무게중심	-	0.9 D0
		D8	창 뒤끝으로 부터 150mm	-	0.4 D0
CofG	무게중심	D9	창 뒤끝	-	3.5mm
[주-IAAF] 지름의 모든 계측은 최소 0.1mm로 하여야 한다.					

제5장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제200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청소년, 남자주니어 및 남자 일반

(5종경기 및 10종경기, Pentathlon and Decathlon)

1.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멀리뛰기, 창던지기, 200m, 원반던지기, 1500m

[비고] 5종경기는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남자청소년 및 남자 일반의 10종경기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제2일 : 110mH,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여자주니어 및 여자 일반

(7종경기 및 10종경기, Heptathlon and Decathlon)

3. 7종경기는 7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제2일 :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4. 여자의 10종경기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400m

제2일 : 100mH,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1500m

[비고] 10종경기는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자청소년 및 고교(10종경기, Decathlon)

5. 남자 청소년 및 고교의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간에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일 : 1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제2일 : 110mH,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여자청소년 및 여자고교 (7종경기, Heptathlon)

6. 여자청소년 및 고교의 7종경기는 7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제2일 :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총 칙(General)

6. 혼성경기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1개 종목이 끝난 후에서부터 다음 종목을 시작할 때까지 개별선수에게 가능한 한 최소 30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첫째 날 마지막 종목의 종료시각과 둘째 날 첫 번째 종목의 시작시각과는 최소 10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7. 혼성경기의 마지막 종목을 제외한 개별 종목에서는, 조 또는 그룹편성은 사전에 결정된 기간 중에 선수 각각이 수립한 개별 종목 기록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같은 조 또는 그룹에 편성되도록 기술대표 또는 혼성경기 심판장이 결정한다. 각 조 또는 그룹에는 되도록 5명 이상의 선수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대로 3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일정 때문에 이러한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종목의 조 또는 그룹편성은 선수들이 이전 종목을 마치고 참가가 가능한 대로 편성한다.

혼성경기의 최종종목의 조편성은 최종종목의 직전 종목까지의 총점의 상위득점 선수들이 최후의 조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기술대표 또는 혼성경기 심판장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편성할 권한이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최종 종목을 제외하고 각 종목의 조

또는 그룹 편성은 주최자가 선수의 각개별 종목에서 비슷한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같은 조 또는 같은 그룹에 편성되도록 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혼성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제외하고 IAAF 및 KAAF 규칙을 적용한다.

- (a) 멀리뛰기 및 각 투척 종목에서는 각 선수에게 3회만의 시기를 허용한다.
|| (b) 완전자동계시장치와 사진판독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시간은 3명의 수동계시원이 독립적으로 계시한다.
(c) 트랙경기에서는 각 레이스마다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는 선수(들)를 실격시키지 않고 단 1회의 부정스타트를 허용한다. 같은 레이스에서 첫 번째 부정스타트 이후 추가적인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는 선수는 실격된다(규칙 제162조 7항 참조).

9. 각 개별종목 당 오직 1가지의 계시체계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신기록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해당 종목의 다른 선수에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독장치에서 얻은 기록이어야 한다.

10. 선수가 혼성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스타트를 하지 않았거나 1회도 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수를 그 이후의 종목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경기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선수는 최종순위에서 제외된다.

혼성경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선수는 즉시 그의 결정사항을 혼성경기 심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현행 IAAF 및 KAAF 혼성경기채점표에 의한 점수는 각 종목별 점수와 누적 총점수를 각 종목이 종료된 후에 모든 선수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선수들은 획득한 총점에 따라 선수들의 순위가 결정된다.

12. 어느 순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을 취득했을 경우, 동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a) 동점이 된 상대 선수보다 더 높은 득점을 한 종목 수가 많은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b) 만약 규칙 제200조 12항(a)의 적용 후에도 동순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종목에서라도 최고득점을 한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c) 만약 규칙 제200조 12항(b)의 적용 후에도 동순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등에서 최고득점을 한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주] 중학교의 혼성경기는 다음의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d) 만약 규칙 제200조 12항(c)의 적용 후에도 동순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동순위로 결정된다.

중학교

남자 중학교 (5종경기 : Pentathlon)

1.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또는 연속 2일간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며, 본 조 6항 이하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일 : 100m, 포환던지기, 110mH
제2일 : 높이뛰기, 800m

여자 중학교 (5종경기 : Pentathlon)

2.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또는 연속 2일간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며, 본 조 6항 이하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일 : 100m, 포환던지기, 100mH
제2일 : 높이뛰기, 800m

[주] 각 종목의 획득점수는 KAAF 남자 중학교 또는 여자 중학교 5종경기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한다.

제6장 실내경기(Indoor Competitions)

[비고] 실내경기규칙은 국내에서 실내경기를 실시할 때까지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제실내경기대회에서 적용하는 실내경기규칙은 다음과 같다(제210조~223조).

제210조 실내경기에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Applicability of Outdoor Rules to Indoor Competitions)

제6장의 규칙에 명시된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 규칙 제1장부터 5장까지의 실외경기 규칙은 실내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1조 실내경기장(The Indoor Stadium)

- 경기장은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여지고 지붕이 덮여져야 한다. 경기를 만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명과 난방, 환기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경기장은 타원형 트랙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거리 및 허들 레이스를 위한 직선트랙, 도약경기용의 도움닫기주로와 착지장소). 추가적으로, 포환던지기용 서클과 낙하구역도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트랙과 도움닫기주로, 또는 발구름 장소의 표면은 경기화 스파이크(길이 6mm)에 수용할 수 있는 합성포장재로 덮여져야 한다. 경기장 운영기관에 의하여 대체 두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허용되는 스파이크의 길이를 선수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4항 참조).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실내 육상경기대회는 IAAF 실내육상경기시설인증서(Indoor Athletics Facility Certificate)를 소지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이 이용가능할 경우, 규칙 제1조 1항 (d), (e), (g), (h), (i)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들도 이러한 시설에서 개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 트랙, 도움닫기주로 및 발구름 장소의 합성포장 표면을 떠받치는 기초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거나, 아니면 (장선에 부착된 나무판이나 합판 시트처럼) 공중에 뜬 구조물일 경우에는 여하한 탄력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각 도움닫기주로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도약경기를 위한 발구름 장소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각 경기가 실시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주1-IIAAF] “탄력 부분”은 선수에게 부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되거나 시공된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주2-IIAAF] IAAF 사무국이나 웹사이트에서 입수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는 트랙계측과 마킹을 위한 도표를 포함한 실내 경기장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사항들이 포함하고 있다.

[주3-IIAAF] 시설인증신청서(certification application)와 계측보고서(measurement report), 그리고 인증제도절차(Certification System Procedures)의 표준 양식은 IAAF 사무국이나 IAAF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제212조

직선트랙(The Straight Track)

1. 트랙의 측면경사도는 100분의 1(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달리는 방향으로 일부지점에서는 250분의 1(0.4%)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1000분의 1(0.1%) 이하가 되어야 한다.

레인(Lanes)

2. 트랙의 개별 레인 수는 최소 6개, 최대 8개가 되어야 하며, 양쪽에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한 레인의 너비는 $1.22m \pm 0.01m$ 가 되어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레인의 너비가 $1.25m$ 이어도 된다.

스타트와 피니시(The Start and Finish)

3. 스타트라인의 후방에 최소 $3m$ 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니시 라인의 전방에 최소 $10m$ 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며,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피니시 라인 전방에 최소 $15m$ 이상의 거리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확보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제213조

타원형 트랙 및 레인(The Oval Track and Lanes)

1. 일반적인 트랙의 길이는 $200m$ 가 바람직하다. 트랙은 2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경이 동일하고 경사가 있어도 괜찮은 2개의 곡주로로 이루어진다.

트랙안쪽은 높이와 너비가 약 $5cm$ 의 적절한 재질로 만든 연석이나 또는 $5cm$ 너비의 흰색라인으로 구분한다. 연석 또는 흰색라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제1레인의 안쪽 가장자리가 된다. 흰색라인 또는 연석의 안쪽 가장자리는 트랙 전체 길이 동안 수평이 되어야 하고 최대경사는 1000분의 1(0.1%)이다.

레인(Lanes)

2. 트랙은 최소 4개, 최대 6개의 레인이 있어야 한다. 레인의 표준 너비는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해서 최소 0.90m, 최대 1.10m이어야 한다. 모든 레인은 동일한 표준 너비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너비의 +/-0.01m까지 허용오차를 가진다. 레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구분한다.

경사도(Banking)

3. 곡주로와 직선주로 모든 레인의 경사각도는 트랙의 횡단면에서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직선주로는 평평하거나, 안쪽 레인을 향하여 최대 1:100(1%)의 측면경사를 가질 수 있다.
직선주로에서 경사진 곡주로까지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완만한 수평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수직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쪽가장자리의 마킹(Marking of the Inside Edge)

4. 트랙 안쪽가장자리를 흰색라인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곡선부와 직선부에 적당하게 추가로 콘이나 기로 표시해놓는다. 콘의 높이는 최소한 20cm가 되어야 한다. 기의 크기는 약 25cmx20cm이며, 높이는 최소 45cm, 그리고 각도는 트랙 반대방향으로 지면과 60°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콘이나 기는 그 아래쪽의 가장자리가 흰색라인의 트랙과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와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콘 또는 기는 곡주로에서는 1.5m, 직주로에서는 1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한다.

[주-IAAF] IAAF가 직접 주최하는 모든 실내경기대회에서는 안쪽 연석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제214조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와 피니시

(Start and Finish on the Oval Track)

1. 200m의 경사진 실내트랙의 구조와 마킹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중 적용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조건(Basic Requirements)

2. 레이스의 스타트와 피니시는 트랙 직선부분의 레인라인에 직각으로, 또 곡선부분의 반경선에 따라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 한다.
3. 피니시라인의 설정조건은 가능한 한 거리가 다른 모든 종목에서도 한 개의 피니시라인만 직선주로에 두고, 가능하면 직선주로의 대부분의 피니시라인의 전에 있어야 한다.
4. 모든 스타트라인(직선, 단계식 또는 곡선)에 필수조건은 최단거리 계측법을 채용하여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거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5. 가능한 한 스타트라인(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 오버존 라인 포함)이 곡주로의 경사도가 가장 큰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6. 400m 이하 레이스의 스타트는 개별레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00m 이하의 레이스는 경기 내내 개별레인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300m를 초과하고 800m 미만의 레이스는 스타트에서 두 번째 곡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브레이크라인까지 개별레인에서 달려야한다. 800m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가 개별레인을 사용하거나 각 레인 당 최대 2명의 선수를 배정하거나, 또는 가급적이면 제1레인과 제3레인에서 시작하는 그룹스타트를 행한다. 이런 경우, 첫 곡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라인 이후에서만 선수들은 그들의 레인을 떠나거나 바깥쪽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안쪽 그룹에 합류 할 수 있다.

800m를 초과하는 레이스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크형스타트라인을 사용하거나 그룹스타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각 곡주로 후에 제1레인을 제외한 모든 레인들을 가로지르며 너비 5cm 아크형 선으로 그려진다. 선수들의 브레이크라인 식별을 도와주기 위해 브레이크라인 및 레인과 구별되는 색채를 지닌 규격 50mm x 50mm, 높이 15cm의 작은 콘 또는 프리즘들을 브레이크라인-레인 교차점 바로 전에 레인 선상에 놓아야 한다.

[주1-I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가 아닌 대회에서는 해당 국가연맹들이 800m 레이스에서 레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주2-IIAAF] 6레인 미만의 트랙에서는 규칙 제162조 10항에 명시된 그룹 스타트를 6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

200m 표준길이 트랙의 스타트라인 및 피니시 라인

(Start Line and the Finish Line for a Track of 200m Nominal Length)

7. 제1레인의 스타트라인은 주직선에 두어야 한다. 스타트라인의 위치는 바깥쪽 레인의 계단식 스타트라인이 (400m 레이스) 경사의 각도가 12° 가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타원형 트랙에서의 모든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제1레인의 스타트라인을 연장하여 트랙을 가로질러서 각 레인라인에 직각이 되도록 그린다.

제215조

트랙경기의 조 편성, 추첨 및 라운드 통과자격
(Seedings, Draws, and Qualifications in Track Events)

라운드 및 조(Rounds and Heats)

- 실내경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운드 수와 각 라운드의 조 수를 결정하는 데 아래 표를 적용하며, 트랙경기의 라운드에서 순위(P)와 기록(T)으로 진출하는 각 라운드의 통과자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사용한다.

60m, 60mH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4	
33-40	5	4	4				3	2	2
41-48	6	3	6				3	2	2
49-56	7	3	3				3	2	2
57-64	8	2	8				3	2	2
65-72	9	2	6				3	2	2
73-80	10	2	4				3	2	2

200m, 400m, 800m, 4x200mR, 4x400mR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7-12	2	2	2					
13-18	3	3	3				2	3
19-24	4	2	4				2	3
25-30	5	2	2				2	3
31-36	6	2	6				3	2
37-42	7	2	4				3	2
43-48	8	2	2				3	2
49-54	9	2	6	4	3		2	3
55-60	10	2	4	4	3		2	3

1,500m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준결승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12-18	2	3	3						
19-27	3	2	3						
28-36	4	2	1						
37-45	5	3	3				2	3	3
46-54	6	2	6				2	3	3
55-63	7	2	4				2	3	3

3,000m

라운드 참가자수	제1라운드		
	조수	순위	기록순
16-24	2	4	4
25-36	3	3	3
37-48	4	2	4

[주1-IIAAF] 상기 라운드의 통과자격 결정 절차는 6레인의 타원형 트랙 및/또는 필드내의 8레인의 직선 트랙에서만 유효하다.

[주2-IIAAF]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대체 도표가 해당 기술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레인 추첨(Draw for Lanes)

2. 레이스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될 경우 곡주로의 전체 또는 부분을 레인에서 달리는 800m 이외의 모든 종목에서는 레인 결정을 위한 3회의 추첨을 한다.
 - (a) 첫째, 바깥쪽 두 레인 배정을 위한 기록이 가장 좋은 2명의 선수 또는 두 팀간의 추첨.
 - (b) 둘째, 다음 두 레인 배정을 위한 기록이 3위와 4위인 선수 또는 팀간의 추첨.
 - (c) 셋째, 남아 있는 안쪽레인 배정을 위한 기타 선수 또는 팀간의 추첨.

상기에 명시된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d) 첫 라운드의 조편성은 정해진 사전 기간 중에 수립한 유효한 공인 기록에 근거하여 순위 리스트를 정한다.
- (e) 첫 라운드 이후에는 규칙 제166조 3항 (b) 및 (i)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한다.
3. 모든 기타 레이스에서의 레인순서는 규칙 제166조 4항과 8항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16조

의복, 경기화,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

경기화의 밑창과 뒷굽에서 돌출한 각 스파이크의 길이는 6mm(또는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사항은 항상 규칙 제143조 4항에 규정된 최대길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217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 허들 레이스의 표준거리는 직선트랙에서 50m 또는 60m이어야 한다.
- 레이스용 허들의 규격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자			여 자	
	청소년	주니어	일반	청소년	주니어 / 일반
허들 높이	0.914m	0.991m	1.067m	0.762m	0.838m
레이스 거리	50m / 60m				
허들 수	4 / 5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	13.72m			13.00m	
허들간의 거리	9.14m			8.50m	
최후허들 ~ 피니시라인까지	8.86m / 9.72m			11.50m / 13.00m	

제218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1. 4x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모든 제1 구간과 제2 구간의 첫 번째 곡주로에서 규칙 제214조 6항에 명시된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자신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170조 1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선수들이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존(zone) 안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2. 4x400m 릴레이레이스의 경우, 처음 두 곡주로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브레이크라인과 스크래치라인 등은 개인 400m 레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3. 4x800m 릴레이레이스의 경우, 첫 번째 곡주로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브레이크라인과 스크래치라인 등은 개인 800m 레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4. 4x200m 릴레이레이스의 3번과 4번 대기선수, 그리고 4x400m과 4x800m 릴레이레이스의 2번, 3번, 4번 대기선수들은 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소속팀의 앞 주자가 마지막 곡주로에 진입하는 순서와 동일한 순서대로(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기위치를 잡는다. 진입하는 앞 주자가 이 지점을 통과하면 대기선수는 진열된 순서대로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테이크오버존의 시작 부분에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선수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주-IAAF] 레인의 폭이 좁은 관계로, 실내 릴레이레이스는 실외릴레이레이스보다 충돌이나 의도하지 않은 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능한 경우에는 각 팀 간에 1개의 레인을 비워 두도록 권장한다.

제219조
높이뛰기(High Jump)

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The Runway and Take-Off Area)

1. 이동식 매트를 사용할 경우, 발구름 장소 높이에 대한 규칙의 모든 사항은 매트의 상부표면의 높이에 맞춰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2. 도움닫기의 마지막 15m가 규칙 제182조 3항, 4항, 5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0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

도움닫기주로(Runway)

도움닫기의 최후 40m가 규칙 제183조 6항 및 7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1조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

도움닫기주로(Runway)

도움닫기의 최후 40m가 규칙 제184조 1항 및 2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2조 포환던지기(Shot Put)

낙하구역(Landing Sector)

1. 낙하구역은 포환이 흔적을 남길 수 있고 튀어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2. 관중과 임원, 및 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지벽(stop barrier)을 낙하구역의 양쪽 끝에 설치하고, 그리고/또는 방어 그물망을 서클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방어 그물망은 최소 4m 높이로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포환 또는 낙하구역표면에 퉁겨나오는 포환을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하여야 한다.
3. 실내경기장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지벽으로 둘러쳐진 구역은 34.92° 의 낙하구역 전부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크지가 않다. 이러한 제한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a) 먼쪽 끝의 방지벽은 현재 남자 또는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기록 보다 최소 50cm이상 더 멀리 세워야 한다.
 - (b) 양쪽의 낙하구역 경계선은 34.92° 의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한다.
 - (c) 낙하구역 경계선은 34.92° 의 낙하구역 전체를 포함한 서클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방향으로 연장되거나 또는 양쪽 경계선 서로 그리고 34.92° 의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평행을 이루게 한다. 낙하구역 경계선이 평행을 이룬다면 양 경계선간의 최소 거리는 9m가 되어야 한다.

포환의 구조(Construction of the Shot)

4. 낙하구역의 종류에 따라 (규칙 제222조 1항 참조) 포환은 단단한 금속구 및 금속물 외곽제로 감싸거나 속에 적절한 재질을 채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감싸야 한다. 이들 두 종류의 포환 모두를 동일한 경기대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견고한 금속제 포환 또는 금속외곽제 포환(Solid Metal or Metal Cased Shot)

5. 이러한 포환은 실외 포환던지기 경기를 위해 규칙 제188조 4항과 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또는 고무외곽제 포환(Plastic or Rubber Cased Shot)

6. 이 종류의 포환은 일반체육관 바닥에 낙하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속에 적절한 재질로 채우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감싸야 한다. 모양은 구형(球形)이고 표면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포환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 평균높이는 $1.6\mu\text{m}$ ($1.6/1000\text{mm}$) 미만이어야 한다. 즉, 미가공도 번호 N7 이하가 되어야 한다.

7.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포 환	여 자		남 자		
	청소년	여고 주니어/ 일반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3.000 kg	4.000 kg	5.000 kg	6.000 kg	7.260 kg
제조업체 정보 : 경기용구 공급범위	3.005 kg	4.005 kg	5.005 kg	6.005 kg	7.265 kg
	3.025 kg	4.025 kg	5.025 kg	6.025 kg	7.285 kg
지름	최 소	85mm	95mm	100mm	105mm
	최 대	120mm	130mm	135mm	140mm
					110mm
					145mm

제223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남자청소년, 주니어 및 일반 (5종경기)

1. 5종경기는 5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60mH,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1,000m

남자청소년, 주니어 및 일반 (7종경기)

2. 7종경기는 7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제1일 : 6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제2일 : 60mH, 장대높이뛰기, 1,000m

여자청소년, 주니어 및 일반(5종경기)

3.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6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800m

조 및 그룹편성(Heats and Groups)

4. 각 조 또는 그룹에 절대로 3명 미만으로 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4명 이상의 선수들로 편성한다.

제7장 경보경기(Race Walking Events)

제230조

경보경기(Race Walking)

|| 경보의 정의(Definition of Race Walking)

- 경보란 육안으로 보아서 두 발이 다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느 한 쪽 발이 항상 지면에 닿아 있으면서 발걸음을 전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내딛는 다리는 지면에 처음 닿는 순간으로부터 수직의 위치가 될 때까지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즉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심판 판정(Judging)

- (a) 사전에 심판원주임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임명된 경보경기 심판원들이 심판원주임을 선임 한다.
(b) 모든 심판원들은 개인적 재량으로 판정하며 그들의 판정은 사람의 육안으로 관찰된 근거로 판정해야 한다.
(c)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모든 심판원이 국제경보심판원이어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b), (c), (e), (f), (g)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모든 심판원이 대륙경보경기 심판원 또는 국제경보심판원이어야 한다.

[주] 국내의 전국규모 대회에서의 경보경기심판원은 한국경보 경기 심판원(KRWJ) 또는 본 연맹이 지명한 경보경기 심판원 이어야 한다.

- (d) 로드경보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원 인원은 심판원주임을 포함하여 최소 6명에서 최대 9명이어야 한다.
(e)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원주임을 포함하여 6명의 심판원이어야 한다.

(f)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동일 국가의 심판원이 1명을 초과해서(2명 이상)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 국내의 전국규모 경기대회에서는 동일 시·도연맹 소속의 심판원을 1명을 초과해서 배정하여서는 안 된다.

심판원주임(Chief Judge)

3. (a)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d)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최후의 100m 구역에서 선수 보행방법이 규칙 제230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이전까지 받은 붉은색 카드 수에 상관없이 실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심판원주임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심판원주임에 의해 실격된 선수는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 보조원은 선수가 레이스를 끝낸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을 통보한다.
- (b) 심판원주임은 경기를 감독하는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규칙 제230조 3항(a)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심판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국내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는 2명 이상의 심판원주임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판원주임보조원은 선수에게 실격통보를 할 때에만 심판원주임을 보조하며 경보경기 심판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 (c)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 및 국내의 전국규모경기대회에서는 게시판운영원과 심판원주임을 보조하는 기록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노란색 표지판(Yellow Paddle)

4. 심판원은 선수가 규칙 제230조 1항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곳에서 양면에 위반사항이 표시된 노란색 표지판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일한 심판원이 한 선수에게

동일한 위반에 대해 노란색 표지판을 두 번 보여줄 수 없다. 경기가 끝난 후, 심판원은 선수에게 노란색 표지판을 보여준 사실을 심판원주임에게 통보한다.

붉은색 카드(Red Cards)

5. 경기 중 언제라도 심판원이 선수의 두 발이 지면에서 동시에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혀짐으로써 규칙 제230조 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목격했을 때, 심판원은 심판원주임에게 붉은색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격(Disqualification)

6. (a) 동일한 선수에 대해서 심판원 주임이 3명의 다른 심판으로부터 붉은색 카드를 3번 받으면,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되며,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보조원은 해당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된 선수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b) 규칙 제1조 1항 (a), (b), (c) 또는 (e)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국적의 심판원 2명의 붉은색 카드는 선수를 실격시킬 권한이 없다.
- (c)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실격된 선수는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하며, 로드경보경기일 경우, 실격된 선수는 실격된 직후 자신의 선수표를 뗀 후 코스를 떠나야 한다. 실격된 선수가 로드코스 또는 트랙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IAAF 규칙 제60조 4항 (f) 및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가 따른다.
- (d)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시판을 경보경기 코스 및 피니시 근처에 설치하여 선수들이 심판원주임에게 보내진 각 선수의 붉은색 카드 수를 항상 알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반칙 종류도 증호로 게시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 (e)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심판원이

전송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산장치를 통해 모든 붉은색 카드를 기록원과 게시판 운영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경기 종료 직후, 심판 원주임이 규칙 제230조 3항(a) 또는 6항(a)에 의거하여 실격을 당한 선수들의 신원을 선수표, 통보시간, 위반 내용과 함께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붉은색 카드를 받은 모든 선수들에게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스타트(Start)

7.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의 발사로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경기에서 사용하는 스타트 구령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통보를 해준다.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대회 주최측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스타트라인에 집결한다. 스타터는 어떤 선수도 발이나 신체 부위가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안전 및 의무(Safety and Medical)

8. (a) 경보경기의 조직위원회는 선수와 임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조직위원회는 경기에 사용되는 도로의 모든 방향의 차량 통행을 차단시켜야 한다.
- (b) 주최자가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구별된 복장을 착용하여 신분을 명백히 나타낸 의료진에 의한 경기 중의 현장의료 검진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c) 의무대표 또는 공식의료진으로부터 경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로드경기의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in Road Events)

9.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지점과 피니시지점에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b) 5km 이상, 10km 이하의 모든 경기에서는 기후 여건에 따라 물과 스펀지 공급소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IAAF] 어떤 운영상황과 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무 시설(mist) 공급소도 설치할 수 있다.
- (c) 10km 이상의 모든 경기에서는 음식물 공급소가 매 주회마다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물만의 음료수와 스펀지 공급소를 음식물 공급소들 간의 중간지점에, 또는 기후여건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d) 주최자 또는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을 선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에 놓거나, 또는 사전에 승인된 자가 선수의 손에 직접 건네줄 수 있게 한다.
- (e) 이러한 사전 승인된 인원은 코스에 진입하거나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인원은 테이블 뒤나 테이블 옆 1m 이내의 위치에서 음식물을 선수에게 건네줄 수 있으나, 테이블 앞에서 건네줄 수는 없다.
- (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어느 한 경우에 국가별로 최대 2명의 임원까지 음식물 테이블 뒤에 대기할 수 있다. 선수가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 임원이 해당 선수 옆에서 따라 달려서는 안 된다.

[주-IAAF]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3명 이상인 경기에 대해서는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임원이 음식물테이블에 대기할 수도 있다.

[주] 국내의 전국규모경기대회에서는 각 팀에서 2명이내의 임원이 음식물테이블 뒤에 대기하여 선수에게 음식물을

손으로 넘겨주어도 좋다. 이때 다른 선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g) 스타트부터 또는 공식 공급소에서 물이나 음식물을 선택하거나 넘겨받은 선수는 그 물 또는 음식물을 손으로 또는 몸에 부착 해서 달릴 수 있다.
- (h) 선수가 의료적인 이유나 레이스 임원의 감독 하에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음식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러한 실격을 당한 선수는 즉각 코스를 퇴장해야 한다.

로드코스(Road Courses)

10. (a) 1주회 코스거리는 1km이상에서 2km이하이다. 스타트와 피니시가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주회코스는 가능하면 경기장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b) 로드코스는 규칙 제240조 3항에 의거하여 계측되어야 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11. 20km 이상의 경보경기에서는 선수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로드 또는 트랙을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12.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13.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 및 국내의 전국규모대회 경보경기 종목은 낮 시간에 스타트하고 피니시하도록 한다.

제8장 로드레이스(Road Races)

제240조 로드레이스(Road Races)

거 리(Distances)

1. 로드레이스의 표준거리는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42.195km), 100km 및 로드릴레이레이스이다.

[주-IAAF] 마라톤 거리에서 실시하는 로드릴레이레이스는 5km의 순환코스로 구간거리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니어선수를 위한 로드 릴레이레이스의 권장 거리는 하프마라톤이며, 구간은 5km, 5km, 5km, 6.098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 스(Course)

2. 로드레이스는 포장된 도로(공인 장거리 경주로)에서 실시된다. 교통이나 유사한 상황으로 도로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 적절히 표시하여 코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풀밭 가장자리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지면은 사용할 수 없다. 스타트와 피니시는 육상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주1-IAAF] 표준거리로 개최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거리가 이 두 지점간의 이론적인 직선을 따라 계측하여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가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록 승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260조 28항(b)를 참조한다.

[주2-IAAF] 레이스의 스타트, 피니시, 그리고 레이스의 다른 부분을 잔디 또는 기타 비포장 지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3. 로드레이스의 코스는 경기 중 선수가 사용 가능한 도로 부분을 따라 최단거리코스(shortest possible route)를 계측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a) 및 가능하면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선은 다른 표시선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코스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코스의 길이는 해당경기 종목의 공식거리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허용오차는 0.1%(마라톤의 경우 42m)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스의 길이는 대회 전에 IAAF 공인 코스계측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1-IAAF] 코스계측은 자전거회전계측방법(Calibrated Bicycle method)을 사용한다.

[주2-IAAF] 재계측때 코스가 짧게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스 설정시 “코스단축 방지인수(short course prevention factor)”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계측 시 방지인수는 0.1%이며, 이는 코스에서 매 1km를 1001m로 계측함을 뜻한다.

[주3-IAAF] 경기대회 당일 원뿔이나 바리케이드 등 임시 설치물로 코스 일부분을 구분하려면, 설치장소가 코스계측보다 늦게 결정해서는 안 되며 계측보고서에 설치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4-IAAF] 표준거리로 이행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의 전체 고도감소는 1,000분의 1(즉 1km마다 1m(0.1%))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신기록 승인에 대해서는 규칙 제260조 28항(c)를 참조한다.

[주5-IAAF] 코스계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기 시에는 코스에 명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재계측 되어야 한다.

4. 거리는 km로 코스 위에 표시하여 모든 선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
 5. 로드릴레이스에서 각 구간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코스를 가로질러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그린다.

테이크오버존을 표시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라인 전후 10m 위치에 동일한 흰색라인을 그린다. 모든 테이크오버 절차는 대회 주최측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는 주자와 나가는 주자 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구성되며, 이 존(zone)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타트(Start)

6.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을 발사하거나, 캐년, 에어 혼 또는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의 스타트 구령이 사용된다(규칙 제162조 2항(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예고를 한다.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대회 주최측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스타트라인에 집결한다. 스타터는 어떠한 선수도 발(또는 기타 신체 부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안전 및 의무(Safety and Medical)

7. (a) 로드레이스의 조직위원회는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조직위원회는 경기에 사용하는 도로의 모든 방향에 차량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b) 조직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하여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특징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 신분을 명백히 나타낸 의료진에 의한 경기 중의 현장의료 검진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c) 의무대표 또는 공식의료진으로부터 경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8.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에는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b) 모든 경기에서 물은 약 5km 간격마다 적절히 공급되도록 한다. 10km 초과하는 경기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도 각 지점에서 공급될 수 있다.

[주1-IIAAF] 경기종목의 특성, 기후 상황, 선수 다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욱 짧은 간격으로 물 또는 음식물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주2-IIAAF] 어떤 운영상황 및/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이 분무(미스트(mist))도 설치할 수 있다.

(c) 음식물이라 함은 음료수, 에너지 보충제식품, 물 이외의 기타 식품 포함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음식물을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d)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나, 대회조직 위원회에서 선수가 자신의 음식물을 준비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가 어떤 공급소에서 자신의 음식물이 제공될 것인가를 선정하도록 한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대리인이 맡겨놓은 때부터 대회조직위원회가 지명한 임원의 감독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지명된 임원들은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대회조직위원회는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역을 지면에 마킹이나 테이블, 장벽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 구역이 계측된 코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은 선수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공인된 인원이 선수의 손으로 건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원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에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공인된 인원이 선수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

- (f) 규칙 제1조 1항 (a), (b), (c)와 (f)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별로 최대 2명까지의 임원이 자기의 국가에게 지정된 구역 뒤에 위치할 수 있다.
- [주IAAF]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3명 이상인 종목에서는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임원이 음식물 테이블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 (g) 선수는 언제든지 물이나 음식물을 손으로 또는 신체에 부착한 형태로 운반할 수 있으나 이는 스타트 시부터 운반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공급소에서 선택하여 넘겨받은 것이어야 한다.
- (h) 선수가 의료적인 이유나 레이스 경기임원의 감독 하에 공식 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타 선수의 음식물이나 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러한 실격을 당한 선수는 즉각 코스를 퇴장해야 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9. 로드레이스에서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선수가 로드 또는 트랙을 벗어날 수 있다. 단, 이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10.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서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제9장 크로스컨트리 및 산악 레이스(Cross-Country and Mountain Races)

제250조

크로스컨트리레이스(Cross-Country Races)

총 칙(General)

1. 크로스컨트리레이스 및 산악 레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회 성공여부는 흔히 장소의 자연적인 특성과 코스설계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규칙은 크로스컨트리 레이스 및 산악 레이스의 발달을 원하는 국가를 위한 지침과 동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코스(Course)

2. (a) 코스는 가능하면 잔디로 덮여져 있고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야외벌판이나 삼림지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코스 설계자는 자연적인 장애물을 도전과 흥미 있는 레이스 코스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
(b) 코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선수권대회와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그리고 가능한 한 기타 어떤 대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
 - (a) 1순환의 길이가 1,500m에서 2,000m인 순환코스로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종목의 전체 거리에 요구되는 거리를 조절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전반부에서 달려야 할 짧은 1순환을 추가할 수도 있다. 거리가 긴 각 순환에서의 전체적인 오르막 경사길이를 최소 10m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
 - (b) 가능하면 기존의 자연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주 높은 장애물이나 깊은 도랑, 위험한 오르막이나 내리막, 빠빠한 관목숲, 그리고 레이스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난관을 형성하는 모든 기타 장애물은 피하여야한다. 가급적 인공장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장애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참가선수가 많은 경기일 경우, 첫 1500m까지는 선수들이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협소한 계곡이나 기타 장애물 지역을 피하여야 한다.

- (c) 도로 교차로나 자갈길 같은 쇄석포장도로(macadamised surfaces)의 유형은 피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 중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곳이 한 두 군데라면 풀, 흙 또는 매트로 덮어야 한다.
 - (d) 스타트와 피니시 구역을 제외하고, 코스에는 긴 직선거리가 없어야 한다. 완만한 곡선부와 짧은 직선거리가 있는 “자연적인” 기복이 있는 코스가 가장 이상적이다.
4. (a) 코스 양쪽에 테이프를 쳐서 코스를 명백히 표시한다. 코스의 한 쪽을 전체적으로 1m 너비의 회랑구간을 코스외곽을 따라 빈틈 없이 울타리를 쳐서 조직위원회 임원과 보도원만 사용하도록 설치해 놓아야 한다(선수권대회에서는 필수사항임). 중요한 지역은, 특히 스타트구역(준비운동장 및 소집실 포함)과 피니시구역(공동취재구역, mixed zone 포함)은 빈틈없이 울타리를 쳐서 승인된 출입카드 소지자만이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b) 일반인 관객은 안내요원의 인도에 따라서만이 레이스 초반에 정리가 잘 된 교차점에서 코스를 가로질러갈 수 있다.
- (c) 스타트 및 피니시 구역을 제외하고, 코스의 너비는 장애물 구역을 포함해서 5m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거리(Distances)

5. IAAF 세계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에서의 레이스 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남자	12km
주니어 남자	8km
여자	8km
주니어 여자	6km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레이스 거리를 권장한다.

청소년 남자 6km

청소년 여자 4km

기타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에서도 위와 비슷한 거리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타트(Start)

6.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의 발사로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경기에서 사용하는 스타트 구령을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b)).

참가 선수가 많은 경기에서는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팀 레이스의 경우, 스타트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각 팀의 선수는 레이스 스타트 시 각 팀별로 뒤에 줄을 서야 한다. ||

팀 레이스가 아닌 경우, 선수는 대회주최측에서 정한 방식대로 줄을 선다. 스타터는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어떠한 선수도 발이나 (신체 어느 부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

안전 및 의무(Safety and Medical)

7. (a) 크로스컨트리레이스의 대회조직위원회는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대회조직위원회가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하고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여 신분을 명백히 나타낸 의료진에 의한 경기 중의 현장의료 검진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c) 의무대표 또는 공식의료진으로부터 경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8. 모든 레이스에서는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에 물과 적절한 기타 음식물을 공급한다. 모든 종목에서 기후조건이 음료수와 스펀지 공급소를 필요로 한다면 음료수와 스펀지 공급소를 각 주회마다 공급하여야 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9.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함으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제251조

산악레이스(Mountain Races)

코스(Course)

1. (a) 산악레이스는 주로 비포장 지형에서 실시한다. 코스에 급격한 경사가 있는 코스에는 쇄석포장을 깔 수 있다;
(b) 코스에 위험한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c) 선수는 코스에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조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코스는 오르막 위주(주로 오르막인 레이스를 위해), 또는 오르막/내리막(오르막과 내리막을 포함하며 스타트와 피니시가 같은 고도인 레이스를 위해) 위주의 코스로 한다;
(e) 평균 오르막 경사는 최소 5%(또는 1km당 고도 50m 상승), 최대 20% (또는 1km당 고도 200m 상승) 사이로 한다.

- (f) 코스의 가장 높은 지점은 고도 3,000m를 초과하지 않는다;
- (g) 코스 전체는 명확히 마킹되어야 하며 킬로미터 마킹을 포함해야 한다;
- (h) 코스 상 자연적인 장애물이나 도전적인 지점도 추가적으로 마킹해야 한다;
- (i) 다음의 축척을 활용하여 나타낸 자세한 코스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고 도 : 1/10,000 ($1\text{cm} = 100\text{m}$)

거 리 : 1/50,000 ($1\text{cm} = 500\text{m}$)

산악레이스의 유형(Types of Mountain Races)

2. (a) 고전 산악레이스 :

선수권대회의 경우, 전체 거리 및 오르막의 총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구 분	대부분 오르막 코스		오르막 & 내리막 코스	
	거리	오르막길	거리	오르막길
일반 남자	12km	1,200m	12km	600m/750m
일반 여자	8km	800m	8km	400m/500m
주니어 남자	8km	800m	8km	400m/500m
주니어 여자	4km	400m	4km	200m/250m
청소년 남자	5km	500m	5km	250m/300m
청소년 여자	3km	300m	3km	150m/200m

(b) 장거리 산악레이스 :

장거리 산악레이스 코스는 약 20km ~ 42.195km 거리이며, 최대경사(고도) 4,000m로 한다. 만 18세 미만인 선수가 25km를 초과하는 거리의 레이스에서 경기하여서는 안 된다.

(c) 릴레이 산악레이스

(d) 시간 산악레이스 :

각 구간별 개별 스타트 타임으로 진행되는 산악레이스는 시간(Time trial) 레이스로 간주한다. 기록은 개별 피니시 타임 순으로 한다.

스타트 (Start)

3.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을 발사하여 시작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구령을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 (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예고를 한다.

팀 레이스의 경우, 스타트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각 팀의 선수는 레이스 스타트 시 각 팀별로 뒤에 줄을 서야 한다. 팀 레이스가 아닌 경우, 선수는 대회주최측에서 정한 방식대로 줄을 선다.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어떤 선수도 발이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안전 및 의무 (Safety and Medical)

4. (a) 산악레이스의 대회조직위원회는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대회조직위원회가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여 신분을 명백히 나타낸 공식 의료진에 의한 경기 중의 현장의료 검진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c) 의무대표 또는 공식의료진으로부터 경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 / 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5.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에는 음식물을 공급한다. 레이스의 거리와 난이도 그리고 기후 조건이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인 음료수/스펀지 공급소를 코스 외 적절한 지점에 설치 할 수 있다.

레이스 진행 (Race Conduct)

6.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함으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제10장 세계기록과 한국기록 (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제260조

세계기록과 한국기록(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세계기록(World Records)

총칙(General Conditions)

1. 세계기록은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국가 또는 영토의 IAAF 회원연맹이 대회전에 올바르게 준비, 공표 및 승인하고 IAAF 규칙에 따라 이행된 정식 경기대회에서 수립된 것이어야 한다.
2. 세계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IAAF 규칙 하에 경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IAAF 소속 회원연맹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3. 세계기록이 수립된 경우, 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IAAF 회원연맹은 IAAF의 공인에 필요한 모든 해당 기록 관련 자료를 자체 없이 수집하여야 한다. IAAF가 공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록도 세계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연맹은 IAAF에게 기록을 제출할 의사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 국내에서 세계신기록 또는 아시아신기록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연맹은 본 연맹에 기록을 빨리 통보하고 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IAAF 경기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IAAF의 공식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한 후, IAAF 사무국에게 30일 이내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IAAF 사무국에게 요청하면 구할 수 있고, IAAF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외국선수(또는 외국팀)의 기록을 공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1부를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선수나 팀이 소속된 회원연맹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5. 세계신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회원연맹은 공식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 대회프로그램 인쇄물
 - 해당 종목의 모든 기록
 - 사진판정용 및 “0”점 조절사진 (규칙 제260조 22항(c) 참조)
6. (규칙 제 260조 8항에 의거하여) 세계기록을 수립한 각 선수는 그 경기가 끝난 후 현행 IAAF의 경기규칙과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도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릴레이레이스의 기록인 경우에는 팀의 선수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거된 시료는 분석을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공인검사기관에 보내야하고, 그 결과는 기록공인을 위해 IAAF가 요구한 기타 자료에 추가하여 IAAF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가 도핑 방지규정 위반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IAAF는 이 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7. 선수가 세계기록 수립 이전의 어느 시기에도 그 당시 금지된 물질이나 금지된 기술을 사용 또는 복용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무 및 도핑방지분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IAAF에 의한 세계기록 공인이 취소된다.
8. IAAF가 공인하는 세계기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a) 세계기록
 - (b) 세계주니어기록
 - (c) 세계실내기록
 - (d) 세계실내주니어기록
9. 개별종목에서는 3명이상의 선수와, 릴레이레이스 종목에서는 2팀 이상이 해당 경기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진정한 경기를 한 선수들이여야 한다.
10. 세계신기록은 그 종목의 IAAF에 의해 공인된 현 세계기록보다 더 좋거나 동일하여야 한다. 기록이 동일하면 원래의 기록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11. 세계신기록은 예선라운드, 높이뛰기 및 장대높이뛰기의 1위 결정경기, 규칙 제125조 7항과 제146조 4항(b)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결된 경기의 일부, 또는 선수의 혼성경기 전 종목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서 수립된 신기록도 공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12. IAAF 회장과 사무총장은 세계기록을 공인할 권한이 있다. 만약, 이들이 세계기록 공인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경우에는 IAAF 집행위원회에게 공인 결정 여부를 회부한다.
13. 세계신기록이 공인되었을 경우, IAAF는 선수의 국가연맹과 기록공인을 신청한 국가연맹 및 해당 대륙연맹에 그 사실을 통보 한다.
14. IAAF는 세계기록보유자에게 수여하기 위한 공식 세계기록 공인패 (World Record Plaques)를 제공한다.
15. 만약 기록이 공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IAAF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16. IAAF는 새로운 세계신기록이 공인될 때마다 매번 공식 세계기록 리스트를 새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목록에는 규칙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에 명시된 각 공인종목에서 현재 리스트까지의 개인선수 또는 팀이 수립한 가장 좋은 IAAF 승인 기록이 기재된다.
17. IAAF는 매년 1월 1일에 세계기록 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세칙(Specific Conditions)

18. 로드레이스 종목을 제외한 공통사항:
- (a) 세계기록은 IAAF 공인육상경기시설이나 경기장 지붕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칙 제140조에 따라 건설된 경기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한 트랙이나 도움닫기주로, 착지장소나 투척 서클은 IAAF 육상경기시설메뉴얼의 규격과 일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실내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 21항 참조.
- (b) 2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세계기록을 공인받으려면 그 기록이 수립된 트랙의 길이가 402.3m(440야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레이스는 트랙 원주(円周)의 어느 부분(곡주로)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한은 일반 400m 트랙밖에 물웅덩이 허들을 설치하는 장애물레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타원형 트랙경기에서 달성된 세계기록은 주행라인의 반지름이 50m를 초과하지 않는 레인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단, 곡주로가 2개의 다른 반지름을 가진 2개의 원호(arc)중 더 긴 원호가 180°회전에서 6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d) 규칙 제147조에 의거하여 진행된 필드종목을 제외하고, 남녀 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19. 실외경기 세계기록은 규칙 제160조에 따라 건설된 트랙에서 수립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0. 세계주니어신기록 공인신청 시 선수의 생년월일을 IAAF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기록공인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한 공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21. 세계실내기록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세계기록은 규칙 제211조 및 제213조에 적합한 IAAF 공인 육상 경기시설 또는 경기장소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b) 2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세계기록을 공인받으려면, 타원형 트랙의 길이가 201.2m(220야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달리는 거리가 그 종목의 승인된 허용 오차 내에 있다는 전제 하에 타원형 트랙에서 200m 이내의 거리를 달려서 달성된 세계기록은 인정된다.
 - (d) 모든 트랙의 직선주로는 규칙 제212조에 준해야 한다.
22. 트랙경기와 로드레이스 및 경보경기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a) 기록은 공식계시원, 승인된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 또는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로 계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65조 참조).

- (b) 800m까지의 레이스($4 \times 200m$ 및 $4 \times 400m$ 포함)의 경우, 규칙 제165조에 따른 승인된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로 계시된 기록만이 공인을 받을 수 있다.
 - (c)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한 트랙종목에서 세계기록이 수립 되었을 경우, 사진판독용 사진과 영점조절검사(zero control test)를 관련 자료에 포함하여 함께 IAAF로 제출해야 한다.
 - (d) 야외에서 수립된 200m까지의 모든 세계기록의 경우, 규칙 제163조 8항부터 13항까지의 규칙에 따라 측정한 풍속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선수 뒤쪽에서 레이스 방향으로 측정된 풍속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할 경우 그 세계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e) 레인에서 실시되는 레이스에서 선수가 자기 레인의 내측 커브 경계선 (inner curved border) 위로나 그 안쪽으로 달린 경우에 그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f) 규칙 제261조와 제263조에 명시된 400m까지의($4 \times 200m$, $4 \times 400m$ 릴레이 레이스 포함) 모든 세계기록은 반응시간을 정확히 계시하기 위해 규칙 제161조 2항에 따라 IAAF에서 승인한 부정스타트발견장치가 연결된 스타팅블록이 사용되어야 하고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23. 다중거리레이스(multiple distance)의 경우, 동일한 레이스에서 다양한 거리의 세계기록이 수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a) 레이스는 어느 정해진 거리의 레이스여야 한다.
 - (b) 그러나 일정 시간 내에 주행한 거리를 겨루는 레이스는 일정거리의 레이스와 병합해도 좋다(예 : 1시간 레이스와 20,000m 레이스 - 규칙 제164조 3항 참조).
 - (c) 동일선수가 동일레이스에서 여러 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 (d) 여러 명의 선수가 동일 레이스에서 서로 다른 세계신기록을 수립 하는 것은 허용된다.

- (e) 그러나 선수가 레이스의 전거리를 완주하지 않고 그보다 짧은 거리에서 기록을 수립하면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24. 릴레이레이스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a) 릴레이레이스의 세계기록은 오직 팀만이 수립할 수 있고, 팀의 선수 전원이 단일 회원국가의 국적 시민선수들로서 편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시민권은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어느 방법으로 취득해도 무방하다.
 - (b) IAAF에 단독 회원연맹으로 가맹하지 않은 식민지는 본 규칙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모국의 일부로 간주된다.
 - (c) 릴레이 팀에서 첫 번째 주자가 수립한 시간은 세계기록으로 신청할 수 없다.
25. 경보경기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IAAF 국제경보경기심판위원회 또는 대륙경보경기 심판원 중 최소 3명의 심판원이 경기심판을 수행하고 세계 기록 공인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6. 필드경기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a) 필드경기 기록은 3명의 필드경기 심판원이 공인된 강철제 줄자, 고도계 또는 공인계측심판원에 의하여 정확성이 인정된 과학적인 계측장비로 계측하여야 한다.
 - (b) 야외에서 실행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기록은 규칙 제184조 10, 11 및 12항에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된 풍속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선수의 등 뒤에서 도약방향으로 측정된 풍속 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할 경우, 그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c) 세계기록은 공인된 각 기록이 그 시점에서 이전에 수립된 가장 좋은 기록과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경우 한 경기대회에서 1개 이상의 기록이 공인될 수 있다.
 - (d) 투척경기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따라 경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타이기록 또는 신기록갱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즉각 사용된 용구에 표시하여 규칙에 부합되는지 또는 용구의 특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용구는 경기 종료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27. 혼성경기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공인조건은 각 개별종목에 대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풍속계측이 이루어지는 종목에서는 각 개별종목별로 계측한 풍속의 총합계를 해당 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 풍속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8. 로드레이스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a) 코스는 반드시 1명 또는 그 이상의 IAAF/AIMS “A”급 또는 “B”급 코스계측원에 의해 계측되어야 한다.

(b) 코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이론적 직선거리를 따라 측정된 거리는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 고도의 전체 감소는 평균 1000분의 1(0.1%, 즉 1km 당 1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코스를 최초에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완전한 코스 계측 자료 및 지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A”급 혹은 “B”급 계측원이 선두 차량에 타고 계측한 코스가 실제로 선수들이 달린 코스라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e)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계측한 계측원이 아닌 다른 “A”급 계측원에 의해 가능한 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계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계측원이나 “A”급 계측원 1명과 “B”급 계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계측을 하였고, 그 중 최소 1명이 규칙 제260조 28항(d)에 의거하여 레이스 현장에 있으면서 코스 인증을 한다면, 규칙 제260조 28항(e)에서 요구하는 계측원에 의한 확인 재계측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f)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레이스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계측 시에 계측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8항(e)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 (g) 로드릴레이레이스는 레이스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코스계측 시, 각 구간의 거리는 ±1%에 허용오차로 계측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8항(e)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29. 로드경보경기의 세계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코스는 반드시 1명 또는 그 이상의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계측원이 계측하여야 한다.
- (b) 주회코스는 1주회 거리가 1km이상에서 2km이하가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스타트와 피니시는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c) 코스를 최초에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완전한 계측자료와 지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A”급 또는 “B”급 계측원은 계측한 코스가 동일한 코스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 (d) 되도록이면 코스를 최초에 계측한 계측원 중 다른 “A”급 계측원이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또는 경기 당일 또는 레이스 전 코스를 확인(재계측)한다.

[주IAAF] 만약 최소 두 명의 “A”급 또는 1명의 “A”급 및 1명의 “B”급 계측원이 최초로 코스를 계측하였고, 그 중 최소 1명이 규칙 제260조 29항(c)에 의거하여 코스 인증을 위해 경기 현장에 있다면, 본 규칙 제260조 29항(d)에 따르는 확인은 필수적이지 않다.

- (e) 로드경보경기의 코스 구간 간에 달성된 세계기록은 반드시 규칙 제260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간 거리는 반드시 코스 계측 동안 계측되고 마킹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9항(d)에 부합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주IAAF] 국가연맹과 대륙육상경기연맹은 해당 신기록을 공인할 때 상기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기록(Korean Records)

1. KAAF는 한국기록(각 부별기록 포함)을 공인한다. 신기록은 그 종목에 공인된 한국기록보다 더 좋거나 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신청한 기록을 공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에 문서로 통고하여야 한다. 신기록이 수립되었을 때는 공인된 날로부터 기록을 인정하여 발표하고 한국기록으로 적용한다.
단, 공인된 신기록은 매년 12월 말일에 신기록일람표를 발표하고 그 사본을 각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에 발송한다. KAAF는 한국기록표를 매년 1월말일까지 IAAF 사무국에 발송한다.
[주]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었거나 기록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에 수립된 기록 중 가장 좋은 기록을 한국기록으로 공인한다.
2. 한국기록표는 본 연맹 사무국에 보관한다. IAAF에 제출한 세계기록 공인신청서 사본의 보관도 동일하다. 각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은 소속연맹의 공인기록표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표의 사본을 매년 11월말일까지 본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1] 한국기록으로 공인되는 종목은 규칙 제265조에 규정한다.
[주2] 신기록공인에 대해서는 각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은 본 연맹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한국기록이 수립되었을 때는 경기대회 주최연맹은 본 연맹에 신기록을 신속히 통보하고, 그 신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본 연맹에서 공인하는 기록은 한국기록, 한국대학교기록, 한국주니어기록, 한국고등학교기록, 한국청소년기록, 한국중학교기록 및 한국초등학교기록 등이다.
4. 경기대회의 개최를 통할하는(주최, 공동주최 또는 주관) 경기단체가 공식기록 신청서에 그 경기대회의 심판장, 관계 심판원주임 및 기록정보처리원등이 확인한 다음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신속히 본 연맹에 발송한다.
 - (a) 경기대회명, 개최장소, 개최기간 및 신기록수립일시, 경기장의

- 조건, 거리 또는 높이의 정확성, 용구의 무게, 규격과 재료, 수립된 신기록 및 본 연맹 경기규칙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의 사실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b) 경기장의 기상상황(일기, 기온, 기압, 습도, 풍속풍향)을 1시간마다 계측하여 기록하고, 특히 뒷바람이 신기록의 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에 대하여는 각 경기시기 실시 시 풍속풍향을 반드시 기입한다. (만약 풍향풍속기록이 없을 시에는 그 신기록을 인정 할 수 없다).
 - (c) 신기록이 수립된 종목에 참가한 선수의 명단이 인쇄된 대회프로그램 1부, 해당종목의 전체 기록, 트랙경기에서 사진판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신기록의 판정사진 및 필드경기의 전체기록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 (d) 신기록은 예선(트랙 및 필드경기), 준결승, 1위 결정경기 또는 혼성경기에서 수립된 신기록도 공인되므로, 예선기록표, 준결승기록표, 1위 결정경기기록표, 필드경기기록표, 혼성경기 기록표 등 신기록공인에 필요한 모든 기록표를 각 1부씩 경기대회 종료 후 3주일이내에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기록표에 보고된 기록이외의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선수의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되지 않는다.
5.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그 경기를 끝낸 후 KAAF 도핑검사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릴레이레이스 기록인 경우에는 팀의 선수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도핑 규정위반으로 나오거나 또는 도핑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6. 외국의 경기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수립되었을 시는 그 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증명서 및 도핑검사 확인서 등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기록 공인 신청서 제출).

7. 한국 기록공인의 경기장 및 경기대회의 조건은 본 규칙 제260조 1, 6, 7, 9,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및 29항을 적용한다.
8. 본 연맹의 회장, 전무이사 및 경기이사는 한국기록을 공인하고 승인할 권리가 있다.

신기록 및 타이기록공인신청서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귀하

신청 단체명 :

성명 : 인

본인은 육상경기규칙 제 260조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신기록 및 타이기록 공인을 신청합니다.

경기대회명						
대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회장소						
주최자						
기록 수립 일시						
종목						
현재기록	(년 월 일)					
수립기록						
선수명(소속)	()					
기록공인 참고 자료제출상황 · 각 1부씩 · 경기종료후 3주일 이내 · 제출자료에 O 표	1. 선수명단이 인쇄된 대회 프로그램			7. 경기용구확인서		
	2. 당해 종목의 모든 기록표			8. 기상상황 (일기, 기온, 기압, 습도)		
	3. 사진판독용 사진			9. 로드레이스의 코스 공인 확인서		
	4. 품속자료			10. 선수등록확인서		
	5. 당해 종목의 심판원 명단			11. 종별기록은 출생증명서		
	6. 경기장 상황 (규격, 거리, 재료 등)			12. 도핑검사 확인서 (릴레이레이스는 선수전원)		
		심판장	인	심판원주임	인	
기록확인자	기록정보처리원					인
신기록공인여부	공인	보류		공인불가 (이유)		

기록공인 확인

경기위원회

인

전무이사

인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

인

9. 전국연맹체가 주최 또는 공동주최하는 경기대회의 신기록을 공인 받기 위하여는 국가기술임원(NTO)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0. 한국기록의 공인 시기는 본 연맹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하는 경기대회의 기록은 신기록 수립 후 본 연맹의 전무이사와 경기이사가 모든 기록 공인 조건을 확인한 후 한국기록으로 공인하고 발표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에 발표한다. 본 연맹의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대회에서 수립된 신기록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에 공인 발표한다.
11. 기타 사항은 본조의 세계기록공인 조건을 적용한다.
12. 본 연맹은 한국기록 수립 선수에게 한국기록 공인증 (Korean Record Certificate)을 수여한다.
13. 한국기록 및 각 부별 한국기록이 공인되는 종목은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61조

세계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남자(4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4×1500mR

경보경기(트랙) : 20,000m, 3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자(4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여자 로드레이스 세계기록은 2가지이다 :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
-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

[주-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세계기록을 인정한다.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제262조

세계주니어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Junior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주니어 남자(26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or T.T. : 경보경기(로드) : 10k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주니어 여자(27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or T.T. :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 7,300점 초과 기록만 공인.

제263조

세계실내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남자(22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자(22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3,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제264조

세계실내주니어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Junior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남자(16종목)

트랙, 혼성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자(16종목)

트랙, 혼성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제265조

한국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1. 한국기록공인종목

남자(2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자(2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2. 한국대학기록공인종목

남 자(2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3. 한국주니어기록공인종목

남 자(24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자(24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4. 한국고등학교기록공인종목

남자(23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자(23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5. 한국청소년기록공인종목

남 자(21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3,000m, 2,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1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3,000m, 2,000mSC,
경보경기(트랙)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6. 한국중학교기록공인종목

남 자(18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1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500m, 3,000m

경보경기(트랙) : 5,000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18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1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500m, 3,000m

경보경기(트랙)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7. 한국초등학교기록공인종목

남 자(7종목)

트랙경기 :

F.A.T. only : 100m, 200m, 800m, 4×100mR

도약경기 : 높이뛰기, 멀리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7종목)

트랙경기 :

F.A.T. only : 100m, 200m, 800m, 4×100mR

도약경기 : 높이뛰기, 멀리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8. 한국실내기록공인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남 자(21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자(21종목)

트랙, 혼성, 경보경기 :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3,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